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성전환자’ 혹은 ‘트렌스젠더’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실과 아무도 내밀어주지 않는 손, 그 누구의 도움과 조언 없이 호르몬을 구입하여 자가 주사를 하고, 위험한 수술을 감행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성으로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성을 찾아 수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전환자들이 쉽사리 사회에 나올 수 없는 문제, 그에 따른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어떠한 정책도, 신뢰할 만한 통계나 조사도 마련되거나 이루어진 적 없는 이 시점에서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의 보고서는 진정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정한 성전환자 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협상하고 있는지를 말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느낍니다.

오래 전부터 성전환자들은 존재했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없었다가 갑자기 나타났거나, 비가시적이었다가 가시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자신을 주장하지만 이제야 ‘표면화’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보고서가 성전환자들을 위한 가장 시급한 장치인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에 큰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전환자’ 나아가 ‘성소수자’ 더 나아가 모든 ‘소수자’를 위한 사회와 그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한 일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작업물이 고정되고 유일한 참고문헌이 아니라 무수한 참고문헌 중의 하나가 되길 바라며 성전환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아 있고 계속해서 살아가듯, 이 보고서 역시 하나의 살아있는 작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존권조차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성전환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기 위한 소중한 자료를 만드는 작업에 동참할 수 있어 더없이 기뻤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 주신 기획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2006년 9월 4일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을 축하하며

오랫동안 고통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사회적으로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태어날 때의 신체적 성별과는 반대인 자신의 진정한 성별로 살기를 원하는 성전환자
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들은 병역, 일자리, 의료보험, 주민등록증, 학교, 은행 등등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에서 혐오로부터 시작된 차별과 억압 속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인권유린 현장에 돌보기를 둘이대는 일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부터 심층면접, 연구, 자료분석,
과정 하나하나가 당사자들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에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의 우리들인 성전환자 동지들에게,
오랫동안 그곳에 그렇게 외롭게 투쟁하게 내버려 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기 이전의 한 사람으로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성전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입법공청회를 통해 정비되고 있는 법안이

성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야만에서 문명의 문턱을 넘었는지는
이 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2006년 9월 4일 국회의원 노회찬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2006년 9월 4일)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 : 김일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
- : 루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 활동가)
- : 유정민석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회원)
- :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 : 타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과정)
- : 한무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 대표)
- : 한영희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

목 차

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개요	3
2장. 성전환자를 둘러싼 쟁점	5
1. 용어의 문제	5
2. 생물학적 본질주의	11
3. 성별 이분법	14
4. 성적 시민권	16
3장. 한국사회 성전환자 현황	20
1. 사회제도	20
1) 법	20
(1)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 이전	20
(2)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	26
2) 정책	28
2. 의료제도	32
3. 국외사례	36
1) 각국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의 인정여부	36
2) 각국의 공무상 성전환자 성별변경의 요건	37
4장. 성전환의 삶	40
1. 성전환자의 생애와 차별	40
1) 조사개요	40
(1) 조사방법 및 조사개요	40
(2) 면접대상자 개요	42

2) 성전환자의 생애	43
(1) 출생 및 아동기	44
(2) 청소년기	49
(3) 성별화된 공간	58
(4) 의학적 조치	63
(5) 병역	70
(6) 직업과 노동	84
(7) 성폭력	95
(8) 가족구성	97
 2. 성전환자의 생활	106
1) 조사개요	106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08
3) 현재의 생활	110
(1) 가족관계	110
(2) 가구경제	111
(3) 거주지와 거주형태	117
(4) 의학적 조치의 과정	122
(5) 성별변경	136
(6) 직업활동	139
(7) 사회적 관계망	143
(8) 가족구성	148
(9) 어린시절의 경험	152
(10) 차별경험	156
(11)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159
(12) 생활만족도	160
(13) 성전환자로서의 삶	165

3. 현재의 삶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170
1) 빈곤	170
(1) 노동기회로부터의 좌절	171
(2) 노동현장에서의 배제	172
(3) 생계위험의 상황	173
2) 사회적 배제	174
(1) 가족으로부터의 배제	174
(2) 제도로부터의 배제	175
(3) 사회적 시선의 폭력	176
3)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긴장, 협상	178
(1) 육체와의 경합	178
(2) 정상성에 대한 긴장	179
(3) 자기전략으로서의 가장(masquerade)하기	180
5장.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모색	182
1.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182
1)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의 확보	182
2) 사회적 차별의 결과에 대한 정책 모색	183
2. 성전환자들이 희망하는 사회정책	184
(1) 정책현황	184
(2) 사회정책의 필요성 인식	185
(3) 정책수립방향에 대한 서비스	186
(4) 희망하는 사회적 서비스	187
3.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189
1) 법적·사회적 지지망 확충	189
(1)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특별법 제정	189
(2) 성전환자 관련 각종 법조항 개정 및 정책 마련	190
2) 의료정책	192

(1) 성전환 과정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설정	192
(2) 성전환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적용	193
3) 심리적 지원	194
4) 차별금지법의 제정	196
5) 인권교육	196
6) 성전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보호에 대한 권고	198
(1) 노동할 수 있을 권리	199
(2) 사회보장권	201
(3) 보장된 사회적 지위 속에서 가정을 구성할 권리	202
(4)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권리	202
(5)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권리	203
(6) 교육받을 수 있을 권리	204
참고문헌	206

<표 차례>

<표 1> 성전환자 관련 판례	22
<표 2> 성전환자 허가 법원 및 법원별 허가 건수	24
<표 3>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례에서 나타난 입장차이	25
<표 4>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판결의 요지	27
<표 5> 정병신체검사규칙의 성전환자와 관련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8
<표 6> 2004~2005년 병역면제 판정 및 귀가조치한 성전환자	29
<표 7> 성전환자 호적 정정 관련 병무청 입장	30
<표 8> 앞으로의 신분등록법안에서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여부에 대한 기록	31
<표 9> 호르몬 치료에 의한 부작용	35
<표 10>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한 예	36
<표 11> 각국의 공부상의 성전환자 성별요건	38
<표 12> 심충면접대상자의 개요	42
<표 1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108
<표 14> 가족규모	110
<표 15> 형제관계	110
<표 16> 가구수입과 개인수입	111
<표 17> 가구 재산상태	112
<표 18> 월 평균 생활비	113
<표 19> 저축상황	114
<표 20> 채무상태	115
<표 21> 빚을 지게 된 이유	116
<표 22> 신용불량자 여부	116
<표 23>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117
<표 24> 태어난 지역과 현재 거주지역	118
<표 25> 현재 거주지역으로 이사를 한 이유	119

<표 26> 거주형태와 점유형태	120
<표 27> 주거비용	121
<표 28> 호르몬 투여 여부	122
<표 29> 호르몬 투여 방법과 투여 횟수	122
<표 30> 호르몬 투여 방법의 가지수	123
<표 31> 호르몬 투여비용과 투여기간	124
<표 32> 호르몬제 투여 처방 전 검사과정	125
<표 33> 호르몬 진단 전 받은 검사의 수	126
<표 34>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는 이유	127
<표 35> 앞으로의 호르몬 투여 계획 여부	128
<표 36> 지금까지 받은 수술	128
<표 37> 성별정체성에 따른 수술현황	129
<표 38> 가슴수술	130
<표 39> 정소, 난소제거 수술	131
<표 40> 성기형성수술	132
<표 41>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	133
<표 42> 향후 수술 계획	134
<표 43> 성전환 수술 계획 여부	134
<표 44> 성전환 수술을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는 이유	135
<표 45> 수술 부작용이 있었는지의 여부	135
<표 46> 성별변경의 여부	136
<표 47> 성별변경 계획	138
<표 48>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	139
<표 49>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	140
<표 50> 직업	141
<표 51> 성별정체성에 따른 직업분포	142
<표 52> 직업별 월평균수입	142
<표 53> 가족들의 성별정체성 파악 여부와 지지 여부	143

<표 54> 성별정체성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	144
<표 55>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는 곳	145
<표 56> 인터넷 동호회 활동 여부	146
<표 57>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147
<표 58> 애인 및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	148
<표 59> 파트너 및 파트너 가족에게 성별정체성을 밝혔는지의 여부	149
<표 60> 성적지향	150
<표 61> 이후의 결혼 계획	150
<표 62>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	151
<표 63> 어린시절의 경험	152
<표 64> 가출을 시도했던 이유	153
<표 65> 가출시도에 대한 기타의견	154
<표 66> 학업포기의 이유	155
<표 67> 군복무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여부	156
<표 68> 군 입대와 군복무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157
<표 69> 차별 경험	158
<표 70>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알게 된 시기	159
<표 71> 일과 생활수준 만족도	160
<표 72> 생애별 행복도	161
<표 73> 조사대상자들의 현재의 심리상태	163
<표 74> 성전환자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165
<표 75> 신분증 제시의 경험여부와 신분증 제시의 상황	166
<표 76>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방법	167
<표 77> 경찰 혹은 상담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가의 여부	168
<표 78> 국가지원 여부	184
<표 79> 성전환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여부	185
<표 80> 희망하는 성전환자 관련 정책안	186
<표 81>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187

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에서 성전환자¹⁾와 관련한 담론으로 최초의 언급은 광고였다. 성전환자연예인의 등장은 한국사회에 파란을 던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누구도 연예인의 등장 이상의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거짓말처럼 예쁜 성전환 여성의 외모에서 ‘남성’의 흔적을 찾는 호기심 어린 시선만 있었을 뿐 그녀를 통해 성전환자의 ‘현실’을 보려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한국사회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은 성전환자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무엇일지 스스로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육체와 끊임없이 갈등하며 사회로부터의 두려운 시선을 견디며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성전환자들에게 육체와 정체성 간의 혼란과 긴장은 육체와 정체성 간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육체와 정체성 간의 지속적인 경험과정 속에서 성전환자들의 현실적인 갈등이 드러난다. 사회는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이분법으로 성별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끊임없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묻는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모든 상황은 성별 구분을 요구한다. 사람들을 만나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성별을 제시한다. 성전환자들도 성별화된 사회와 끊임없이 부딪치며,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당연히 성전환자들은 성별구분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자기전략을 갖는다. 성전환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좌절감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성전환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사회가 인식하는 방식-성전환자의 육체를 기준으로 하는 성별-에 타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자신의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성별로 자신을 전시(display)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1)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라는 용어는 트랜스젠더로 불리지만, 본 실태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라는 용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성전환자라고 통칭한다. 성전환자 관련 용어는 2장을 참고하길 바란다.

선택은 결코 자유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전환자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스스로를 전시(display)할 경우, 사회는 이를 부정하고 낙인찍으며 별 수 없는 흉내내기라고 비하한다. 성전환자들이 육체에 근거한 성으로 스스로를 전시(display)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남자같은 여자’, ‘여자같은 남자’²⁾라는 오명은 젠더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전환자의 육체와 정체성간의 경합과정은 결국 충분히 사회적인 요인들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는 젠더질서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한다. 가족, 학교, 직장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공간과 제도들이 거의 성별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구분과 교육, 여학교와 남학교의 구분, 교육기관내의 규율검사, 직장 내에서 성에 따른 공간과 업무의 분리 등 많은 공간과 제도들이 육체적 성 구분에 의해 체계화되어 있다. 일례로 성전환자들은 학교에서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데, 학교가 이미 성에 의해 구분되어 있고 성에 따른 규율검사가 이루어지며, 성역할 수행여부로 개인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벗어나려고 한다.

사회의 공고한 젠더체계는 성전환자들에게는 끔찍하고 두려운 현실이다. 사회생활에서의 성전환자들이 경험하는 좌절감은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가기 어려운 성별화된 사회의 견고함을 반영한다. 더구나 성전환자들은 스스로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어떠한 법적·사회적 보장도 가질 수 없기에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의 위험을 안고 생활한다. 그래서 현실 속의 성전환자들의 삶에 주목하며 이들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응당 제공해야 할 법적·사회적 기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오랜 기간 존재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했던 성전환자들의 삶을 드러내어 한국사회의 성별화된 차별과 배제로부터 확보되지 못했던 성전환자의 시민권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전환자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보고서를 계기로 성별화된 사회의 견고함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가할 수 있었으면 한다.

2) 생물학적 남성 혹은 생물학적 여성을 수식으로 언급하지 못하면, 대신 작은 따옴표로 표시하여 개념의 구분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개요

성전환자의 생애와 차별에 대한 실태보고를 위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란 연대체가 구성하였다. 성전환자의 인권보장과 생물학적 이분법에 기반한 젠더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성소수자 진영의 몇몇 단체들과 개인 활동들이 함께 연대하여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 출범하였다. 이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외 개인 활동가들이다. 본 기획단이 성전환자 인권실태보고를 위해 실시한 조사는 크게 세 가지이다. 문헌자료조사, 심층면접조사, 설문지조사가 그것이다. 성전환자의 국내 현실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성전환자 관련 법과 정책, 의료제도, 해외의 성전환자 관련 특별법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조사를 재구성하였고, 성전환자의 생애과정과 구체적인 경험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였으며, 성전환자의 평균적인 삶의 모형을 그리고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설문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헌자료는 성전환자 관련 단행본과 소논문, 학위논문, 기사자료, 각 단체들의 성전환자 관련 자료, 정부문서(병무청, 법무부)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전환자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기존 문헌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

심층면접은 기획단 구성원으로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이하 지령이)가 포함되어 있어 지령이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령이 회원들을 소개받았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지령이 활동가들의 동석 하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전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협조를 구해 운영자들의 도움을 받아 커뮤니티 정기모임에 기획단이 참석하여 심층면접 참여를 허락해준 커뮤니티 회원들에 한해 만남이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참여해준 인터넷 커뮤니티는 성전환 남성 커뮤니티였다. 성전환 여성의 커뮤니티는 성전환자 여성 외에 다른 성소수자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커뮤니티를 통한 심층면접 대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하는 ‘트랜스 전용 클럽³⁾’을 직접 찾아가 업소의 허락을 받고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성전환자 개인 상황에 따라 적게는 한번, 많게는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기획단 구성원들이 성전환자들을 직접 만나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모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설문조사는 평소 기획단과 친분이

3) 트랜스 전용 클럽은 성산업의 한 형태로 성전환자 여성들이 일하는 공간이다.

있는 경우, 혹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성전환자들을 만난 경우는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을 꺼리는 성전환자들은 설문조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문현자료조사,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한 본 실태조사 보고서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장은 보고서의 전반적인 배경과 목적을 소개하면서 연구방법과 개요를 제시하였고 2장은 성전환자와 관련한 용어를 정리하고 성전환자를 둘러싼 쟁점들을 제시하였고 3장은 한국사회의 성전환자 관련 법과정책, 의료제도, 해외의 성전환자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4장은 성전환자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았는데,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지조사를 토대로 성전환자의 생애사와 차별경험, 성전환자의 현재의 생활, 성전환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구성하였다. 5장은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한 장으로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성전환자들이 희망하는 지원정책, 성전환자를 위한 세부적인 조정책들로 구성하였다.

2장. 성전환자를 둘러싼 쟁점

2001년 9월, 한 여성은 한국 성문화의 지겹고 낡은 성인식에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면서 등장했다. 그녀가 의도였든, 의도가 아니었던 상관없이. 그녀가 출연했던 한 화장품 광고는 아름다운 여성의 육체와 매혹적인 얼굴선을 강조하며, 광고의 소임을 다하려는 듯이 여성의 이미지를 상품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한 장면, 그 여성의 ‘목 젖’을 크게 확대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광고문구를 교차하였다. 처음에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 광고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이 광고의 의미, 말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알려지면서,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이라는 용어가 대중들의 두려움과 우려 속에서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즉 ‘거짓말’의 속내는 남자도 여자로 속일 수 있다는 것 혹은 여자로 보였던 그녀가 실제로는 남자라는 것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가 정작은 남자였고, 수술이라는 놀라운 과학기술의 혜택 속에서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대중들을 경악케했다. 그녀는 이러한 트랜스젠더의 이미지를 상품화한 연예인으로 등장했고, 지금은 트랜스젠더라는 이미지를 회석하고 ‘충분히’ ‘여성’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리수이다. ‘충분히’라는 표현은 사회적 차원만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의 ‘인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녀는 2003년 호적정정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여성으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중들은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이라는 용어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다른 경향의 다양한 성소수자들과 혼동하면서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의 개념을 혼란스러워하거나 별 다른 이해 없이 받아들이기도 했다.

1. 용어의 문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트랜스젠더 (transgender)’라는 개념은 남자와 여자만큼이나 다양한 몸, 정체성 그리고 정치학을 가진 이질적인 개인과 집단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의하기에 문제점이 많은 용어이다.⁴⁾ 더욱 문제점은 트랜스젠더를 한국어로 ‘성전환자’

라고 번역하여 사용할 때, 성전환자 혹은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말하자면 트랜스젠더(trans-gender)와 ‘성전환자’는 그 각각이 모두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개념이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교한 논의 없이 사용했을 때,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특정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 육체, 지향, 의학적 조치의 정도 등에 따라서 더군다나 당사자들 스스로의 욕망을 발현하는 과정에 따라서, 각각의 주체들은 적절하게 지칭할 수 있는 용어나 명명(naming)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용어의 사용이나 생산 앞에서 곤혹스러움을 느끼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정의 없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사용할 것이며, 이 장에서는 ‘성전환자’의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이후 새로운 개념의 생산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러한 실천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트랜스젠더 혹은 성전환자의 핵심은 ‘성’과 ‘변화’이다. 그러나 각 용어에는 ‘성(sex / gender)’과 ‘변화(transition)’가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내포되어 있고, 이러한 ‘성’과 ‘변화’라는 측면에 대한 의학적, 인류학적, 여성주의적, 시민권적 접근 등에 따라서 그리고 당사자의 자기 이해(self-understanding)에 따라서 그 의미가 너무나 복잡하고 미묘하다.

성전환자는 말 그대로 성을 전환하는 자이다. 이때의 ‘성’을 젠더적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성전환자, 즉 트랜스젠더는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획득한다. 젠더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서, 개인들이 사회 속에서 여성, 남성 주체로 길러진다는 점을 강조한 용어이다. 그러므로 젠더로서의 성은 문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여성적, 남성적인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고안물이자, 자연적인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따라서 생물학적인 성이 두 개라 할지라도, 젠더가 꼭 두 개일 필요는 없어진다. 생물학적 섹스에 부합된 젠더를 지닌 채 살아가도록 강제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사회가 지시하는 젠더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다. 섹스와 젠더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젠더를

4) 운조,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여/성이론』 제 12 호, 2005, 297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성전환자 혹은 트랜스젠더이다. 말하자면, 목소리, 몸짓, 복장, 성(gender) 역할, 규범, 선호 등에서 젠더를 위반하거나 실천하는 사람들도 성전환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전환의 성을 생물학적, 해부학적 측면으로 고려했을 경우, 이때의 성전환자들은 특정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성을 변화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때의 성전환은 생물학적 성의 변화를 지시하는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 할 수 있으며, 흔히 ‘성전환 수술’은 바로 이러한 쓰임이다. 즉 트랜스섹슈얼은 생물학적 성과 그에 부합하지 않는 젠더 사이의 긴장 혹은 자신의 진정한 성과 육체와의 갈등에 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일정한 육체적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정체성, 육체, 의학담론 등을 고려한다면, 트랜스젠더와 트랜스섹슈얼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트랜스섹슈얼은 성전환수술 후에는 트랜스섹슈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성으로 동일시하여 성화정자, 즉 스스로를 성전환 남성(transman) 혹은 성전환 여성(transwoman)로서 정체화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트랜스섹슈얼은 일종의 변화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에 과정이 완료된 상태, 성기 성형수술을 받은 후에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라는 개념을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 기준에는 의학적 조치의 여부 및 정도, 특히 성기수술 여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전환자 내부의 차이를 생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의 하나가 바로 의학담론이라 할 수 있다.

젠파라는 용어를 섹스라는 용어와 구분하면서, 성과 관련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쓰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으로, 아마도 로버트 스톤러의 『섹스와 젠더』(1968)가 출간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이 책에서 스톤러는 트랜스섹슈얼, 그 중에서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물학적인 육체를 변화시킨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젠더와 섹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스스로를 ‘남성의 육체에 갇힌 여성’으로 설명하는 트랜스섹슈얼을 통해서,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생물학적 결정론을 공박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스톤러는 스스로를 ‘남성의 육체에 갇힌 여성’으로 설명하는 트랜스섹슈얼을 ‘남성 성전환증자’

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명명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심리적 이상(anomaly)때문에 여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즉 성전환증을 심리적 영역의 결과물로 간주한 셈이다.

이러한 성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들은 의료담론과 맞물리면서, 성전환의 영역에 있어 의학계, 특히 정신과학의 적극적 개입을 더욱 자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담론에서의 트랜스섹슈얼은, 일종의 ‘성전환증’이라는 심리적 이상을 겪고 있는 환자가 치유 혹은 교정된 것으로 규정된다. 성전환증(transsexualism)은 성별정체성 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 이하 GID)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성장을 제거하고 반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⁵⁾

그런데 성전환자가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자신이 이러한 질병 분류 체계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성전환자들은 적절한 의료진단을 받기 전에, 성별 정체성 장애 (GID)라고 이름 붙인 체계에 따라 병적인 존재로 판정되어야 한다. 성전환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고 다양한 의료진단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완경기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 받기 위해서 정신과 진단을 받지는 않는다. 혹은 전쟁 중의 사고로 인해서 성기가 훼손된 남성이 성기형성 수술을 하고자 할 때도 정신과 진단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의학적으로 정신 장애라는 진단을 받지 않으면, 다양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별정체성 장애를 판정 받은 이후의 의학적 조치를 잘못된 상태를 치유하거나 교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트랜스섹슈얼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정체화하기 쉽다.

게다가 더욱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성전환에 대한 의학계의 기준은 트랜스섹슈얼의 실체를 반영했기보다는 젠더 이분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에 어긋났을 경우, 성전환자들은 트랜스섹슈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결국 수술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숨기기도 한다. 1966년에 발표한 『트랜스섹슈얼 현상(The

5) 최병무, 「성전환증의 진단 및 치료」, 『신경정신병학』 제 32 권, 1993, 재인용

Transsexual phenomenon)』은 트랜스섹슈얼에 대한 의학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성전환 수술을 옹호해서 트랜스섹슈얼 담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책의 저자인 해리 벤자민은 남성의 육체에서 여성으로 수술한 트랜스섹슈얼은 폐니스를 혐오해서 제거수술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트랜스섹슈얼이 자신의 폐니스를 혐오해서 수술을 받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현재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먼저 설립하여 성별 클리닉과 프로그램, 그리고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는 성별정체성 장애 혹은 성전환증이라는 진단과 그 이후의 의학적 조치가 젠더화된 과정을 중심으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⁶⁾ 혹은 법적으로 성별변경을 위한 요건에서 성별정체성 장애를 생략하여 성전환자들의 개인적 가치관을 비정상성이나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⁷⁾

의학적 조치에 따른 성전환자 내부의 긴장만큼이나 더욱 고려되어야 할 측면은 생물학적 성과 자신의 ‘진정한’ 성 사이의 갈등과 당사자들의 자기-이해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에 대한 사회적 의미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흔히들 여성의 육체와 남성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체들을 FTM (여성에서 남성으로: female to male) 그리고 그 역의 경우 MTF (남성에서 여성으로: male to female)이라 부른다. 이러한 명명(naming)은 당사자들의 욕망, 정체성, 현재적 상황과 변화를 온전히 설명하기에 곤란한 지점이 있지만, 일정부분 유의미함이 있다. 이 용어는 생물학적 육체와 당사자 스스로가 체현하고 있는 성 이미지(sexual image)를 축약

6) 1990년대 말 미국의 성전환자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되었던 것은 의학적 조치를 받기에 앞서 진행되는 GID를 삭제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하는지의 여부였다고 한다. 많은 성전환자들은 GID 또는 GID유사한 진단이 삭제한다면, 재체득을 위해 의료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그런 의료 기술의 사용을 민간/공공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의 성전환자들은 미국 정신 의학회 회의장에서 항의 시위를 하면서, 장애 관점을 둘러싼 시위를 지속했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GID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성애 중심적, 성차별적, 남근 중심적 구성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성별화된 체득, 정체화, 그리고 표현을 규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용자 각색>

제이콥 헤일, 「내 목에 남아있는 희미한 추억을 추적하며」, 『남성페미니스트』 2004, 199-200

7)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요건에서 성별정체성 장애 GID를 언급하지 않은 국가들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등이 있으며, 현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법에서도 역시 이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후 3장 참조)

적으로 설명할 때 흔히 사용한다.⁸⁾ 이런 측면에서 이 용어는 특정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범주화함으로써, 현실적인 쟁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데 유의미하다.

하지만 어떤 FTM 혹은 MTF는 고착된 성별 범주에 대해서 무척 불편해하면서 자신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예를 들어 태고난 여성의 육체와 남성으로서의 자기-이해 사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갈등, 즉 자신이 남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도 아니거나, 남성이면서도 동시에 여성인 동시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어떤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FTM은 참으로 미흡한 개념일 수 있다. 혹은 다른 측면에서 FTM이라는 용어를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여성의 육체를 갖고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살아본 적도 없는 남성이기 때문에 MTM(남성에서 보다 더 완벽한 남성으로 : male to completely ma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의견으로, 스스로 남성이지만 성전환을 하지 않은, 즉 애초부터 생물학적으로 남성과는 다르며, 생물학적 여성의 육체를 변화시킨 남성이기에 성전환 남성(transmale 혹은 transm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토록 복잡한 언어들의 사용이 제기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만큼 성전환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 체험, 정체성 등을 말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언어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정체성, 욕망, 체험, 지향 등을 고려한 새로운 언어의 생산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사적 주체로 보다 더 적절하게 설립하기 위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이러한 고민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작업은 용어사용과 의미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작업을 이후 충분히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최소한의 정의 없이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기존의 개념을 사용하되, 최대한 당사자의 욕망과 자기-이해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성전환자의 현실적 상황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더불어 이 후의 모든

8) 때때로 대문자 FTM이나 MTF는 덜 표준적인 자아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 완전한 남성의 몸 혹은 여성의 몸을 욕망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몸을 지향하는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소문자 ftm(female toward male) 혹은 mtf(male toward female)로서 스스로를 명명하는 이들도 있다. 말하자면 비성전환자 남성 혹은 비성전환자 여성의 육체와 정체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성전환자는 특정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의학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성을 체현하고자 하는 사람(transsexual)을 통칭하는 것이며, 여성의 생물학적 육체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 사이에서 긴장하는 이들을 FTM, 그리고 남성의 생물학적 육체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 사이에서 긴장하는 이들을 MTF라 지칭하려 한다.

2. 생물학적 본질주의

여자인가 남자인가 혹은 남성적이라든가 여성적이라는 성적인 차이를 의식하건 ‘구분’이라는 문제에서 발생한 긴장감에 직면했을 때이다. ‘구분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 맷기에 있어서 중요하고 안정적인 인식의 메커니즘이다. 특히 나이, 인종, 성별(sex /gender)과 같이 가시적인 생물학적 특징은 관계 맷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힌트로 작동한다.

사람을 처음 대면할 때, 관계맺기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이와 성별 등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오랫동안 구분하기 위한 문화적 코드를 체득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인종적 범주는 최근 들어 새롭게 인식하는 반면에, 나이와 성별은 오랫동안 내재적인 것이라 할 만큼 중요한 코드로 습득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코드’의 해석이 오작동하면서, 구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식적 분류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게 된다. 특히 나이 보다 성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공포심과 적대감을 유발한다. 상대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그/녀와 관계 맷기에 어려움을 느끼며 관계 맷기를 단절한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확장된다.

실제로 성전환자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생물학적, 해부학적 주장 혹은 사실에 기반한 일련의 인식론적, 문화적, 법적 체계를 오작동하게 만든다는 우려와 공포에서 비롯된다.

2003년, 하리수의 성별변경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일련의 논쟁지점을 돌아보자.

하리수의 성별변경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법적 성별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정의였다. 흥미로운 것은 하리수의 성별변경을 옹호하는 입장은 성별의 상당히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그녀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여성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외모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상당히 생물학적인 측면에 근거하고 있다. 즉 논쟁의 핵심은 하리수가 여성인가 남성인가였으며, 여성과 남성의 성적 차이에 대한 판단 근거였다.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1'에서 주민등록번호 '2'로의 법적 성별변경을 옹호하며, 그녀가 이미 '여성'으로서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 입장이 있었다. 이 진영에는 대부분 그녀의 외모, 체형, 사회적 인식, 성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여성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또 소수이지만 일부에서는 그녀 스스로가 자기-이해와 자기-확신에 근거하여,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성별변경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는데, 그 근거는 그녀의 성역색체와 선천적 성 호르몬이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성전환 여성(transwoman)의 '불임'을 내세웠다. 그녀는 여성의 고유한, 자연적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재생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단순한 주장은 금세 반박 당했는데, 성염색체와 성호르몬을 근거로 했을 때, 비성환자인, 생물학적 여성(biological woman)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능상 임신이 어려운 여성은 혼존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별변경을 반대하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와 같은 사례로 인해서, 사회와 국가 체계의 운영상에서 혼란이 야기된다는 데 이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물학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성전환시 분류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혼란함이 생기거나 혹은 생물학적인 남성의 경우, 성전환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데 기피의 사유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하리수를 '남성'으로 간주했기 때문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근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성염색체와 성호르몬이었다.

성염색체의 구분이 제도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던 것은 국제 운동경기에서였다. 예를 들어, 여성육상선수의 성별검사가 올림픽 사상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68년 제 19

회 올림픽으로, 이후 한동안 여/남을 구분하는 종목에 참가하는 모든 여자 선수는 성별검사를 통과해야 경기에 참가할 수 있었다. 면봉으로 입안 상피 세포를 떼어내서 염색체 검사를 방법으로 실시했는데, 이 노골적인 차별은 스포츠에서 운동을 잘 하는 여성의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질 리 없다는 의심의 시선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이는 스포츠, 특히 힘/근력과 관련된 운동에서 ‘정상’적인 여성은 열등하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별검사 제도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성염색체이다. 인간은 46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염색체는 22개의 염색체 쌍과 2개의 성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의 경우, 성염색체가 같지만(XX), 남성 성염색체는 불완전 구조체로 미량의 유전물질(Y염색체 : 따라서 남성은 일반적으로 XY쌍을 갖는다)을 전달한다.⁹⁾

그런데 곤혹스러운 것은 이들 성염색체가 성적 구분에 절대적 지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따금 성염색체는 세포분할과정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분할되지 않고, 그 결과 XXX, X, XXY, XYY의 유형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이때 이들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또한, 소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역시 성별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동한다.¹⁰⁾ 분비선에 의해 분비되는 화학적 전달체인 호르몬은 고환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일종의 남성 호르몬)과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일종의 여성 호르몬)이 있다. 이 호르몬들은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스토스테론은 굵은 목소리나 체모의 출현 등 사춘기의 몇몇 중요한 변화를 유발시킨다. 또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가슴의 발육과 지방질의 재분배가 이루고 월경주기를 시작한다. 그렇지만 이 호르몬들은 배타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에게만 귀속된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의 비율 역시 다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 호르몬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근거는 아니다.¹¹⁾

9) 제프리 윙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 채규형 역, 현실문화연구, 1994, p74

10) 때때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수치는 성전환자의 병리학적 원인설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성전환자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11) 더불어 생식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생식기 자체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선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두 개의 생식기를 모두 갖고 태어난, 간성(intersexual)(intersexual)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성별(gender/sex)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물학적 근거를 강조한 입장의 배경에는 ‘성은 움직일 수 없는 숙명’이라는 전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은 최근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나 법적 판단에 있어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1999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성전환 여성인 임모(25)씨가 낸 성별변경 신청에서 “성전환 수술로 여성의 생식기를 가졌더라도 이는 성형수술의 결과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1990년 수원지법 여주지원도 “인간의 성은 출생과 동시에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인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기각하였다.

1996년에는 더욱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있었는데, 성전환 여성에 대해서, “피해자가 남성인 만큼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한 적 있다. 이 판결은 앞선 판례들에 따라서 법원은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었다. 즉 “여자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성염색체가 남성이므로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반을 둔 정서적 저항감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문화적 차이와 변화에 대한 성찰을 저해하며, 무엇보다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간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성별 이분법

성에 있어서 생물학적 본질주의는 성이란 고정된 것이고 아무리 이를 변경하려 해도 결국은 원상 복원되고 만다고 강변한다. 반면에 사회적, 역사적 설명은 인간 본성은 변화가능성이란 면에서 극히 유동적이고 유연하다고 가정한다. 문화적으로 상이 한 역사적 시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남자’가 된다거나 ‘여자’가 되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당연히 선택가능하다.

앞선 하리수의 성별변경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 가운데 그녀의 성별변경을 지지한 진영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그들이 하리수를 ‘여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녀의 ‘여성성’ 혹은 ‘여성다움’에 관한 부분이다.¹²⁾

12) 그 당시 우스개 소리처럼 제기되었던 질문은 “만약 하리수가 예쁘지 않았다면 그토록 대중적인 설득

생물학적 성 위에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구분하고 의미를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존재한다. 젠더는 바로 이 사회, 문화적 구조에 의해 강제되며 개인들이 사회 속에서 여성 혹은 남성 주체로 길러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젠더가 강조하는 것은 문화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여성적, 남성적인 것이 사실은 자연적인 것으로 정당화되어 온 이데올로기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에게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옷차림, 행동, 말투, 성역할, 직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때 여성 혹은 남성의 차이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억압적이며 불균형인 동시에 결코 넘나듦을 허용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성의 성적 정의는 남성에게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범주화하는 남성 권력의 산물이고, 남성의 성적 정의는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자라 할 수 있으며, 이 성적 차이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교차될 수 없다. 이 속에서 여성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부여된 여성다움을 수행할 때 여성으로 인식되며, 남성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성전환자들이 가장 곤란해 하는 지점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제도화된 성별 이분법이라 할 수 있다. 섹스가 모호하거나 확신하기 어려우면, 성별화된 행위에 대한 판단이 강화된다. 즉 “저 사람 남자야, 여자야?”라는 질문은 대체적으로 성전환자의 생물학적 육체와 목소리, 몸짓, 복장, 육체 변형 등 비규범적인 젠더표현(gender display)사이의 긴장을 내포한다. 그러나 역으로 섹스가 분명할 때, 젠더행위는 오히려 자유로워진다. 오히려 그 때는 “남자가 왜 그래?” 혹은 “여자가 왜 그래?”와 같은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의문과 비난조의 질문을 언제, 어디서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식을 준비해야 하는 강박을 지닌다.

성전환자들, 특히 의학적 조치 이전의 성전환자들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perceived sex)과 자신의 젠더 표현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한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공적영역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공 화장실 대부분은 성물학적 성인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력을 갖출 수 있을까”이다. 또는 그 당시 하리수를 수식했던 말 중에 “여자보다 더 여자같은”라는 표현이 있었다.

성전환자들은 화장실의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치마로 상징되는 여성과 바지로 상징되는 남성 앞에서 자신은 어느 곳을 선택해야하는지 갈등을 겪는다. 화장실의 기호와 공간은 성전환자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제한다. FTM의 경우, 현실적으로 여성의 육체를 지니고 있기에 어떤 면에서는 여자 화장실이 보다 더 안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그를 쳐다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하다. 이미 화장실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외관상 충분히 남성으로 보이는 그에게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성으로서 여자 화장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괴리감을 겪어야한다는 것이 그를 가장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별다른 칸막이 없이 죽 늘어선 변기 앞에서 난감할 수 있다. 페니스가 없는 그로서는 보다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페니스를 대신할 인공적 보형물이 필요하다. 남성으로서 남자 화장실을 선택했지만, 남자로서 기능할 수 없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심각한 괴리를 경험해야 한다. 더군다나 그의 육체가 외관상 여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는 더욱 곤란함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밖에서는 전혀 음료수를 마시지 않는거나 인적이 드문 화장실을 선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이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perceived sex)과 자신의 성별정체성 사이의 간극은 성전환자들을 이중구속에 빠뜨리면서 매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만든다. 이렇듯 교복, 놀이문화,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등 제도화된 성별 이분법은 결국 성전환자들이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으로 부여된 자격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의학적 조치를 강행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4. 성적 시민권

안과 밖, 우리와 타자는 상대적 개념이다. 절대적인 우리 혹은 타자란 있을 수 없다. 개인은 가족, 학교, 회사, 국가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집단에서 때로는 내부인이, 때로는 외부인이 된다. 어떤 사회집단을 준거로 삼는냐에 따라 개인은 주류에 속한 존재일 수도 있고, 외부인으로 배제된 존재일 수도 있다. 따라서 누가 주류이며, 누가 소

수자인가의 문제는 그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주류 혹은 소수자로 규정하는 집단 자체의 문제가 된다.

다양한 성소수자는 소수자를 배제하려는 주류 집단들과의 욕망 속에서 출연한다. 이 주류 집단들은 이성애 중심성, 성기 중심성, 가부장제, 생물학적 결정론 등에 기반한 동질성을 강요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소수자는 주류집단의 성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와 범주 만들기, 일종의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의 희생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고 타자에게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끊임없는 적대감을 양성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결속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배제와 차별은 소수자를 실제로는 존재하되,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로 만든다. 여기서 더욱 무서운 것은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메커니즘 역시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의 재생산은 개개인이 얼굴을 맞대고 벌이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명확한 행위로서 벌어지기 보다는 소수자를 차별적인 언어로서 규정하는 문화적, 무의식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소수자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이 되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관통하고 있는 이성애중심주의적, 성기중심주의적, 가부장적, 생물학 결정론적인 관점에 부합된 임무를 떠맡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성애중심적, 성기중심적, 가부장적, 생물학적 결정론의 규범 속에서 철저하게 열등한 존재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FTM의 경우, 충분히 남성으로서 통용(passing)되는 상황에서, 생물학적 여성의 표시인 주민등록번호 2는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한다. MTF의 경우, 충분히 여성으로서 통용(passing)되는 상황에서, 생물학적 남성의 표시인 주민등록번호 1은 그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환자는 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의무를 지는 반면에, 국가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교육, 복지, 교통, 보건 등)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토록 배제와 차별로 가득 차 있는 사회에서, 성전환자들은 사회로부터의 인정,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신분등록,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성’ 혹은 ‘남성’을 선택하고, 보다 더 완벽한 ‘여성’ 혹은 ‘남성’

이 되도록 강요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성전환 남성/성전환 여성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비성전환 남성/여성처럼 보이는 것을 자신의 삶의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기도 한다. 만약 한 사회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사회의 진정한 성원으로서, 따라서 사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성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전환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민으로 구성되는 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배제의 논리에 주목하면서, 성전환자들이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성적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성적 주체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 보건, 병역, 의료, 취업 등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 성전환자가 여느 시민적 주체와 다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외관상 인식되는 성의 차이 그리고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의 차이, 이러한 차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과는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성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도적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은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판결 이전에는 성전환 수술, 성 재부여 수술을 한 이후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여 삶을 살아하는 주체들은 시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자신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성별과 주민등록상의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도 갖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성별변경 절차 역시 성전환자가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지방 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하더라도 개별 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의 여부가 결정되었다. 그로 인해서 당시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이미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변경이 기각당하는 예가 많았다. 그러나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기존의 생물학적 염색체에 근거하여 성을 구분하던 관행을 깨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의미에서 이 판결은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된 셈이다. 이러한 근거에 기반하여, 성전환자의 성별변경과 관련한 법의 제정이 시급하며, 더불어서 성전환자 관련 각종 법조항이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성별변경만으로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의 확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은 반드시 성별을 변경하고 새롭게 성별을 등록해야만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별변경은 선택적인 사항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성별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성전환자들은 한 사회의 시민적 주체로서 이 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하며 자신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의 시민적 주체로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특정한 소수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성에 관련된 적극적인 활동이므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주체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성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3장. 한국사회 성전환자 현황

1. 사회제도

1) 법

(1)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결정 이전

① 법률상의 성별

성은 단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인식하는 정체성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역할의 수행성 여부 등,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들도 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법체계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성의 구분의 단면만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한다. 많은 경우, 성염색체의 구성과 신체적 외관상 외부성기의 모양과 같은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성을 구분하고 판단한다.

1996. 6. 11 대법원 판례와 1995. 10. 11 서울지방법원의 판례¹³⁾는 모두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에서 성전환자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두 판례를 통해 볼 때 모두 형법상의 '여성'에 대한 규정¹⁴⁾이 여성적 외모나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이행여부보다는 성염색체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법상 강간죄는 강제추행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되는데 그 입법취지가 모성보호, 즉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더 보호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판단은 다분히 인간의 성을 기능적인 측면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성을 기능적인 측면, 예를 들어 생식능력의 여부를 중요시한다고 했을 때 실제 임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불임 혹은 노령인구의 '여성'들의 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력 등의 문제는 단지 생물학적 여성인가 때문만이 아니라

13) 대법원 1996. 6. 11. 당시의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거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따로 호적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태만으로 강간죄의 '부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4) 형법은 강간죄(제297조),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제 303조) 혼인방지간음죄9제304조) 등에서 범죄의 객체를 부녀, 즉 '여성(생물학적 기준에 근거함)'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염색체 및 생식능력과 같은 생물학적 기준에 근거한 성별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과 판단은 생물학적 기준만을 과잉 적용한 것이다. 인간의 성별은 성별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별에 의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과 그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법률상의 ‘남성’ 규정 역시 병역법(현역입영대상), 민법(혼인연령, 호주승계순위), 행형법(남녀의 구분수용) 등에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특히 병역법의 입영대상자 규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물학적인 ‘남성’은 모두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제3조). 그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남성’에 대한 구분에서 성전환자는 국방부령 제493호 징병신체검사동검사규칙 제11조(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해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 주체성 장애, 성 선호장애)로 평가되어 병역 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법률상의 병역의무 대상자는 의학 자료에 근거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규정된다. 예를 들어, FTM은 자신의 육체와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성’의 기준을 성염색체나 생식능력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의학적 수술을 마친 뒤 차별의 소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병역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병역법뿐 아니라, 민법 등에서 남성의 기준이 생물학적 기준만을 근거로 하지 않고 차별의 소지가 없다면, 개인의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옳다. 성별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한 측면이 되기 때문이다.

<표 1> 성전환자 관련 판례

	사건명	내용
수원지법 1990.8.21	호적정정기각결정 에대한항고사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별에 관한 그 호적기재 정정을 허용하지 않은 사례
광주지법 1995. 10. 5.	호적정정 : 항고	성염색체의 구성과 다르게 성전환 수술을 한 자의 호적정정의 허용한 사례
서울지법 1995. 10. 11.	강간치상,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산지법 가정지원 2002. 7. 3.	호적정정·개명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
대법원 1996. 6. 11.	강간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성전환자 관련 판례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② 성별의 등록 및 변경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시, 읍, 면장에게 출생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호적법 제49조제1항) 이때 신고서에는 출생한 사람의 성명과 '성별¹⁵⁾'이 기재되도록 요구하고 있다(호적법 제49조제2항). 이렇게 신고 되어 호적에 기재된 순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재가 발생하며(주민등록법 제13조의2제2항) 이 과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생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주민등록법 제7조3항). 이때 호적이 기재된 성과 주민등록번호는 종신 불변한다. 단,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적법 제120조). 성전환자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별의 단순 기재 착오가 아니라 성전환증 환자가 출생당시 확인·신고된 자신의 성을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반대 성으로 전환한 경우에 이를 법률이 용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판례는 각 기 허용과 불허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었다.

15) 생물학적 육체를 근거로 한 호적상 기재된 성을 말한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판례는 성전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적 소수자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면 성별 정정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성별정정을 불허한 판례는 호적법 제120조 소정의 호적정정 사항이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후발적으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신분관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없다는 점, 성별의 기준을 성염색체에 두어 결정된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별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불허의 판례는 간성(intersexual)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간성(intersexual)의 경우는 출생 시 성별의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예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출생 시 간성은 부모에 의해 확인된 성으로 혹은 양성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이를 부모가 결정하여 하나의 성으로 호적상의 성별을 기재한다. 이때 대개 부모들은 자녀의 양성의 기관 중 하나의 기관만을 남겨 놓는다. 그러나 이후 당사자가 신고된 성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면서 다른 성으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호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 간성에 대한 법률상의 판단은 성별의 변경이 아니라 성별의 확인에 의한 호적정정이라는 것이다. 그 판단도 절차상으로는 당사자 스스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기재된 성에 대해 불편함과 부적절함을 느끼고 전환을 희망하여 성별을 변경한 셈이다. 또한 성별의 확인이라는 해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전환자 역시 자신의 출생 시의 성별이 기재된 이후에 스스로 자신의 성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의 성염색체, 외부성기기관의 유무 등의 기준에 의하면 간성의 경우 출생 시 성별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표 2> 성전환자 허가 법원 및 법원별 허가 건수 (2000. 1. 1 ~ 2003. 8. 31)

법원별 구 분	신청건수	허가건수
서울가정법원	11	6(4)
인천지방법원	5	4(2)
수원지방법원	1	1(1)
춘천지방법원	1	1
대전지방법원	2	1
청주지방법원	3	3(1)
대구지방법원	10	7(7)
부산지방법원	12	3(2)
창원지방법원	9	1
광주지방법원	5	3(3)
전주지방법원	2	1(1)
합계	61	30(20)

- * 신청건수 및 허가건수는 단일성징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건 뿐만 아니라 중성 을 가진 사람에 대한 사건도 포함된 것임
- * 허가건수란의 ()내서는 단일성징을 가진 사람에 대한 성을 반대의 성으로 정 허가한 건수임
- * 위 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이 법무부에 2004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의 성전환자 성별허가 현황을 요구하여 얻은 답변에서 인용한 것이다

현재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위한 호적정정의 사항에 대한 특별법이나 정확한 판단근거가 될만한 법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성별변경의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법원의 개별 판사들의 해석에 의해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호적정정이 된 예는 모두 성별변경을 희망하는 성전환자가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고 호적정정의 허용여부가 판결된 뒤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성별변경 신청한 건수는 61건이었고 성별변경을 허가한 건수는 30건, 간성(intersexual)을 제외하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건수는 20건이었다.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 정도는 허가받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불과 1/3 정도만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가한 건수였다. 이렇게 허가와 기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호적정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급한 법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 제정마련에

있어 주지되어야 할 점은 성전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표 3>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례에서 나타난 입장차이

호적 정정	허가	불가
법적 근거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성전환증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헌법 제 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헌법 제34조 제1항),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성적 소수자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37조)	호적정정은 처음부터 진정한 신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의 기재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당초 올바른 호적의 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후발적으로 신분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신분관계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할 뿐 종전의 올바른 호적기재를 정정할 수는 없다
	법률상 성별정정을 위하여는 호적법의 개정이나 위와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이상적이나 현행법령의 현법합치적 해석과 수술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합리적 기준이 마련된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성별정정의 허가는 가능하다.	무릇 인간의 성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호적제도하에 있어서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발생학적 성(性)인 성염색체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 다른 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성전환 수술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성별정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그들에 대한 협력을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개념은 본래 법률상 고유개념이 아니라, 성 의학 및 생물학으로부터의 차용개념으로서 자연과학에서 엄밀하게 확인된 성은 법률에서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성전환증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므로, 사회질서이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존중의 권리)을 지닌 소수자로서, 헌법이념에 따라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2006년 6월 22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

성전환자의 개명 및 호적정정을 위한 신청의 재항고에서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항고인의 개명 및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한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법원 결정의 핵심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생물학적인 요소 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므로 성전환자의 경우 “사회 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환자의 경우 “출생 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하며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 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호적이 정정됨으로써 그 개인이 주변의 멸시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환된 성에 따라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장래에 향유하게 될 이익은 사회적 혼란의 방지 등 호적정정을 불허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는 이유에서 내려진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재항고인의 개인적 상황은 “FTM으로 미혼의 자녀가 없고 성장기부터 여성으로서의 불일치감과 남성으로의 귀속감을 나타내면서 성인이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남성으로 살다가 의사의 진단아래 성전환 수술을 받아 남성의 외부 성기와 신체외관을 갖추었고 현재 남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이 확고하여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성이 현저히 낮고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남성으로 인식되어 결국 사회통념상 남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요건은 대법원이 인정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이 가능한 요건이다.

국내법상에서 제시된 성별정정이 가능한 판례상 지위 요건은 ① 원칙적으로 내국인이어야 하고, ②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며, ③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④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외에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나는 요건으로는 ④ 오랜 기간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성역할을 할 것, ⑤ 전문의의 진단아래 성전환 수술로 외부성기를 갖출 것, ⑥ 다른 성으로의 재전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야 할 것 등이 사항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성전환자의 경우는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결정의 예에 따라 호적기재상의 성별변경이 허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경우와 혼인이 깨졌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4>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결정의 요지

성(性)의 결정과 성전환자의 성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호적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즉 성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성전환자의 경우에는 출생 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되어야 한다.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 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 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물론 이에 따라 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종전의 성을 따라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됨으로써 결국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성전환자의 호적이 정정됨으로써 그 개인이 주변의 멀시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나서 전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전환된 성에 따라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장래에 향유하게 될 이익은 사회적 혼란의 방지 등 호적정정을 불허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2) 정책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결정이 내려진 후 각 행정부처는 이에 적합한 지침을 갖추어야 하지만 현재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포한 부처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병무청의 지침과 법무부의 공식답변서를 중심으로 하여 정리하겠다.

**<표 5> 징병신체검사규칙의 성전환자와 관련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개정 2006.1.26>**

과목	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비뇨기과	380. 고환결손 또는 위축(정상크기의 1/2 이하를 위축으로 본다)	가. 편측	4	4
		나. 양측	5	5
	390. 음경절단	가. 귀부상실(성교가능)	5	5
		나. 음경의 1/2 이상 상실 및 성교불능	6	6
정신과	101.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 성 주체성 장애, 성선호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	7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3	3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4	4
		라. 고도(1년 이상 치료경력이 있거나 1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 부적응적 행동이 있는 자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히 많은 증상이 있거나 몇 개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 평가기준의 급수는 '징병'은 군입대시 병무청과 입소대대에서 받는 징병신체검사시의 기준을 말하며, '전역'은 의가사 제대 혹은 복무부적합 제대 시의 기준이며, '전시'는 전시상황을 뜻한다.

* 급수는 병역처분기준을 의미하며, 각 급수에 따른 병역처분은 1~3급은 현역,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으로 이루어진다.

병역법에 의해 생물학적 성이 남성인 MTF들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징집의 대상이다. 그러나 국방부령 제493호 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해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과정에서 성전환자는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인격장애, 습관 및 충동장애, 성 주체성 장애, 성선호장애)로 평가되어 병역 면제 처분이 가능하다. 만약 성전환자가 병역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정신과에서 성 주체성 장애라는 판단을 받은 진단서가 첨부해야 한다.

2004~2005년 간 병역면제 판정 및 귀가조치를 받은 성전환자는 2004년 24명, 2005년 13명이었다. 2004~2005년간 징병검사 과정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인원 중 29.7%로 11명이었고,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던 경우는 57.8%인 21명, 부대 배치 후 귀가조치를 받은 경우는 13.5%인 5명이었다.

<표 6> 2004~2005년 병역면제 판정 및 귀가조치한 성전환자

년도	내용	신체 등급 판정	명	총수
2004	징병검사 과정에서 면제 판정		9	24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11	
	부대 배치 후 귀가 조치		4	
2005	징병검사 과정에서 면제 판정	5급	2	13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5급	10	
	부대 배치 후 귀가 조치		1	

* 신체등급판정이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미처 파악되지 못했다

* 병무청 자료(2006)

법률상의 남성으로 기재된 MTF와는 달리 여성으로 기재되어 있는 FTM은 이들의 수술여부와 상관없이 징집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의 판결이후 병무청에서 내려진 행정지침에 의하면 MTF들은 기존 방식대로 성 주체 성 장애판정을 받은 진단서가 첨부되면 병적제적이 이루어지는 반면, FTM은 징집대상이지만, 정병신체검사규칙 제390조에 음경절단 및 제380조 고환결손 또는 위축의 규정에 의해 5급, 6급의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MTF와 달리 FTM에 대한 이러한 행정지침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고환결손이나 위축여부에 의한 판정은 단지 생물학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FTM의 경우 모든 수술을 끝내고 차별의 소지가 없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지점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표 7> 성전환자 호적 정정 관련 병무청 입장

	MTF	FTM
병역의무 처리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병적제적	병역의무부과 대상(단, 해당되는 신체검사규칙이 없어) 징병신체검사규칙의 390조(음경절단)과 380조(고환결손 또는 위축)의 규정으로 인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법무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호적법의 대체법안인 신분등록법안에서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사항이 공부상에 나타나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이었다. 법무부에 의하면 가정법원의 성별변경 판결을 얻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관서(이하, 등록관서라 함)에 성별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그 사항이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이때의 등록부는 ‘관념적 의미의 공부’일 뿐 종이호적부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공부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공부의 열람은 등록부 자체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으나 증명서를 교부 신청할 수 있는 자로는 성별변경사항이 기본증명서(법안 제13조제1항제1호)에 기록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기본증명서 교부 신청권자(법안 제14조제1항)가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성전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법안 제13조제2항에 의해 ‘증명서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내역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향후, 대통령령 입안과정에서 성별변경 내역 공개 제한으로 인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 측면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예컨대, 성전환자와 결혼을 할 상대방의 알 권리 침

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변경사항이 기록된 증명서의 공개가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병무청과 법무부의 성별변경에 대한 행정지침을 내린 것과는 달리 다른 행정부처에서의 내부지침이나 입장은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다. 그러므로 현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행정적 고려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앞으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법제정이나 법조항 개정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행정상, 정책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앞으로의 신분등록법안에서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여부에 대한 기록

질문	현재 법무부 등에서 추진 중인 호적법 대체법안인 신분등록법안에 의할 경우 성별이 변경된 성전환자의 변경사항이 공부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성별변경 사항이 드러나는 공부의 경우 그 열람 및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성별변경을 한 성전환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
답변	성전환자가 가정법원의 성별변경 판결을 얻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관서(이하, 등록관서라 함)에 성별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함)에 그 사항이 기록되게 될 것임(현행 호적법도 마찬가지 절차로 호적에 기재됨)	열람 신청자의 범위 : 새로운 법률안의 경우 현행 호적법과 달리 등록부 자체에 대한 열람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성별변경 사항이 기록된 공부(등록부)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열람을 신청할 수 없음	법안 제13조 제2항은 '증명서의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내역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임
	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념적 의미의 공부'일 뿐 종이호적부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부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음(다만, 그 기록사항이 증명서를 통하여 외부로 드러나게 될 뿐임)	증명서 교부 신청자의 범위 : 성별변경사항은 기본증명서(법안 제13조제1항제1호)에 기록될 예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기본증명서 교부 신청권자(법안 제14조제1항)가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임	향후, 대통령령 입안과정에서 성별변경 내역 공개 제한으로 인한 성전환자의 인권보호 측면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예컨대, 성전환자와 결혼을 할 상대방의 알 권리 침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별변경사항이 기록된 증명서의 공개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겠음

* 이 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성전환자 성별변경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분등록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질의응답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2. 의료제도

국제질병분류(제10판)에 의하면, 성전환증(transsexualism)은 성별정체성 장애의 일종으로서,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신체의 성과는 반대되는 성으로 살고, 또 반대되는 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신이 선호하는 이성의 몸에 가능한 일치되도록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고자 하는 증후군이라고 한다.¹⁶⁾ 성전환자는 대체로 이러한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들로, 생물학적인 성별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에 속한다고 확신하며,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이 인식하는 성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성전환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의학계에서는 성전환증을 성 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GID)에 속하는 질병으로 분류하고¹⁷⁾ 성전환자를 장애를 가진 치료대상, 즉 환자로 인식한다.¹⁸⁾ 성 전환자에 대한 치료는 성전환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의 과정을 거쳐 성전환자임이 판명되면 이루어진다.

의학계에서는 성전환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학적인 기준과 성전환자의 치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성별정체성장애 협회(HBIGDA)가 제시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진단의 기준으로 ① 2인의 사회과학자가 진단에 참여할 것. ② 그 중 1인은 환자를 6개월 이상 알고 있어야 할 것. ③ 환자는 2년 이상 잘못된 육체 속에 살고 있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한다. 수술의 기준으로 ① 2인의 행동과학자로부터 수술을 추천하는 문서가 있어야 하고, 그 중 1인은 6개월 이상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을 것. ② 1년 이상 반대의 성으로 성공적으로 살았을 것. ③ 반대 성으로 생활하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성적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이어야 하고, 호르몬 요법도 시행되고 있었을 것 등이다.

16) 고종주, ‘성전환 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p7 재인용.

17) 이루상, ‘성전환증의 의학적 검토’

18) 의학계는 성전환증을 질환으로 보고 환자라고 보지만,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증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이는 성 주체성 장애라는 용어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의학계에서 말하는 ‘성 주체성 장애’는 정상적인 몸에 다른 성으로 정체화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성 전환자들은 자신들의 정신에 잘못된 몸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의 경우는 특별한 진단 기준은 없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서 독자적인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성전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이 점은 이후 충분한 검토가 수반된 후 적정한 기준이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술기준으로는 1990년 7월에 대한정신과학회 학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성전환증 수술 적응증”의 기준이 있다.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전환증은 현재까지는 근본적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인정하며, 정신과에서 우선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
- ② 정신과적 진료가 상당기간 지속하여 왔으나, 성과가 없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 ③ 수술 전에 희망하는 성에 대한 정신-사회적인 적응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④ 육체적 다른 질환이나, 정신과적 우울증 및 정신과적 다른 질환이 없어야 한다.
- ⑤ 수술 전에 희망하는 성에 대한 호르몬 치료를 상당기간 동안 이미 지속하여 왔고, 이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 ⑥ 나이가 21세 이상으로 사춘기가 확실히 지났어야 한다.
- ⑦ 신체 외형이 희망하는 성에 어울려야 한다.
- ⑧ 환자와 친권적 가족 및 보호자로부터 수술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⑨ 불임에 대한 환자, 친권적 가족, 보호자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⑩ 습관성 약물이나 알콜에 대한 습관성이 없어야 한다.
- ⑪ 환자에게 범법기록이 없고, 범죄 이용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 정신과 진료 등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 ⑫ 환자에 대한 추적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 ⑬ 이상의 조건과 정신과 의사 2명으로부터 성전환 수술 추천서¹⁹⁾가 있어야 한다.

19) 정신과 전문의 2명은 서로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규정하였다.

해외의 수술기준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엄격한 절차로 인해 성전환 수술의 신중함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당장 수술 외의 다른 개선점이 보이지 않는 성전환자들에게는 다소 무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학적 진단과정에서는 처음 정신과 의사의 문진 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검사 (MMPI, Sex Typed Motor Behavior, Projective Techniques, BSRI)가 이루어진다. 심리검사를 통해서는 성별정체성 장애의 정도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특정한 성별정체성 장애의 유형을 보이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면, 일정 정도의 치료과정이 이어진다.

많은 경우, 성 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호르몬 처방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는 내분비검사가 있다. 의학계에서는 내분비 검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분비 검사 없이 호르몬 처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학계에서 제시한 내분비검사의 필요성은 성전환증의 진단과정 중의 간성 (intersexual)과의 감별, 생물학적 성에 해당하는 내분비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또한 성전환 수술 전에 호르몬 투여를 받을 때, 호르몬 투여로 인한 합병증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서, 수술 후에는 합병증의 예방 및 호르몬 투여에 의한 생리학적이고 정신과학적인 평형상태의 유지를 위하여서 필요하다고 한다. 호르몬 투여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는 MTF의 경우 체형의 변화와 함께 대개 유방증대, 발기력 감소, 안면 모발 감소, 목소리 변화, 여성형 지방의 분포 등이고 FTM의 경우 성욕의 증대, 무월경, 안면 모발 증가, 대머리 현상, 목소리 변화, 근육의 힘 증가, 남성형 지방 분포 등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부작용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개 MTF의 경우 우울증, 성욕감퇴,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증세, FTM의 경우 간의 손상, 여드름 등의 증세가 있다.

<표 9> 호르몬 치료에 의한 부작용

MTF	F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변화: 우울증, 성욕감퇴 • 생물학적 변화: 빌리루빈 및 프로락틴 증가, FSH와 LH의 감소, 성장호르몬에 대한 반응 증가 • 해부학적 변화: 혈전 색전 질환, 유방암 및 전립선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 변화: 정신병 증후군, 성적 충동 • 생물학적 변화: 혈중 적혈구 증가, 빌리루빈 증가, 전립선 암 지표 증가, HDL 콜레스테롤 감소, FSH와 LH 감소 • 해부학적 변화: 출혈성 간 낭종, 여드름

호르몬 투여²⁰⁾가 이루어지고,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 생활을 지속적으로 했는지의 여부가 파악되면, 가슴수술, 성기형성의 순서로 외과적 시술이 진행된다. 외과적 수술의 종류는 가슴수술과 성기형성수술과 같은 성전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술과 생물학적 성에서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바뀌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수술로 구분된다.

성전환 수술의 외과적 조치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MTF의 경우, 호르몬 투여→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일상생활 적응여부 파악 →가슴수술(1차 수술)→정소, 고환 제거 및 질 형성수술(2차 수술)을 거치며 FTM의 경우, 호르몬 투여→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일상생활 적응여부 파악 →가슴수술 및 난소제거 수술(1차 수술)→음낭, 페니스 형성 수술(2차 수술)을 거친다. 이때 언급된 1차와 2차 수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술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계와 성전환자 당사자들이 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적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상태,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서는 성전환 수술을 3차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FTM은 가슴수술→난소제거수술→음낭, 페니스 형성 수술의 3차에 걸쳐 성전환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을 하지만 성기형성수술 이후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질 협착이나 요도협착 등의 예가 대표적인 성기형성수술의 부작

20) 의학계에서 성전환 수술을 위한 호르몬 투여의 기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호르몬 투여기간은 병원에 따라 지침이 달라지기도 하고 개인 의사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동아대 부속병원에서의 기준에 의하면 성전환 수술 전 적어도 6개월 이상의 호르몬 투여를 요구하지만 연세대에서는 연속적으로 최소 12개월의 호르몬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

용이다. 부작용이 있는 경우는 다시 재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국내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구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석권 교수(동아대 의대 성형외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술만 230건(2006년 7월 현재)이 넘는다.

3. 국외사례

1) 각국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의 인정여부

<표 10>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한 예

각국의 법적 대응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국가명
입법에 의한 경우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터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라엘, 싱가폴
행정권한에 의한 경우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판례에 의한 경우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폴란드
미국	총 28개 주 및 워싱턴DC가 입법 혹은 행정절차로 인정 (태네시주만은 유일하게 금지)
중동국가 중에서	아랍트, 이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금지)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인정

* 大島俊之、性同一性障害と法 (2002) , 石原明、大島俊之外供述、性同一性障害と法律 (2001) , Julie A. Greenberg, Marybeth Herald , You Can't Take It With You: Constitutional Consequences Of Interstate Gender-Identity Rulings, Washington Law Review (2005) 및 Goodwin v. UK 판결을 참고, 정리하여 제시한 표이다.

외국의 상당수 국가들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입법을 제정하거나 행정권한, 판례 등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입법제정으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영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었고 행정권한에 의해 성별변경을 인정하는 국가들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²¹⁾이 있었으며,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판례로서 인정하는 국가들은 프랑스²²⁾,

21) 중국의 경우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호적관리권한이 있는 공안국에 의해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다. 먼저 1. 정신과진단서 2. 자기의사를 밝히는 본인서면 3.부모동의서면 4. 부모와

룩셈부르크, 스페인, 폴란드 등이 있었다. 미국은 28개 주 및 워싱턴DC에서 입법이나 행정절차로 인정하고 있었다. 중동국가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집트, 이란, 인도네시아가 성별변경을 허락하고 있다. 이 중 성전환 수술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나라로 덴마크, 핀란드가 있다.

2) 각국의 공부상 성전환자 성별변경의 요건²³⁾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요건은 대체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되거나 민법이나 등록법의 개정, 행정권한을 통해 규정되었다. 이 가운데 성전환자의 규정으로 성 주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이하 GID)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국가는 스웨덴과 독일이었다.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연령제한이 있는 국가는 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일본으로 18세, 20세의 연령제한이 있었다.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성별변경의 연령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혼인여부가 미혼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가는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였고 성별 정정 판결로 혼인해소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이탈리아와 터키였다. 의학적 조치의 정도는 대체로 ‘생식능력이 없을 것’으로 규정된 경우이거나 ‘외관이 근사할 것’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는 수술을 요구하는 주가 일부 있기도 하였다.

대체로 각국의 사례에서 볼 때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일부국가에서 연령과 혼인여부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었고 의학적 조치의 정도는 모든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수술신청서를 공안국에 제출하여 호적변경허가서를 받은 이후 성적합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를 행할 수 있다. 수술 후에 호적이 변경된다.

- 22) 프랑스는 신분증서상의 성별변경을 인정해오지 않다가 1992년 3월 25일 유럽인권법원 판결에 의해 유럽인권조약 제 8조 제 1항 프라이버시 규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받은 후, 판결을 변경하였다.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내과적, 외과적인 치치의 결과 성전환증상을 가진 사람이 드디어 그의 처음의 성에 수반되는 특징을 전부 가지지 않고, 그의 사회적 행동과 일치하는 반대의 성에 근접하는 신체적 외관을 가지기에 이른 때’ 성별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1992. 12. 11).
- 23) 大島俊之、性同一性障害と法 (2002) , 石原明、大島俊之外供述、性同一性障害と法律 (2001) , 김민규, 성 주체성 장애자에 대한 법적문제, 민사법이론과실무제 6집(2003)등 을 참고, 정리하였다.

국내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인정여부와 성별변경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요건으로 인정을 할지를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1> 각국의 공부상의 성전환자 성별요건

국가	GI 정의	나이 (만)	혼인여부	의학적 조치의 정도	기타
스웨덴 (특별법‘72)	있음	18	미혼	불임수술 등으로 생식능력 없을 것	선허가후수술-성선적출 및 외관근사수술(SRS)은 23세 이상 가능하며 사회청 허가 필요
독일 (특별법‘80)	있음	없음	미혼	생식불가능, 수술로 외관근사 ²⁴⁾	나이(25세 이상)조항 위헌판 결 후 삭제 3년간 원하는 성으로 살려 함 ²⁵⁾
이탈리아 (특별법‘82 :민법의신분증서 정정규정적용가 능함을밝힘)	없음	없음	성별정정판 결로 혼인해소	“성의특징에 관해 생긴 변경”-판례해석은 해부학적 특징 변경 요구로 봄	선허가후수술-의학적, 외과적 치료 위한 허가필요, 이미 치료받은 자는 법시행일 1년내에 정정신청할 것
네덜란드 (민법개정‘85)	있음	-	미혼	생식불가능(“아이 낳을 수 없는 상태”)	
터키 (민법개정‘88)	없음	-	성별정정판 결로 혼인해소	“출생 후 성전환이 발생한 경우”	
뉴질랜드 (출생사망및혼인 등록법개정‘95)	유사한 언급있 음	18	미혼	의학적 치료받음	미성년자별도규정 있음
오스트리아 (회장‘96)	없음	없음	미혼	외관근사	
영국 (Act‘04)	있음	18	미혼	필요 없음	2년이상 바꿔고자 하는 성으로 살았음
일본 (특별법‘04)	없음	20	미혼	성선결여, 외관근사	아이가 없을 것 ²⁶⁾
미국 ²⁷⁾			-	수술요구(20개주), 치료(2개주), 요구없음(6개주)	
캐나다 ²⁸⁾			미혼(3개주), 규정없음(4개주)	수술요구(7개주 ²⁹⁾), 의료 외과적 조치(1개주-퀘벡)	

* -로 제시된 항목은 미쳐 성별변경 요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표시한다

24) FTM의 경우 외과적 수술로 인하여 다른 성의 외관에 어느 정도 근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1. 가슴적출, 자궁/난소적출을 끝냈어야하며 2. 질폐쇄, 페니스/고환형성술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TF의 경우는 가슴성형, 페니스/고환 적출, 질형성을 요구한다.

- 25) 이는 3년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성으로서 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고자 하는 성으로 살고자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산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 26) 이는 인지한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원천적으로 금하고 있어 일본국내 당사자 NGO들에게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 요건을 없애기 위한 운동 중에 있다.
- 27) 그 외의 주에서는 관련조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법체계가 판례 중심인 것을 상기 할 때 입법이 안 되어 있다고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더 깊은 조사를 요한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976년 뉴저지 주의 M.T v. J.T. 사건에서 남성과 결혼한 MTF의 결혼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이후 성전환자의 혼인을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출현하였으며, 출생기록부상의 성별변경을 허용하는 주가 계속 늘게 되었다고 한다.
- 28) 캐나다의 총 10개주 중 8개 주만이 확인 된 결과이다. 나머지 두 개주는 아직 조사되어 있지 않다.
- 29) 그 중 4개주는 ‘트랜스섹슈얼수술’이라 칭하고 있고, 3개주는 ‘해부학적구조변경’이라 칭하고 있다.

4장. 성전환자의 삶

이 장은 성전환자의 삶을 재현하고 성전환자의 전 생애에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갈등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성전환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지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자기의 경험과 정체성을 인식하는 과정, 그러한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는 성전환자들의 현재의 생활의 통계적인 모습을 수치화하여 활용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첫 번째 절에서는 성전환자의 생애와 차별을 중심으로, 두 번째 절에는 성전환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절에서는 두 조사의 결과를 통해 발견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1. 성전환자의 생애와 차별

1) 조사개요

(1) 조사방법 및 조사개요

성전환자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듣고 구체적인 생애과정을 그려보고자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인권차별의 모습을 생생히 파악하고 성전환자들의 삶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심층면접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전환자들에 대한 선행연구와 자료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성전환자들을 직접 만나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만이 가장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심층면접의 주요대상은 성전환자 당사자들로, 현재 스스로의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와 자기-확신을 기반하여 스스로 성전환자라고 정체화하고 의학적 조치를 선택한 이들이 주된 대상이며, 때로 자신의 고유한 판단 속에서 의학적 조치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성전환자로 정체화한 이들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심층면접 대상자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에 성전환자 인권단체인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단체를 통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

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전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참여를 허락해 준 성전환자들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FTM의 커뮤니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MTF의 경우, 이태원 지역의 트랜스 전용클럽을 방문하였고 업소의 허락을 받아 심층면접을 시도 하였다. 따라서 심층면접자의 비율은 MTF에 비해서 FTM이 더 많아졌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였고, 면접이 진행된 장소는 주로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커피숍, 음식점, 모텔 등에서 이루어졌다. 진행된 면접은 사례에 따라서 다양한 횟수로 만남을 가졌다. 면접에서 질문하는 문항은 생애 전 과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어디서 출생하였고, 자신의 성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었으며, 현재 어떤 의학적 조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학적 조치가 삶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물어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FTM과 MTF는 그 경험의 차이가 발견되었고,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피면접자들이 대답하기 꺼려하는 것은 굳이 묻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함과 동시에 그들의 신분노출과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심층면접이 진행된 시기는 2006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다. 한번의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2~3시간 정도였고, 기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면접지를 가지고 되도록 피면접자가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접지의 순서대로 질문하지는 않았다.

(2) 면접대상자 개요

<표 12> 심층면접대상자 개요

FTM				MTF			
사례 번호	이름	나이	의학적 조치 정도	사례 번호	이름	나이	의학적 조치 정도
1	이○한	27	호르몬	23	이○혜	36	호르몬
2	구○우	25	-	24	이○정	32	호르몬, 가슴, 성기형성수술
3	김○진	36	호르몬	25	강○○	21	호르몬, 가슴수술
4	박○환	34	호르몬	26	김○경	34	호르몬, 가슴, 성기형성수술
5	안○상	33	호르몬, 가슴수술	27	임○라	22	호르몬
6	김○룡	28	호르몬	28	박○정	22	호르몬
7	정○수	20	-	29	도○○		호르몬
8	이○혁	26	호르몬, 가슴수술	30	송○지	49	호르몬, 가슴, 성기형성수술
9	신○영	48	호르몬	31	고○정	34	호르몬, 가슴, 성기형성수술
10	김○천	37	호르몬	32	정○진	29	호르몬, 가슴수술
11	조○우	33	호르몬, 가슴수술	33	김○숙	36	가슴, 성기형성수술
12	연○수	24	호르몬	34	박○순	60	가슴, 성기형성수술
13	신○섭	26	호르몬	35	오○연	31	호르몬, 가슴, 성기형성수술
14	이○규	21	-	36	민○연	31	호르몬
15	임○현	31	호르몬	37	이○영	34	호르몬, 가슴, 성기형성수술
16	한○준	26	호르몬	38	진○○	43	호르몬, 가슴, 성기형성수술
17	이○섭	42	호르몬				
18	양○모	33	-				
19	김○철	34	가슴수술				
20	박○현	31					
21	문○식	25	-				
22	김○한	26	가슴수술				

*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제시하였다.

성전환자를 우선적으로, MTF와 FTM로 구분하며, 고르게 분포하려 하였으나, FTM의 22명, MTF는 16명으로, FTM의 심층면접이 더 많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있어, FTM에 비해서 MTF의 현재적 삶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으며, 삶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FTM의 상황에 대해서 보다 구체성을 띠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다.

성전환자의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과 의학적 조치의 선택 그리고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의학적 조치의 여부 및 정도를 중심으로 면접자가 만났다. 그런데 대부분의 MTF들이 호르몬 투여를 하는 동시에, 가슴 수술 및 성기 성형 등의 성전환수술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FTM들은 호르몬 투여가 대부분이었고, 간혹 가슴수술을 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비용, 위험부담, 기간, 수술만족도 등에서 의학적 조치에 대해 FTM이 MTF에 비해 더욱 부담감을 가지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성전환자의 생애

이 장은 성전환자들이 어떠한 모순과 갈등의 과정에서,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전환자(혹은 남성/여성)로 정체화하게 되었는지 관한 것이다. 성전환자의 삶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식하는 계기나 시점과 자신의 태고난 육체의 조건과 그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과정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삶의 경로를 거치고 있었다. 더욱이 그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인지 혹은 남성인지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은 너무나 상이하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들이 겪는 차별은 생물학적인 성 혹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을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즉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 본질주의, 고착화된 젠더 이분법을 넘나들면서, 정형화된 성역할 및 생물학적 성에 대한 규정에 대한 혼란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차별을 받고 있는 성전환자들은 각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는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출생 및 아동기

성전환자들에게 유년기는 태어난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과의 간극을 스스로 해명하는 데 있어 유효한 근거로서 해석된다. 충분히 사회화되지 않았기에,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를 알지 못했을 때조차 자신들의 욕망은 생물학적 여성 혹은 생물학적 남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확신하는 근거들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FTM의 경우, 남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남성이고, MTF의 경우, 여성이 된 것이 아니라 본래 여성임을 확신하는 증거로 이해된다. 따라서 유년기의 놀이문화, 옷차림, 성별 역할 등은 이런 의미에서 성전환자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① 놀이문화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할 때, 유사하게 지적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별화된 놀이문화에 대한 거부였다. FTM의 경우, ‘여자’아이가 흔히들 즐기는 방식의 놀이형태가 아닌 주로 ‘남자’아이들의 놀이 형태를 즐기면서, 부모나 주변인들로부터 ‘여자답지 못하다’라는 우려를 들었다고 회고한다. 혹은 MTF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들의 놀이형태보다는 여자아이들과 같은 놀이를 훨씬 즐겼고, 부모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애 같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FTM은 여자아이들의 놀이인 고무줄, 인형놀이, 소꿉놀이를 싫어했고 남자아이들의 놀이인 축구, 야구, 로봇 조립, 여자아이들 괴롭히기 등을 즐겨했다.

【사례 11】 조○우 (FTM, 33세)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이었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가 여동생하고 남동생 키울 때는 그렇게 힘든 걸 몰랐는데, 저 키울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옷 갈아 입혀나 가지고 보내면 쌔움질 해 가지고 바로 더러워지고 훑먼지 둘러쓰고 오고, 그리고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약초 캔다고 올라 가 가지고 나무뿌리 먹고 토하고, 그리고 애들, 이제 뭐, 말 안 들으면 패러 다니고, 그래 가지고, 속 많이 썩었다고 그러더라고.

【사례 26】 김○경 (MTF, 34세)

아이들이랑도 우정관계가 좋았는데, 유독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런 것들이 고무줄

놀이 하는 거, 공기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성전환자들에게 성별화된 놀이의 형태를 거부하고 생물학적 성이 아닌 다른 성의 놀이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지점은 생물학적 성과 같은 또래집단보다는 다른 성의 또래집단에게 느끼는 소속감과 동일시이다. 자신의 샘물학적 성과는 다른 성의 또래집단에 동일시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미묘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지향하는 집단으로부터의 인정 혹은 소속감이 놀이의 형태 보다 중요한 지점이었다.

【사례 36】 민○연 (MTF, 31세)

애들한테 거짓말해 가지고 여자친구들을 같이 (집에) 데리고 와 가지고 같이 데리고 놀고 그런 건 있었어요. 애들한테 우리 집에 놀러오면 책받침 준다고 하고 여자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집에 데려왔는데 책받침 안주니까 그냥 가고. 나는 여자친구랑 놀고 싶어서. (중략) 근데 그게 힘들었어요,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사례 20】 박○현 (FTM, 31세)

초등학교 때는 남자애들하고 삼총사 사총사 지어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하고 뭔가 공유를 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것들도 없고, 여자친구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요. 남자애들은 껴줬어요. 거기에서라도 놀았으니까 왕따를 당한 적은 없어요.

생물학적 성이 같은 또래집단보다는 다른 성의 또래집단에게 더욱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고 싶었던 것이 성전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억이다. 왜냐하면 이 유년기의 놀이문화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들로 여겨지는데, 말하자면 ‘잘못된 몸을 갖고 태어난 여성’ 혹은 ‘잘못된 몸을 갖고 태어난 남성’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매우 본질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FTM과 MTF 모두 어렸을 때,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또래의 아이들과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다르다’라는 것의 의미가 보다 정확해지는 것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줄서기, 짹꿍, 출석번호, 이름 등에서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될 때,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

【사례 36】 민○연 (MTF, 31세)

집에서는 까불까불 잘 놀았지만 학교는 싫었어요 학교에선 꼭 남자 여자 자리같은 거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린나이에도 그런 게 싫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좀 다르구나, 그렇게 알았죠. 확실히 안 거는 초등학교 갔을 때 그 때 알았고. 초등학교 가서 나는 남자구나, 그걸 남자 여자 가를 때 알게 되었는데 자꾸 나를 남자 쪽으로 빼는 게 싫었어요.

이처럼 성전환자에게 유년기의 기억, 특히 놀이문화는 자신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남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고, 그 다름을 느꼈던 상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다름’을 인식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이후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이런 점에서 성전환들의 삶에 있어 유년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② 옷차림

성전환자는 유년기에서, ‘옷차림’의 문제를 가장 강렬한 사건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성별화된 놀이문화는 성별을 위반하거나 넘다듬어 자유로웠던, 비교적 유쾌한 기억인 반면에, 성별화된 옷차림은 훨씬 더 정교하고 심각하게 기억된다. 특히 FTM의 경우, 치마를 입으라고 강요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생생하게 기억하곤 했는데, 치마의 문제는 이후 청소년기 때 ‘치마교복’에서 더욱 강화된다. 이에 반해 MTF의 경우는 치마를 입고 싶어 했거나, 치마를 입는 행위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이 비교적 적었다.

【사례 20】 박○현 (FTM, 31세)

어릴 때 기억이라고,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막연하게 기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였던거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엄마 마음대로 입히지 않습니까. 치마를 입혀서 내보내는데 치마입기를 너무 너무 힘들어해서 때리셨대요. 왜 안입느냐. 입혀놓고 보면 돌아와서

구실이 없는거죠. 일부러 찢어서는 “이거봐, 치마가 찢어졌어”. 치마를 입지않고. 그런 식으로.

【사례 24】 이○정 (MTF, 32세)

유치원 때 제 머리가 바가지 머리였어요. 그 머리가 너무 기르고 싶어서 더 길어 보이려고 하려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녔고.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레이스양말 아니면 안 신었대요.

【사례 25】 강○○ (MTF, 21세)

어른들 말로는 너무 한복을 좋아해서 친척언니랑 치마를 잡고 싸우다가 치마를 찢은 적이 있고 너무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훈드레스를 만들어준 적도 있고, 그건 기억이 나요. 그 훈드레스는 기억이 나오. 파란색 계열. 짙은 파란색 계열. 학교 다니기 전에 어릴 때 너무 좋아하니까 만들어줬어요.

FTM과 MTF들은 ‘치마’와 ‘바지’라는 성별화된 옷차림에서 갈등과 긴장을 느꼈다. 일반적인 스타일의 상징 속에서 보자면, ‘치마’는 고유하게 여성의 것이다. 대부분의 생물학적 여성들은 스타일에서 ‘치마’와 ‘바지’를 넘나들면서 남성적인 혹은 중성적인 복장으로의 크로스 드레싱(cross dressing)이 가능한 것에 반해서, 생물학적인 남성들은 이러한 스타일에서 이러한 교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성이 ‘치마입기’를 거부한다면 일종의 도전으로 해석되는 반면에, 남성들이 ‘치마입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유희나 놀이로 수용된다.

‘옷차림’과 관련한 기억은 FTM과 MTF 모두 ‘나는 그게 좋았는데 남들에게는 그런 게 뭔가 잘못된 것’으로서 남아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낳는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FTM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치마입기를 거부하는 것이 ‘말 안 듣는 (여자)아이’ 혹은 ‘고집스러운 (여자)아이’로 보였던 반면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MTF의 치마입기는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남자)아이’ 혹은 ‘여자 흉내 내는 귀여운 (남자)아이’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런 만큼 옷차림의 문제가 FTM과 MTF 사이에서 부모나 사회와의 갈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듯이 보인다.

③ 성별 역할

성전환자들의 유년기에서 성별 역할, 역시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모든 여성 혹은 남성은 성별 역할을 사회적, 문화적으로 부여받는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에 부여된 성별 역할이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태어난 성에게 부여된 성별의 역할과 달리,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자하는 욕망이 있었다.

【사례 34】 박○순 (MTF, 60세)

초등학교 때 나는 좀 건강한 남자애들, 싸움들을 잘하는 남자애를 잘 따랐어요. 또 그런 남자애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애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네를 타면, 남자애들은 서서 땡기고 나는 당연히 앉아서 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21】 문○식 (FTM, 25세)

초등학교 때 여자남자 따로 가르면 갈등까지는 아니어도 어색한거죠. 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잖아요. (중략) 포크댄스 같은 거를 남자애들이랑 같이 했어요. 저는 여자 역할을 했어요. 정말 악몽이었어요. 그걸 연습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게 악몽 같았어요. 그때 치마! 초미니! 너무 쉽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유년기 동안, 생물학적 성에 부여된 성별 역할을 거부하거나 다른 성별 역할에 동일시하고자 했던 행위들은 모호하고 미묘하지만 중요한 경험이다. 성전환자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으로서 인정받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취하는 때 안정감을 느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감정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자신의 성별정체성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례 15】 임○현 (FTM, 31세)

저는 제가 여자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가 위낙에 남의 눈치를

안보는 스타일이라. 여자친구들이 이성인거지, 남자친구들이 동성이라. 남자애들이랑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면 나랑 같은 애들. 고무줄하고 그러면 니네들은 니네들끼 하고 놀아. 그게 굉장히 정확했어요. 학교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싫었던 거죠. 종이인형 갖고 노는 게 싫었고. 나는 미미인형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싫어했기 때문에 안 사주신거죠. 위낙에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나는 애네들(남자애들)하고 같은 편 이렇게 나눠지는거죠.

【사례 24】 이○정 (MTF, 32세)

유치원 때, 제가 의식이 있었을 때부터 인형놀이, 고무줄놀이 이런 거 항상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의식이 있었을 때부터 여자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남자 여자가 나눠지더라구요. 유치원 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소꿉놀이를 하면 개가 아빠하고 제가 여자 했는데 그 남자애가 파마머리한 여자애랑만 노는거에요. 당연히 빼져서 말도 안했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더 여성스러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성전환자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게 되는데, 이 때 유년기는 매우 근본적인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은 본래 내가 (원했던) 바로 그 성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년기의 경험과 감정을 통해서, MTF는 비록 남성의 육체이지만 본래 여성이었음을, FTM은 비록 여성의 육체로 태어났지만 본래 남성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즉 성전환자들에게 유년기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자기-이해의 기반이다.

(2) 청소년기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청소년기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수반한다. 청소년기는 제도화된 젠더 시스템으로서의 학교와 소위 ‘2차 성징’이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육체의 변화, 그리고 동성애적인 감정 등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은 시기이다. 이 시기에 성전환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성’이 무엇인지 사회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전환자들은 혼란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

는 중요하게 계기를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청소년기, 말하자면 중, 고등학교 기간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성적으로 더 정교하게 짜여진 구조 속으로 진입한다. 그 속에서 성전환자 스스로 자신이 사회적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을 반복해서 겪었다. 그러면서 또래들과 ‘다름’을 더욱 명확하게 발견하고, 자신의 이러한 다름은 숨겨야 할 혼자만의 비밀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함’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분명해진다.

① 학교

성별정체성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구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는 아마도 학교일 것이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하며,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 사이에서 조금씩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부터는 혼란과 갈등이 본격화된다. 성전환자들은 곧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성격’이 변했다는 말을 하곤 한다. 왜냐하면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잘 지내오던 초등학교와 달리, 생물학적인 성(sex)에 따라 여학교와 남학교로 학교진학이 나뉘지면서,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인 성과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되고, 그 속에서 상당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젠더 규범을 강요하는 학교 시스템 속에서 FTM이나 MTF는 심한 수치심, 좌절감, 모멸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젠더 규범의 폭력성에 대한 경험은 MTF의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FTM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교복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젠더 규범을 작동시키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여학교에서는 주로 ‘치마교복’, 남학교에서는 ‘바지교복’을 착용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교복착용의 위화감은 FTM이 더욱 심각했다. 생물학적 성의 분류에 따라서 여자중학교에 진학한 FTM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토록 거부해왔던 ‘치마’를 선택의 여지없이 입어야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치마는 규범적으로 여성들만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적 스타일은 단지 치마만이 아니라 바지의 형태도 허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MTF들은 바지‘교복’을 착용할 때의 어려움은 교복 그 자체가 주는 강압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동했다면, FTM들에게 ‘치마’교복은 자율성을 억압하는 측면보다는 여성적인 것으로 코드화되어

있는 ‘치마’ 자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20】 박○한 (FTM, 31세)

중.고등학교때 사복을 입는 학교를 갔어요. 일부러 골라가지고. 제가 고른 학교는 교복 예정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주저 없이 거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두어달 있다가 교복 입으라 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교를 그만둘까. 근데 학교를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때가 교복 첫 스타트였어요, 고등학교때가. 근데 중학교 때도 치마를 입는 날이 있어서 3년 내내 맞고 다녔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를 무지하게 일찍 가는 거죠, 안 맞으려면. 까칠한 선생이나, 학생주임들한테 걸리면 지나가면 맞는거죠.

【사례 9】 신○영 (FTM, 48세)

내가 처음으로 중1때 중학교갈 때, 엄마한테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어요. 치마를 입게 되니까, 입학식을 하는데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첫날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입학 날인데 빗질을 해주는데, 단발머리잖아. 머리는 새집지어 가지고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와서 머리 좀 빗질 좀 하자구 그래. 엄마 나 사실 교복 안 입고 싶어,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나는 도저히 치마를 안 입고 싶지 않은데, 이 치마를 입고 꼭 가야할까. 엄마는 “니가 여자니까 여중에 가야지, 니가 남중에 갈거냐, 여중학교를 가야지”. 학교자체가 스트레스야.

이 성별화된 복장에 대한 위화감으로 인해서, 성전환자들은 학교 규율과의 종종 마찰을 빚게 되는데, 그러한 마찰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편견은 더욱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곤 했다.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그에 부여된 젠더적 강요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내적인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FTM의 경우, 이렇게 치마교복에 대한 위화감을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치마교복을 입어야 하는 상황에서,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출을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체육복이나 혹은 바지교복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억압적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대응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FTM들의 심리적 갈등을 더욱 강화시킨 것은 규율검사였다. 학창시절의 규율검사의 기억은 끔직한 악몽처럼 남아있다. 여학생들만 있는 학교라는 공간은 여성의 몸과 여성다움을 강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여러 가지 규율검사가 있다. 이것은

FTM들에게 극단적인 수치심을 유발시켰다. 규율검사 중에도 브래지어 착용 유무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라는 장에서 여학생들에게 여성다움, 특히 ‘참한 여성’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율검사는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이자 억압이다. 이러한 젠더 규범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의 충돌은 FTM들에게 때때로 좌절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고통을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기도 했다. 이것은 FTM에게만이 아니라 MTF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성전환자들에게 젠더 규범을 강제하고 성별을 강요하는 교육체계인 학교는 매우 폭력적인 공간으로, 그 속에서 극심한 고립감과 모멸감을 경험하게 된다.

【사례 3】 김○진 (FTM, 36세)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남자처럼 하고 다니지 마라. 하루 종일 수업 전체를 져서 욕하면서 나가신 분도 있어요. 수업시간에 영어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울었어요. 한번 우니까 울음을 그치지 못 하겠더라고요. 웬지 서럽더라고요. 제가 울어본 적 없는데, 진짜 집에선 많이 울어도 학교에 가선 안 울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엎드려서 하루 종일.

【사례 19】 김○철 (FTM, 34세)

중학교 1학년 때도 괜찮았어요. 근데, 자꾸 트러블이 생겼어요. 우리학교에서 나만큼 남자 같은 애가 없었어요. 독보적이랄까.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똑똑 던지는 말에서 차별이 있었죠. 2학년 때 무용선생님이, 반이 12, 13개였는데, 각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너 아무개 알지? 개랑 어울리지 마라. 교과시간에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 반에서는 한 마디도 안해요. 학년 선배한테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충격이라기보다는 억울했죠. 난 난데, 지가 뭔데. 더군다나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상당히 트라우마가 많이 남았죠.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성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그들과 섞이지 못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상을 나누고 관계맺기를 해야한다는 것을 곤욕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FTM들은 교우관계에 있어서, ‘남자같이 보이는 여자’들로서 또래들의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MTF들은 ‘기집애같이 보이는 남자’로서 조롱과 비

하의 대상이었다.

【사례 36】 민○연 (MTF, 31세)

초등학교 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남자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여자들한테 맞은 적은 없고 다 남자들한테 맞았어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는 조금 덜해졌는데, 고등학교 때는 호모라고 놀림 받았어요. 나는 호모 아니라고. 그때는 호모가 뭔지 몰랐어요. 나를 놀리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계속 놀리니까 그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호모가 뭐냐고. 그러니까 같은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게 호모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나 MTF들에게 있어, 조롱과 비하의 경험은 동일하지는 않다. 그들의 목소리, 체형, 외모가 충분히 여성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미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예쁜 여자’로 통용될 수 있다면, 갈등적 관계가 덜 심화되기도 한다. 그것은 MTF에게도 역시 젠더 규범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외모’는 MTF가 여성으로서 인정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점이 된다.

【사례 24】 이○정 (MTF, 32세)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제가 여자 같으니까 저를 이뻐하더라구요.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저를 찍었다고 다른 애들이 저를 못 건드리게 하더라구요. 여자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자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② 2차 성징의 발현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점과 정황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2차 성징’은 성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며, 유년기와 달리 생물학적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것은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절망과 좌절의 원인이자, 자신의 육체와의 경합을 벌이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정체성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육체가 남성과 여성으로 분명하게 변별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정체성의 통합이 가능

했다. 그러나 육체가 점차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식하는 성과 생물학적 육체 자체가 벌이는 경합은 성전환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즉 육체에게 배반당한 것이다. 배반당한 육체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라고 느꼈던 것의 실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이러한 혼란의 과정 속에서 육체를 혐오하거나 육체와의 괴리를 경험한다.

대부분 FTM들은 ‘생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가슴’이 나오면서 자신이 느꼈던 ‘좌절감’을 토로했다. 자신의 몸이 여성이었음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남성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경험으로 기억된다. ‘생리’라는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³⁰⁾ 그러므로 생리나 가슴의 발달은 단순히 몸의 변화에 대한 낯선 경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작동한다. 생리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떤 것’이자 자신의 지금까지의 욕구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생리로 인해서, 생물학적 여성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토록 거부해왔던 여성의 육체로서의 표식이 생겼다.

【사례 3】 김○진 (FTM, 36세)

생리가 저에게는 큰 거였어요. 그 때 그 중학교 1학년때는 성격이 쾌활했는데, 그 계기로 바뀌었어요. 다른 여자애들이 볼까 그게 참, 여자애들에게 난 남자스러운 게 있었는데, 니네랑 같은 여자애구나라는게. 여자로 보인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중학교때는 제가 남자로 성장할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여자로 되니까 적응이 안되더라고요.

【사례 15】 임○현 (FTM, 31세)

가슴 나오기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학교를 안 갈라고 했죠. 이상한거에요. 남자애들은 안하는데 이게 뭐냐, 되게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몸이 여자니깐 하는거다. 가슴 나오고 나서도 붕대 감아달라고 되게 싫었어요. 감고 다닌 적도 있죠. 감았는데 티가 나니깐 감으면 옷도 큰옷 입고 다니고. 그래서 재네들하고 나하고 분명히 같애요. 남자애들하고 나하고는. 하지만 몸이 다른 거는 맞거든요.

30) 심층면접에 응했던 FTM들 가운데에는 이미 생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했지만, 실제 자신들이 생리를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의 정도는 매우 컸다.

<사례 3>의 김○진씨나 <사례 15> 임○현씨처럼, MTF 역시 대체적으로 페니스, 풍정, 턱수염, 목젖, 변성기 등과 같은 남성 육체의 상징들을 자신의 몸에서 발견할 때, 자신의 육체를 혐오하거나 자신의 육체와의 괴리를 경험한다. 남성 육체의 상징들은 MTF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성의 이미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턱수염, 목젖, 변성기 등 외관상의 변화가 뚜렷하기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MTF들에게 가장 곤란하고 어려웠던 부분은 페니스와 ‘발기’라는 현상에 관한 것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례 33】 김○숙 (MTF, 36세)

페니스 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처리하고 싶어서 자위를 했어요. 자위를 하면 발기가 안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 제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게 너무 힘들지. 만약 발기가 안 되었다면, 수술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사례 34】 . 박○순 (MTF, 60세)

발기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보통 남자애들처럼 발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정신적인 것의 해결책은 아니니까. 발기하는 것이 보일까봐, 옷을 두개씩, 속옷을 두개씩 꽉 붙여서 입었어요.

성전환자들에게 ‘2차 성징’은 자신의 몸과 자신이 성별정체성이 갈등하는 지속적인 경험으로서, 그 과정에서 성전환자들은 육체와의 충돌과 협상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성전환자들에게 육체는 단지 생물학적, 존재론적인 몸, 즉 단순한 물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체는 젠더 규범이 부여되고 강제되는 장소이며, 자신이 원하는 성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경합하는 공간이다. 말하자면 2차 성징을 통한 몸의 변화로 인해서, 자신이 인식하는 것으로서의 여성 혹은 남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몸의 변화와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별정체성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들은 ‘여성의 몸을 가진 남성’ 혹은 ‘남성의 몸을 가진 여성’으로 정체화하면서 자신을 이해

하기 시작한다. FTM의 경우 자신은 여성적이지 않은 다른 어떤 사람, 예를 들어 남자 같은 행동과 남자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여자의 몸을 가졌지만, ‘여전히 남자이다’ 혹은 ‘적어도 여성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그것은 MTF 역시 마찬가지인데, 비록 남성적인 육체로 몸이 변화하고, 어떤 경우 타인에게 충분히 남성으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고유한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여전히 여자이다’ 혹은 ‘적어도 남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육체와 자신의 욕망 사이의 복잡한 갈등으로 인해서 이후 의료적 조치라는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사례 14】 이○규 (FTM, 21세)

저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어느 정도 가슴이 나오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언젠간 당연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겠지. 비관적으로 생각을 안했어요.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왜냐하면 장난감 그런 걸 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아버지 면도 크림 바르고, 수염도 없는데 면도도 해보고, 스킨도 바르고.

③ 성애적 감정

성전환자들에게 성애적 감정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래의 아이들과 ‘다름’을 느끼고, 또래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다름’을 발견하고, 자신이 다르다는 느낌은 무언가 숨겨야 할 비밀이 되기도 하다. 이렇듯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무언가 모호함과 부적절함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계기가 바로 구체적인 대상과의 성애적 관계이다.

생물학적 여성 혹은 남성이며, 이성애자들인 경우, 청소년기에 소위 ‘이성교제’에 관심을 갖는다. 또래집단 내에서 ‘성애적 관계’는 주된 관심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성애적 관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사회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젠더 규범을 수용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연장된다. 생물학적 여성 혹은 남성이자 이성애자들이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스타일에 관심을 쏟는 동안, 성전환자들은 그러한 또래집단에게 이질감을 느낀다.

【사례 21】 문○식 (FTM, 25세)

친구들이랑 심하게 잘 지낼 때는 중학교 때였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은 중학교 때 맨 날 남중, 남고애들 만나고 많이 하잖아요. 그 시기에. 항상 약속을 하고 놀자 해서 나오면 조인(join)을 하는데 저는 그게 싫은 거에요. 관심사가 남자로 쏠리니까 나는 관심 없는데. 애들 모여서 화장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싫었어요. 근데 다수가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긴 했어요. (짝짓기 할 때는 빠졌어요?) 그렇죠. 나 은따 맞았나보다. 그래도 노는 건 좋아했죠. 항상 놀 때는 부르고 남자 만나러 갈 때는 지들끼리 가고.

【사례 26】 김○경 (MTF, 34세)

좋아한다고 고백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자애들 중에요?) 예, 그런데 그 친구한테 나는 그런 건 아니다, 너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더 친해진, 오히려 더 친해진 친구들이 있어요. (속마음을 얘기하면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랑 좋은 친구는 될 수 있다. 이성(異性)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남녀간 사이는 아닌 것 같다. 다른 남자애들처럼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고.

대부분 ‘첫사랑’은 자신의 정체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것은 첫사랑의 기억과 자신의 성전환자 정체성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더라도, 상대와의 관계 맷기 속에서 상대가 자신을 어떤 성(gender)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자신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과 생물학적 조건이 동일한 또래 집단들의 성적 지향과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상대가 자신을 어떤 성(gender)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전환자들은 자신과 ‘첫사랑’과의 관계를 동성애로 인식하기도 하고 혹은 그저 동성애적인 외피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동성애를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성(sex)를 지닌 집단 내의 성애적 관계로 이해하고,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동성애’로 규정하면서 받아들기도 했다. 혹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여성의 몸을 가진 남성’이거나 ‘남성의 몸을 가진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외관상 동성애적일 뿐 실제로는 이성애적인 관계로서 이해하기도 했다.

【사례 25】 강○○ (MTF, 21세)

중학교 3학년 때 절 처음으로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 애는 이성애자예요. 저를 동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여자로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메일을 하루에 6~10통씩 보내는데 음악, 메일, 시에 뭐에다가 이야기 자기 소설. 자기편지 그랬는데 1주일에 한번씩 답장 보내줬죠.

【사례 2】 구○우 (FTM, 25세)

중학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자각을 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원래 감정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는 묘한 감정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감정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중략) 연애감정 비슷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략) 내 정체가 뭘까 그런 거. 원래 책보는 거 좋아했으니까 남산도서관 교보문고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이런 저런 거를 찾았죠. 그때 단어를 전부다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동성애자가 아닐까라고 어렴풋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사례 25>의 강○○나 <사례 2>의 구○우처럼, 성애적 경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확장시켜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 된다. 자신의 성애적 경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성전환자들은 전혀 다른 생애사를 구성한다. 자신의 경험을 동성애자로서 규정한 경우에는 이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전환자라는 정체성을 확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긴장과 갈등의 시간을 경험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여성의 몸에 갇힌 남성’ 혹은 ‘남성의 몸에 갇힌 여성’으로 자신을 정체화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육체와 자신의 성별정체성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3) 성별화된 공간

① 공적 영역

성전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긴장’ 속에 놓이게 된다. 젠더 규범이 언제, 어디서든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는 성전환자들에게 불일치함을 느끼도록 자극한다. 이 불일치함은 느끼는 대표적인 공간을 바로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변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매우 내밀하고, 서로 다른 성의 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에 부여된 젠더 규범이

매우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여자 화장실의 표식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빨간색에 여성의 스타일을 지시하는 치마를 입은 모습이며, 남자 화장실의 표식은 남성성을 상징하는 파란색에 남성의 스타일을 지시하는 바지를 입은 모습이다. 성전환자들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선택해야 할 때,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하는지, 어떤 성별을 선택해야하는지 곤란해 할 뿐만 아니라, 어디 곳을 선택하든 내쫓기거나 혹은 배제당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중구속에 의해서 성전환자들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과 힘든 결정을 반복한다.

【사례 26】 김○경 (MTF, 34세)

대학을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화장실 가는 것.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중략) 가기 싫은 거죠. 나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 화장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요. 계속. 화장실 가기 전에, 학교를 가기 전에 화장실을 참을 준비를 하고 가요. 갔는데도 생리적인 거니까. 그러면, 뭐, 다른 건물을 가요. 제가 언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으슥한, 그것도 도서관 뒤편에 있는 건물 하나가 굉장히 으슥한데 거기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러면 수업을 받다가 이 건물에서 쓸 수 있는 곳까지 굉장히 멀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사례 5】 안○상 (FTM, 33세)

사회생활하면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물을 잘 못 먹고. 외모가 허옇고 조그맣고 그래서 남자애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자화장실 가면 뭐라고 하고 그래서 숨어서 들어가고. 아니면 나를 아는 친구랑 손을 잡고 들어가죠. 나오면 얼굴 빨개지고 그러다가 그냥 남자 화장실을 가자고 생각을 했죠. 남자화장실을 간 거는 29살 때. 그 전까지는 여자화장실을 다녔어요. 남자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성격상 많이 순응적이라서 많이 참고 숨고 그랬어요.

【사례 15】 임○현 (FTM, 31세)

소풍을 가면 저는 음료수를 싸간 적이 없어요.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못가거든요. 제 소풍가방에는 밥, 과자, 빵이 들었지.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전혀 이용을 못하죠. 그래서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 되있으면 편하게 가겠는데 분리가 되어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는 남자화장실을 가도 되는구나 편하게 마셨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물 종류를 안마셨어요

그러나 성전환자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이중구속은 화장실과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그다지 성별화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공간 속에서조차 벌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들은 길을 걸을 때,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성으로 보이는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으로 보이는지, 자신이 성전환 여성 혹은 성전환 남성으로 보이는지 혹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등에 관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길을 물을 때, 자신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속옷을 사려 갔을 때, 점원이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말이다. 이렇듯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타인에게 충분하게 인식되는 것, 즉 ‘통용되기(passing)’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충분히 생물학적 여성 혹은 남성으로 통용되기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타인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신경 쓰게 되고, 타인에게 비춰진 자신의 이미지를 항상 확인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맷기에 자신감을 잃고, 소위 ‘주눅 든’ 성격이 되기도 한다.

【사례 26】 김○경 (MTF, 34세)

“쟤 여자야 남자야” 들리든 들리지 않든 그 말이 정말 칼로 찔리는 것 보다 훨씬 더 그 느낌이. (길을 지나갈 때요?) 저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랑 같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미안함. 쟤는 이상한 애랑 다녀, 나는 그 눈빛을 이 사람이 감수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사례 3】 김○진 (FTM, 36세)

지금 같았어요. 멋을 못 부린 여자였어요. 주로 이제 입고 다닌 스타일은 좀 지금은 남자 같은 스타일인데 그때는 중성적이라서 길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시선 마주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앞만 보거나 유리창만 쳐다보고.

따라서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타인에게 인식되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물학적 육체의 특징, 예를 들어 MTF의 경우, 체모, 목젖, 목소리 등과 같은 남성적 표식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고, 더불어 보다 더 ‘여성스러운(feminine)’ 말투, 몸짓, 스타일, 취향 등을 취하기도 한다. 정형화된 젠더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면 할수록 훨씬 더 ‘통용되기(passing)’가 용이해지며, 의심받

지 않고 통용될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긍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사례 27】 임○라 (MTF, 22세)

버스나 지하철 타면 여자애들이 돌아보다가 소곤거리다 다시 돌아보면 그건 갠 걸린 거야. 나 혼자 다닐 때나 친구들 있잖아.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여자애들이 한번 뒤돌아봤다가 지네들끼리 얘기하다 다시 뒤돌아보잖아. 그럼 (성전환자라는 것을) 들킨 거야. 이렇게. 그래서 더 수술하고 싶어 하지.

② 사적 영역

성별화된 공간은 공적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내밀하며 지속적인 관계 맷기를 해야 하는 사적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 성이 동일한 집단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숙사, 탈의실, 병실, 캠프, 군대 등을 불편한 공간으로 그리고 그들과의 생활을 곤란함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어 탈의실이 마련되지 않는 여학교에서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서로의 몸을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든지, 신체적 접촉을 재미의 하나쯤으로 치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FTM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때때로 신체 접촉으로서 친밀함을 드러내는 방식 혹은 서로의 몸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은, 성전환자들에게는 너무나 곤혹스러운 사건으로 기억된다.

【사례 7】 정○수 (FTM, 20세)

사람 힘들게 하는 건 중학교 때도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화장실 가서 문닫고 갈아입고. 여자애들이 교실에서 갈아입었나? 하튼 먼저 갈아입었어요.

설사 자신이 원하는 성과 같은 생물학적 성을 지닌 집단과 함께 어울릴 때 역시 불편함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FTM이 비록 생물학적 남성들과 함께 분류되어 함께 지낸다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 다시 한 번 배제당하거나 자신의 육체를 인식하게 된다.

【사례 15】 임○현 (FTM 31세)

우린 다 같이 잤어요 방에서. 남자애들하고 같이 자고 저는. 캠프에 가서도 여자애들 진행팀 말고 전 남자애들하고 방을 같이 썼기 때문에. 여자애들하고 방 쓴 적이 거의 없어요. 행사 가서는 거의 대중 여러 명이 들어가는 데는 들어갈 일이 없었고 단지 저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바지 갈아입고 그랬어요

충분히 외관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통용(passing)된다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노출해야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순간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생물학적 성(sex)이 동일한 집단 내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신체 접촉이나 가벼운 신체노출은 성전환자들에게 매우 불편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성전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성을 지닌 집단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편한 ‘동성(同性)’쯤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동성’으로 여기는 그들의 시선과 태도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동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전환자들은 육체적으로 동일한 성을 지닌 사람들과 편한 상태에서 서로의 몸을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성을 갖는 집단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을 갖고 있는 집단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동성 사이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노출이 성전환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을 가진 집단과는 또 다른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은 스스로 인식하는 성과 동일한 집단과 함께 지내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그렇다고 생물학적 성이 동일한 집단과 함께 지내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두 개로 구별되어 있는 집단 어디에도 속하기 힘들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과 동일한 육체를 갖기 위해서, 수술 등의 의학적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4) 의학적 조치

성전환자들은 다양하고 미묘하며 복잡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왜 육체와 경합을 벌이게 되는지에 관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일종의 ‘성확정’의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타인이 바라보는 성과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확신하는 성 사이의 긴장을 협상하여,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전환자 혹은 트랜스-여성/남성 등으로 확정하기 때문이다.

① 성별정체성의 확신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고통의 연속으로 이해하거나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육체와 벌이는 경합이 치열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성전환자들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용어로서 자신의 상황과 정체성, 경험, 기억 등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사례 26】 김○경 (MTF 34세)

그 친구가 먼저,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을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머리 속에 생각들을 그 친구 한 마디가 정말. 밤에 포장마차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배라고 지금도 부르는데, 선배는, 트랜스젠더라고 정확히 얘기한 건 아니었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여성으로 살아야 될 사람인 것 같다. 근데 그 한 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오’, 아 이거였구나. 그때 정말 머리 속이 딱 정리가 되었어요.

【사례 3】 김○진 (FTM, 36세)

트랜스젠더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듣자마자 확신을 했어요. 용어가 있으면서 내가 정의된 거였어요.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니까. 이제부터 제 인생의 계획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 후회 하죠. 너무 늦게 알았으니까. 그때야 깨달은 거죠. 그전에는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했죠.

성전환자들은 ‘트랜스젠더’³¹⁾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지속

적으로 과리를 경험하면서도 무언가 설명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 규정할 수 없었던 ‘다름’이 어느 한 순간 해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수없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갈등, 육체와의 긴장과 경합, 이 모든 수수께끼가 ‘트랜스젠더’라는 말, 즉 ‘여성의 육체 속에 갇힌 남성’ 혹은 ‘남성의 육체 속에 갇힌 여성’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한 순간에 정체성을 해명되는 것을 느꼈다. 이 개념을 통해서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자신을 그토록 혼란스럽게 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경험을 트랜스젠더라는 이름으로 재해석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정한다. 게다가 대체적으로 성전환자들은 트랜스젠더라는 개념 속에는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치료’를 통해 육체와의 경합을 종식시키는 것이 삶의 전반적인 목표가 되는 듯 하다. 아니면 트랜스젠더라는 개념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더라도, ‘치료의 가능성’만으로도 자신의 삶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사례 36】 민○연 (MTF, 31세)

인터넷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고. 제일 기뻤을 때가 치료가 된다고, 치료가 된다는 거. 치료를 시작했을 때부터 치료하기 이전에는 삶의 욕구가 의욕이 없었는데 치료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생각 자체가 확 바뀌었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자살, 왜 살아야 되는가 자체가 없었으니까, 항상 자살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내 몸에 배어있는 거죠. 소화가 되고나서 배가 고프듯이 가만히 있다보면 몸이 배인거죠. 가만히 있으면 다리 생각나고 여기서 내가 뛰어내리면 그런 생각했었는데,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없어지고, 못생기면 어때 이러면 어떠냐고 여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게 다르고 좋았던 거죠.

【사례 34】 박○순 (MTF, 60세)

어느 날 해외토픽을 보면서, 언젠가는 해외에 나가서 수술을 할 생각으로 돈을 모았어요. 꿈같은 일이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환자라는 용어는 몰라도, 그런 사실

31) ‘트랜스젠더’가 비록 자신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고, 자신이 느끼는 긴장이나 갈등을 이 용어로 다 설명할 순 없다하더라도,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이 용어는 새로운 정체성 확신의 시작이 된다.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sex, gender, sexuality, 남성성, 여성성, 육체, 정체성 등에 따라서 자세하게 분화된 언어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언어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트랜스젠더라는 말로 자신을 정체화한다.

은 알았어요. 성전환을 한 여자의 사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게 나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 때 ‘날 좀 보소’라는 제목도 있었어요. 한 여자 사진이 실렸고,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반라였는데, 신문인지, 주간지였는지 눈이 번뜩 띠었어요. 당연히 여자이고, 당당한 여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가 스무 살 즈음이었으니까, 한 1966년 정도, 그 확인이 결정적이었죠. (중략) 죽기 전에 꼭 할 수 있을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한다 생각했어요. 자해나 자살시도는 없었어요. 우울증 같은 것도 없었어요. 성전환은 외국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결국 해내고 말겠다고 생각했어요.

② 호르몬 조치

성전환자들은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언어인 ‘트랜스젠더’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순간, 또 다른 삶의 과정을 만들어가게 된다. 즉 자신의 육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에 진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의학적 조치이다.

성전환자들이 의학적 조치를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외과적 조치는 ‘성호르몬’의 투여이다. 자신이 인식하는 성의 육체로 변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성 호르몬’을 선택하는 것은 일정정도 몸의 변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자, 몸의 변화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FTM의 경우 남성 호르몬을, MTF의 경우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데, 이렇게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정신과 진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신과에서 성 주체성 장애(GID) 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성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는데, 호르몬을 통한 몸의 변화는 개인차가 있고, 투여 횟수나 방법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몸의 변화는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계기가 되면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변화가 주는 만족도로 인해서,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성격이 점차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이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례 36】 민○연 (MTF 31세)

처음에는 어지럼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하고 몸이 찌릿찌릿 한 그런 느낌. 살짝 민감해졌다고 해야 하나. 원래 민감했는데 되게 빨랐어요. 적용하는 데는 한 1~2주? 그dan부터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호르몬이 되게 빨리 적용했다고 그랬거든요. 맞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슴이 조금씩 나오고. 치료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사례 3】 김○진 (FTM, 36세)

호르몬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몸에 힘이 생기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맞대응 하려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밸쳐주니까. 웬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호르몬하면 힘이 무지 세지거든요.

그러나 몸의 변화로 인한 만족도 보다 호르몬 자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다. 우울증, 여드름, 발열, 무력감 등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 역시 개인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몸의 변화는 기존의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몸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우려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곤혹스러움 등으로 기존의 관계에 단절을 시도하기도 한다.

【사례 3】 김○진 (FTM, 36세)

목소리가 원래 가늘었어요. 근데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가늘었다가 중간에 변성기처럼...정말 힘들었어요, 그 시기가. 저는 혼자 지내서 (호르몬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몇몇 후배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죠. 만나지를 않았어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모자 뚝 눌러쓰고.

FTM의 경우, 호르몬으로 인해서, 목소리, 수염, 근육 등 남성 육체의 표식들이 생겨나게 되고, MTF의 경우 목소리, 가슴 등 여성 육체의 표식이 나타기 시작한다. 이러한 육체의 변화는 성전환자들이 어떤 공간이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용(passing)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러한 과정에서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욱 확보하게 된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생식기와 생식 능력의 변화라 할 수 있다. FTM의 경우 그토록 육체와의 경합을 벌이게 했던 ‘생리’가 멈추고, FTM의 경우 폐니스의 ‘발기’가 멈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식기와 생식 능력의 변화는 성전환자들에게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새로운 육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연장된다.

③ 1차 수술

호르몬의 투여로 인한 신체의 변화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1차 수술’, 즉 가슴수술과 정소/난소제거, 혹은 자궁적출 등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변화를 시도한다. 1차 수술에서의 핵심은 가슴 축소와 가슴 형성수술이다. 가슴은 외관상 육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주는 문화적 상징이다. 그 뿐만 아니라 성전환자들이 외관상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만족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가슴은 너무나도 시급한 수술이다. MTF의 경우 외관상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여성용 속옷을 사용할 수 있지만, FTM의 경우 가슴은 외관상 위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때로 붕대나 일명 ‘나베셔츠’라는 특수한 속옷을 사용해서 가슴을 최대한 생물학적 남성의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렇게 육체와의 경합을 종결시키는 과정은 얼마간의 육체적 고통, 경제적 비용, 외과수술에 대한 두려움 등을 수반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으로 열어주는 수술을 선택한다.

【사례 1】 이○한 (FTM, 27세)

우리에겐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아무리 티가 안 나도 바람 조금만 불면 신경 쓰이거든요. 나베 셔츠도 가릴 수 있다는 것 때때 입는데 입으면 소화도 안 되고 땀 흡수도 안되고 여름 다가오면 입어야 하는데 체질적으로 땀이 많은데 더우면 아토피가 있어서 따끔따끔 하는데. 정말 제 소원이 옷 벗고 수영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례 8】 이○혁 (FTM, 26세)

가슴수술은 다음에, 그 이전에도 별도 떠는 안나요. 근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반갑다고 어깨를 치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움츠려들었어요, 간단하게 스킨쉽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수술한 다음에는 그런 거 없어졌죠. 제가 먼저 등을 치면서, 인사해요. 그런 거 좋은 거죠.

그러나 이러한 수술은 상당히 심한 수술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며, 어떤 경우 재수술의 위험 역시 감수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에 대한 의학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슴을 생물학적 남성의 가슴으로 성형하고자 하는 FTM의 욕망을 의료진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재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 5】 안○상 (FTM 33세)

수술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더운 여름 벗고 다닐 수 있고. 내가 받은 의사는 ftm 수술로 유명한 사람인데 흉 없어요. 계속 흔적이 열어져서. 어떤 경우 수술자국이 심하게 남아요. 어떤 친구는 유두의 사이즈를 수술을 따로 해야 하는 곳에 갔어요. 절반정도를 잘라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두 수술만 150이니까. 돈 때문에 태국 가서 하지 한국이 잘 해요.

FTM의 가슴수술에 대한 욕망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의료진은 가슴수술 자국을 심하게 남긴다던가, 가슴축소수술 쯤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악의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하는 과정에서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이후 육체의 변화에 따른 스스로의 만족감을 기대하면서, 많은 성전환자들은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다.

② 2차 수술

대체적으로 1차 수술은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에 반해서, 2차 수술은 일정부분 차후적인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경제적 비용, 수술의 난이도, 수술 후 후유증 등이 1차 수술에 비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며, 1차수술은 상당부분 외형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FTM들은 가슴수술 후 자궁적출 및 난소제거 수술을 하고 나면, 성기 성형수술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의료기술로는 성기 성형수술 이후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듯하다. 이에 비해서 MTF의 경우는 확연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 수술이 주는 효과는 ‘안정감’이라

할 수 있다.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과 생물학적 성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수술이라는 외과적 조치를 통해서 해소되기 때문이다.

【사례 26】 김○경 (MTF, 34세)

2차까지 하고 나서 일단은 심리적으로 많이 편안해지는, 안정, 계속 불안, 불안 불안정하다가, 수술하고 나니까, 저는 막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딱 좋아지는 건 아니고, 호적도 그렇고 가슴도 그래요. 근데, 딱 하나는, 편안함. 다른 거, 상황이 안정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편안해지는 거죠. 스스로 안정됨. (허전하지는 않았나요?) 아뇨. 그거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수술로 인해서 감수해야 할 심리적 고통 역시 그리 가벼운 것만은 아니다. 성전환은 단지 하루 몇 나절의 한 번의 수술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성형을 필요로 하며,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성전환자들에게 육체는 단순히 생존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만은 아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스스로가 원하는 생물학적 성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선택과 결정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

【사례 34】 박○순 (MTF, 60세)

지금은 완벽해요., 여러 번 했어요. 이왕 한 거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다시 병원에 가니까 날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 대학 병원에서 조금 커졌어요. 상처가 낫는 시간이 많아 걸렸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다시 재수술을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조금.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미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만족을 못 했어요. 일본에서 세 번째 수술을 했는데, 피부과에서 하고 나중에서 성형외과에서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육체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근접할수록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금 정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스스로 인식하는 성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 사이에 더 이상의 간극이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성전환자가 아니라 (트랜스)여성 혹은 (트랜스)남성으로 살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충

분히 사회 속에서 생물학적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이 ‘성전환’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성전환자 커뮤니티와 거리두기를 통해서, 성전환자와 (트랜스)남성 혹은 (트랜스)여성 차이를 구별짓는 경향도 있다.

【사례 9】 신○영 (FTM, 48세)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활동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할까, 그냥 댓글 식으로. 말하자면 나도 수술 전이니까 물어보거든요, 일단 게시판에 올려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하냐, 아는 사람들은 수술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댓글을 올려줘요, 그런데 정보를 공유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뭐랄까 어리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된 거야, 다 된 거니까 너희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니까 알아서 스스로 발로 뛰어. 본인들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발로 뛰어서 하지 알려고 하지 마라. 감추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싸이트에 어지간하면 올리거든요 근데 개들은 댓글 식으로만.

(5) 병역

대한민국의 헌법 2장 3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제 3 조(병역의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사항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MTF에게는 너무나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FTM에게 경우에는 이러한 남성에게만 부여된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를 결핍된 남성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MTF에게는 생물학적 남성에게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 사항으로 인해서, 심리적 정신적 갈등이 가중된다.

【사례 24】 이○정 (MTF, 32세)

신검이 나와서 정신검사를 할 때 걸렸어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여성성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검이 동네별로 나왔는데 좀 모자란 애들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불러서

가봤더니 그때 데칼코마니 보여주면서 뭘로 보이냐고 하는데 저한테 대학병원 검사를 다시 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여성성이 너무 많아서 남자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같은 그림을 남자한테 보여줄 때와 여자한테 보여줄 때 답이 다른 게 나오는데 저는 여자들이 말하는 답을 말했대요.

【사례 26】 김○경 (MTF, 34세)

군대는, 저는 가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군대기피, 그런, 일차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저는 군대를 가면 저랑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다이어트에 독하게 들어간 거죠. (중략) 그런데 4급을 주는 거예요. 4급이면 제2국민역. 그때는 방위죠. (그때 차림은 남자 차림을 하고 갔겠네요?) 거기 가서는 팬티 하나를 입고 검사를 하니까, 다. (너무 하다) 근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의 어떤, 저의 힘은 너무 미약해서. 당혹스러웠죠.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혹은 신체검사를 연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시도하기 때문에 종종 성 주체성 장애(GID) 환정을 받고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체검사 과정에서 면제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군입대하여, 군 생활을 해야 한다. 생물학적 남성들만의 공간인 군대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고 강인한 남성성이 요구되며 또한 공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MTF들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무반 생활은 일상을 같이 나누게 되는 공간이다. 이때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공동생활 속에서 친밀함과 군대의 조건인 ‘전쟁 시’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지 못한다. 게다가 공동생활 속에서 생물학적 성이 동일한 집단에서는 스스럼없이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서로의 몸을 본다거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MTF들은 이러한 가벼운 일상조차 함께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고된 군사훈련을 온전히 수행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례 34】 박○순 (MTF, 60세)

아버지가 굉장히 내가 여자 같은 것을 싫어해서, 나를 군대를 1년 정도 빨리 보냈어요. 집안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계급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입대를 했죠. 훈련을 받으면서, 남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이미 여군들도 있으니까 궁지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군복도 맞는 게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안 보일정도였고, 기절해서 의무실에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훈련을 끝내야 했죠. 일주일치료를 받고, 훈련은 종료가 되었는데, 훈련소에서 나오니까 아버지와 오빠가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의정부에서 자대배치를 받고 뒤에서 감시하면서 아버지와 오빠가 따라왔어요. 애처롭기도 하고, 혹시 탈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따라온 거 같아요.

【사례 28】 박○정 (MTF, 22세)

내가 훈련소에서는 여자같다, 하리수다, 이런 거로 놀리고. 머리 빽빽 밀었는데도. 그러다가 군대에서 자대배치 받을 때 훈련소에선 얘기를 했잖아요. 남자를 좋아한다. (누구에게요?) 담당. 나중에 사단 가서 사단장이랑 만나서 상담도 하고 그자로 된데서, 저는 혼자 앉아있고 높은 분들이 앉아있고 그런데 질문을 막 해요. 그럼 그때 모욕감을 준 게 있었어요. 어떤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너는 왜 남자를 좋아하냐고. 남자새끼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막 열 받잖아요. 높은데 말 뭐라고 못하고. 막 울었어요. 왜 우냐고. 내가 여자가 남자 좋아하듯이 나도 태어날 때부터 남자가 남자 좋아하게 된 걸 어찌나구.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빠지게 됐어요. 계속 군대생활 못 했을 거 같아요.

MTF들은 군대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자질이나 성별정체성을 의심당하면서, 언어적 폭력이나 멸시, 비난 조롱의 대상이 되어, 동료군인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처음에는 참고 견디면서 수용하려 하지만, 반복적이고 일상적이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현실이 더욱 MTF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조롱은 성희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때 문제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과정 역시 MTF들은 그들의 성별정체성을 충분히 이해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별정체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례 34】 박○순 (MTF, 60세)

성희롱은 많았죠. 싫었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착각을 했죠. 정신적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구나. 제대를 얼마나 남지 않은 병장이 하나 있었는데, 나에게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외출을 나가니까, 외출을 맞춰서 같이 나가서 만나자 그랬어요. 치욕감은 못 느꼈어요. 그 사람하고 정신적으로 끈끈한 면이 있었어요. 난 그게 또 행복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정상적

인 여자라면 몰라도, 그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죠. 보안대에서 알았어요. 거기서 전화와서 괴롭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다. 대대장이 야단하기 보다는 후송조치해야 한다. MASH에서 병원장에게 부탁해서, 그런 저런 일이 있어서 잘 보살펴줘라. 복이랄까. 부적격자로 판정해서 제대했어요. 조치는 따로 없었어요.

(6) 사회적 관계망

① 사회와 관계맺기

자신의 정체성을 성전환자나 트랜스 여성/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자신의 육체를 변화시켜서 의명적 공간에서는 충분히 통용(passing) 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이전과는 관계맺기의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다지 친밀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직장 동료, 거래처, 회사 내 소모임 등에서 정체성 ‘노출’에 대해서 긴장하게 된다. 매우 친밀한 관계는 현재의 성이 의학적 조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coming out),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하는 것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다. 언제든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사실이 타인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아웃팅(outing)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은 MTF보다는 FTM들에게 훨씬 더 심각한데, 그것은 한국 사회의 특유의 남성문화로부터 기인한다.

【사례 19】 김○철 (FTM, 34세)

내가 지네들하고 같이 룸싸롱도 놀러 갔지.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되요. 가야죠. 이상한 그 퇴폐업소 같은데 같이 갔지, 남자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섹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비지니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갔고, 2차를 나갔다니까요, 나는 2차를 가서 아가씨들하고 얘기하고, 맥주 먹고 땅콩 까먹고 놀다가 나오고, 개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여자하고 섹스를 했는지.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대한민국 이 업계에 소문이 다 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 자체가 안 겪어도 될 일이잖아요. 그걸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생물학적 남성이자 이성애 남성들의 왜곡되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는 FTM들에게는 여러 가지 곤란한 지점이 있다. 생물학적 남성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될 때, 더욱이 자신이 FTM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때, FTM들은 그들과 의심 없이 동일한 남성임을 인정받고자, 생물학적 남성들의 이성애 중심적, 가부장적이며 왜곡된 태도와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거나 혹은 여성에게 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기만해도, 그러한 태도가 자신의 생물학적, 본래적 성(여성)을 상기시키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서이다. <사례 19>의 김○철씨는 남성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인 ‘2차문화’를 비판했다. 김○철씨에 따르면, ‘남성’들의 접대문화, 일중의 친목문화 중에는 ‘2차’를 가는 것이 있는데, ‘2차’가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히 ‘튀는’ 행동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왜곡된 남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튀는’행동이 혹시 문제가 되어서 자신의 성정체성이 밝혀질까봐 거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자신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남성들과 동일하지만 본래적으로는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성과의 또 다른 차이를 첨부함으로써 자신의 ‘다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FTM들은 생물학적 남성 집단에 안전한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차이, 그 차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되며, 보다 더 진정한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부장적으로 강력한 젠더 규범을 충실히 수행한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남성 집단이 FTM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더욱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 비성전환자 남성들은 FTM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생물학적, 본질주의적 성(sex)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FTM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사례 3】 김○진 (FTM, 36세)

제가 위장취업을 할 때 첫 단계에서, 남자들 속에서는 같은 남자들에게는 틀려요 아주. 자기가 남자가 아닌 존재와 남자인 존재 그게 대할 때 너무나 틀려요. 여자들은 주류가 아닌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있는데 남자는 달라요. 남자는 전부 들어가지 않으면 대우가 틀린 거고. 여자들은 우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편견이 있어도 ‘그

렇구나’ 하는데, 남자들은 일단 딱 지 며릿속에 정리하고 왕따 시키고 찍고 권력 관계를 분명하게 해놓는... (중략) 그 친구문제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일단 나를 남자동료로 인정을 안 해주면,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 관계형성이 안돼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기가 힘들었죠. 의자에 앉아도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으면 함부로 못 앉거든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자기 자신이 남성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때문에 싫어했죠. 니가 남자냐. 그런 걸 말로는 표현 안하는데, 행동으로 일하면서 보여주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죠.

<사례 3>의 김○진씨의 말처럼, 모호하면서도 미묘하게 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생물학적 남성 동료에게 불만을 토로했을 경우, 자신들의 행동은 그저 단순한 행위이고, 남자들 사이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김○진씨가 작고 사소한 일을 과장하고 확대해석하는 히스테리컬한 사람쯤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FTM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결핍된 남성 혹은 원래는 여성의 반응으로 치부해버린다. 어떤 경우, 생물학적 남성들의 자기 과시는 보다 더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드러난다.

【사례 3】 김○진 (FTM, 36세)

성추행이라고 봐야 할 거 같아요. 그건 남자끼리의 성추행 같은데요. 어린 사람성기를 만져보거나 하는 거. 그쪽에서 남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번 만진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개 야비한 놈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러십니까?’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이게 성추행이라는 거야?’ 알만큼 아는 사람이었어요. 야비하게 그러더라구요.

<사례 3>의 김○진씨의 경우처럼, 자신의 육체가 생물학적 성으로서 여성의 육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이 성폭력, 성추행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크건 작건 벌어지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사건들 속에서 FTM들은 생물학적 남성 집단 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육체를 가진 이상, 그들에게 성애화된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속에서 생물학적 남성들과 대등해질 수 있는 자신만의

‘자기 전략’³²⁾을 구사하게 되는데, 매우 억세고,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쉽게 무시 할 수 없는, 흄잡을 데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킨다.

【사례 3】 김○진 (FTM, 36세)

항상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불안감도 있고 저도 남자들 속에서 같이 일하는 거라 제 일이 많이 긴장하고 많이 좀 그렇죠 좀. 저도 좀 호전적이고 웬만큼. 남자들이랑 일할 때 가만 안두겠다. 이런 식으로 대해야 하고. 그게 좀 관계형성이 안돼요. 조금만 틀어지면 나의 존재가 인정이 안된다 싶으면 방어벽을 탁치고 제 스스로가 그런 일 안당하려고 하고 약한 모습 안보이기 위해서 탁 치죠 더 이상 오픈을 안 하죠.

【사례 6】 김○룡 (FTM, 28세)

회사에서 위의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니 건강생각해서 너는 빠져라 너는 힘든 거 하지마라. 그러는데, 같은 나이또래 (비성전환자 남성) 동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만약 몸 사린다면 제는 예전의 습성이 있을 것이다 자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하게 되죠

<사례 3>의 김○진의 방식처럼, 생물학적 남성들과 똑같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사례 6>의 김○룡씨의 방식처럼 조금이나마 흄 잡을데 없는 완벽하게 성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성전환자 남성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자기 전략을 구성한다.

또 다른 방식의 자기 전략으로 동료 남성들에 비해서 월등한 능력을 갖춤으로서 서열화된 사회에서 보다 높은 지위를 점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물학적 남성보다 더 훨씬 강력한 ‘사내다움’을 과시하는 것으로 구사하기도 한다.

【사례 17】 이○섭 (FTM, 42세)

나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은 ‘야 임마, 고추 얼마나 컸나’ 이러면서 먼저 기선제압이라 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딱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질겁을 하고 도망가지, 그게 바로 기선

32) 김○진의 경우만이 아니라 김○환(FTM, 26세)은 곱상한 의모 때문에, 그의 성별을 의심하는 남성들에게 종종 성추행을 당하곤 했는데, 이 때문에 성기보형물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

제압이야, 과감해야해, 그래야만 남자들하고 진짜 동등하게 대할 수 있어. 단지 사우나만 못갈 뿐이지. 일이 많을 때는, 재네들 물건 내보내고 그럴 때는 땀 흘리거나 그러면 ‘아, 형 사우나나 갑시다’, 그러면 ‘아, 좋지’ 말이라도. 그렇게 과감해야 돼. 그렇다고 끝나고 진짜 같이 가는 것은 아니야. 그냥 술이나 한잔 하고 각자 헤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도 먼저 기선제압이야. 먼저 무시 못 하게끔 기술도 그렇지만, 먼저 같이 똑같다는 것을 장난으로라도, 남자들은 니꺼 얼마나 크냐하면서 고추를 먼저 잡아보려고 한다고, 먼저 먼저 본다구 남자들만의 그런 게 있어.

② 정체성 노출의 공포

성소수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 아웃팅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 된다. 현재 한국 사회처럼 다양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신분 노출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적대감, 물리적 폭력, 편견에 가득 찬 시선 등은 모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성전환자 역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신분노출의 두려움에서 여러 성소수자들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분등록상의 성별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이 다르다는데 있다.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모든 상황, 예를 들어 불신검문, 여권, 은행업무, 운전면허 등에서 성전환자들은 모멸감 보다는 불편함을 선택한다. 말하자면 신분증을 제시했을 때, 타인의 폭력적인 시선을 느끼면서 견뎌야 하는 모멸감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례 19】 김○철 (FTM, 34세)

자기사업을 할 때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비비꼬일 때가 있잖아요, 2004년도 거래를 하는 업자가 하나 있는데, 우리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제가 돈이 한 1억 5천정도 걸려있는 상태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피해자가 한 15명 정도 되고. 지금 여섯 명이 고소를 한 상태에요. 근데 제가 이름으로 고소를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무지하게 불편해요. 그걸 내가 나서서 하고 싶은데, 일부러 내가 나설 수가 없는 거에요,

<사례 19>의 김○철씨처럼, 법적 제도상의 문제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

야 하는 경우 타인의 이름을 대명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참아내야 한다. 그래서 때때로 성전환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은 만들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참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이고 그럼으로써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사전에 막는다는 것이다.

【사례 9】 신○영 (FTM, 48세)

실수한다는 것은 나한테 용서가 안됐어요. 주인들은 자린고비니까, 싸가지 없어도 나한테는 푹 빠지더라고요. 24시간 365일 똑같은 모습으로 긴장을 하면서 실수를 안 하니까 주인들은 백프로 빠졌어요. (중략) 중간에 싸움은 안 나고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싸움해본 적이 없어요. 아주 참았죠. 그러니까 혼자 환병이 나오고 난 삼박사일 말을 안 하고 느끼고 스스로 풀고 그려거든요.

성전환자에게는 또 다른 ‘노출’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이것은 신분노출과 같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육체 자체에 대한 노출이다.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gender)과 다른 성이라는 것이 타인에게 ‘발각’되었을 때, 그 순간은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이다.

【사례 9】 신○영 (FTM, 48세)

그때 바다에 죽으려 갔을 때, 주변에는 다들 낚시하고 밥 먹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구, 수심이 깊은데 있길래 고동 잡는 척 하고 가서 내려가면 쭉 빠졌는데, 갑자기 쭉 빠지더라구, 금세 물먹고 올라왔더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구해준거야. 자존심 때문에 자살한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미끄러졌다고 했어. 근데 날 살릴려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더라구 그 정신에도 토하고 눈을 깨보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 죽어도 보이면 안된다. 죽어도 보이면 안된다. 악착까지 살았다는 시늉을 하면서 그만두게 했어요.

응급한 상황에서 조차, 자신의 몸이 타인에게 ‘발각’ 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발각’의 순간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운 일이며,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집단과 함께 했을 때는 더욱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다.

박○환씨(FTM, 34세)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응급구조대가 와서 응급 조치를 하는 동안,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드러날까봐 애썼지만, 결국 생물학적인 성이 여성인 것이 밝혀지면서, 동행했던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아웃팅의 가능성 중 하나가 사고로 인한 응급조치이다.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이 아웃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아웃팅은 성전환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 중의 하나일 것이다.

③ 성소수자와의 경계짓기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전환자 정체성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획득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기와 사건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 속에서 확정되는 듯 보인다. 그러한 경험 중의 하나가 다른 성소수자들과의 경계짓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다양한 성소수자 개념,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만남, 성애적 대상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너무나도 복잡해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매우 고유한 자기-이해와 자기-정의이다. 한 개인이 특정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그 정체성에 동일시하며 자신을 구성할 때, 그 개인이 수용한 정체성의 개념, 조건, 특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기-이해와 자기-정의는 너무나도 상이하다. 뿐만 아니라 세대, 생물학적 육체의 조건, 정보습득의 시기, 계급, 지역 등도 이러한 과정에서 간파할 수 없는 조건들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FTM의 경우, 여성 성소수자 중 ‘부치(butch)’와 MTF의 경우 남성 성소수자 중 게이와의 경계짓기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계짓기는 남성성(masculinity)과 남성다움(manhood) 혹은 여성성(femininity)과 여성다움(womanhood)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성애적 관계와의 상관성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을 근간으로 특정한 정체성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쉽게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현재 FTM이나 MTF 스스로가 각각의 경계짓기를 한 지점에 대해서만 정리하려 한다.

우선 FTM들은 ‘부치’와의 차이를 강조하며, 그 변별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전달하

려는 듯 했다. FTM들이 말하는 부치는 ‘여성을 사랑하며, 남자는 아니지만, 남자의 성향에 더 가까운 여자’로 정의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이 통상 부치의 경험으로 보일 수 있지만, FTM의 경험과 부치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례 21】 문○식 (FTM, 25세)

2년 전에 검색을 하다가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까페를 알게 됐어요. 알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죠. 채팅을 하거나. 그랬더니 저랑 경험이 다 비슷비슷 했던 거에요. 그 사람들도 나 같은 절차를밟으면서 자신이 레즈비언이나 부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아니더라라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 그럼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알았던 거죠. 아, 나는 이거구나.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답답함이나 그런 건 없어요. (얘기를 하다가 나랑 비슷한 요소를 발견한 게 어떤 거에요?) 부치인가에 대한 혼란,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너 가슴 어떻게 하고 웃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몸에 대한 거. (부치인지 고민하는 이유는 여자를 만났기 때문인 거 같아요?) 내가 부치다 하고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다보니까 나는 여성스러운 여자애들이 좋아. 근데 나는 일단은 내가 여성스럽다면 그건 펌투펌이 될 텐데 여성스럽지는 않으니까, 나는 부치인가 보다 하는 거지 뭐 뚜렷이...그리고 남들이 나를 부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나를 했던 적은 아닌 거 같아요. 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나갈 때 왜 꼭 부치-펌을 나눠야 되냐 이런 얘길 했었죠.

【사례 1】 이○한 (FTM, 27세)

FTM진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왕‘부치’들이에요. 배척의 배척을 하죠. 요거 법제정 시키고 나면 개나 소나 정정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저도 한때 동성애진영에 있었고 지금도 부치 친구도 많은데 처음엔 저도 ‘부치’였죠. 동성애자 친구들 만나서 부치로서 개념들을 만났고, 근데 그 안에서 어울리지를 못했죠. 나는 개념랑 다르니까.

대체적으로 FTM이 규정하는 부치는 ‘자신의 여성성/여성다움을 거부하고, 남자이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남자가 아닌’ 여성이었다. 따라서 부치들은 남자들을 ‘흉내 내는’ 집단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신들과는 다르다고 규정하였다. 문○식씨의 말처럼, 레즈비언의 관계는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성을 지닌 여성들의 관계인데, 때때로 이 관계는 젠더를 ‘차용’한 성 역할, 즉 부치 - 펌이 있다. 레즈비언의 관계 속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부치와 FTM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미묘하고 곤란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FTM은 그 경계의 지점을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유사하게 MTF 역시, 남성 성소수자 중에서 게이와 경계짓기에 있어서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지에 관한 부분이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사례 34】 박○순 (MTF, 60세)

아주 우연한 기회에 나 같은 사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그 곳에 갔는데, 나보다 더 여자 같은 남자가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너무 놀랐죠. 그게 싫었어요.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그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나보다 한, 두 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도 여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남자였어. 남자이면서 여자인 것 같은 게 싫었어요. 글쎄, 나는 너무 이상하고 싫더라고.

【사례 30】 송○지 (MTF, 49세)

게이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계기는 좀 여성스럽고 싶고 화장을 하고 싶고 치마를 입고 싶었어. 귀걸이가 하고 싶고 텁스틱이 바르고 싶고 하니까. 그냥 게이생활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야. 아 나는 이게 아니구나. 이쪽 보다는 여성인 가깝구나 했지. 그리고 이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 내가 트랜스젠더가 싫었다면 게이로 남아있었겠지. 일 반남자로는 못 돌아가겠지만. 게이 중에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 내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게이의 50%는 다 성전환을 하고 싶을 거야. 그렇지만 사회적인 체면과 가정 때문에 못하는 거지.

【사례 33】 김○숙 (MTF, 36세)

동성애자하고 성전환자가 가장 다른 건 자기 성기에 대한 만족감에 있는 거 같애요. 나는 참혹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트랜스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기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요즘 애들은 그런 느낌이 없을 거 같애. 그런데 성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건, 게이 성향인 듯해요.

MTF의 경우 역시 젠더 이분법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성애적 관계와의 상관성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을 근거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듯 했다. 혹은 폐니스의 혐오, 즉 육체 자체에 대한 혐오 여부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FTM의 경우, 만약 이 사회가 생물학적 성에 의한 강력한 젠더 이분법이 강요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지금과는 달랐음을 가정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결코 여성스러운 외모를 지니지 않은 여성도, 여성으로서 한 여성을 사랑하는 것도 인정되고 존중되었더라면 그리고 그러한 삶의 선택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정체성은 지금과는 다르게 구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사례 6】 김○룡 (FTM, 28세)

저는 욕망보다는 욕심인 거 같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싫어해요 그리고 이반들 내에서 너는 부치고 너는 펌이고. 그런 말을 싫고 이반이란 말 자체도 싫어합니다. 같은 사람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반들 사이에서도 일반 이반 나누는 것조차 평범한 사람들을 나눈 건데 또 선을 긋는다는 자체가 싫을 뿐더러 트랜스 젠더라는 말은 이반들 사이에서도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그 말도 싫어해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호적정정을 할거지만, 만약에 이 나라에서 캐나다같이 허용하고 인정하고 평범한 사람 같이 보였다면 호적정정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호르몬도 안했을 거예요. 단지 내가 떳떳해지고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거에요.

④ 성별정체성 알리기(coming out)

의학적 조치, 그 가운데 1차 혹은 2차 성전환 수술을 한 성전환자들은 이후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그것은 성전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의 변화를 시도해야하는 가족들에게도 역시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까지 ‘딸’로, ‘아들’ 혹은 ‘언니’나 ‘형’으로 인식해왔던 가족을 이제 다른 성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닌 일은 아님 듯 하다.

【사례 8】 이○혁 (FTM, 26세)

오히려 이 가슴수술하면서, 어머니하고는 아예 사이는 멀어졌는데. (엄마가 끝까지 인정을 안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수술하기 전에도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가 내, 내 인생을 26년 넘게, 26년을 살아오면서, 엄마가 봤을 때 내가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냐구. 내가 그렇다고 엄마가 바라는 대로 안 살았던 것도 아니지 않냐구

한번은 내가 엄마가 바라는 대로 일반적인 여자들처럼 산 적도 있어요. 1-2년 정도. 안되는 거는 안되는 거라, 그쵸? 사람이 안되는 거는 안되는 거에요. 안되기 때문에 나는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고, 이제는 엄마도 인정할 때가 되었으니까 인정해야 된다구. 나는 솔직히 엄마가 인정해도 그만 인정 안해도 그만인데, 그래도 나는 인정을 받고 싶고, 이제는 인정을 할 때도 되지 않았냐구. 엄마 없는 셈 치래요. 엄마랑 계속 갈등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저는 수술해버렸죠. 근데 수술이 잘 못 됐죠. 그러면서 아예 틀어졌어요. 옛날부터도 내가 사고를 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형이 뭐한다고 하면서 도와주고 지지를 많이 했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엄마가 각박했어,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의료사고 나면서 우리 형하고 나하고 틀러블이 났어요, 합의 부분에서 싸움이 났어요. 저도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씨발 새끼가 아니라 년이라는, 여자처럼, 여자로 취급해서 년이라는.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화가 나는 거죠. 집하고 인연을 끊은 거죠. 그래서 친척들하고는 밖에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사례 8>의 이○혁씨의 경우, 유독 형에게만 애정을 쏟는 어머니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한 반발심도 상당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의료사고 이후에도 위로의 말은커녕,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형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무시하기 위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해당하는 욕설을 하였다고 한다. 가족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혁씨는 이후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심하였다. 이○혁씨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의학적 조치 이후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성전환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조치 이전부터, 가족들이 이미 성전환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성전환자들의 의지와 가족들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례 30】 송○지 (MTF, 49세)

외가 쪽에 이모들은 나에 대해 다 몰라요. 그 사람들까지는 내가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엄마한테도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엄마도 마음 아픈데 괜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되지만 엄마는 아들이 여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건 치명적인 거야. 그래서 엄마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이야기는 안 했을거야. 그래서 나는 미국에 가있는 거야.

<사례 30>의 송○지의 경우처럼, 어머니와의 관계는 원만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아닌 딸로서 어머니와의 관계 새롭게 재구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어머니가 곤란할까봐 스스로 숨어살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는 없지만,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스럽다는 것이다.

성전환의 문제는 성전환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차별과 배제의 고통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성전환의 문제가 단지 한 개인의,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편협함에서 기인하다.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은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긍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집단까지도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성전환자들과 가족 간의 갈등과 단절은 결국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예견된다.

(6) 직업과 노동

성전환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이미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전환자들은 다른 외모와 옷차림, 행동 등으로 구직과정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설령 자신들의 생물학적 성으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자신들을 대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한다. 자연스럽게 직장생활은 짧아지고 이직은 잦아진다.

성전환자들의 구직과 노동경험은 제한된 취업기회, 노동현장에서의 사회적 관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대부분 겪는다는 경향성을 보이지만, 성산업에 종사하는 MTF 들의 경우는 다른 성전환자들과는 다른 경험을 한다. 물론 성산업에 종사하는 MTF들도 성산업을 제외하면 다른 직장으로의 구직활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지만 성산업 내에서는 적어도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³³⁾ 그래서 성전환자의 직업과

33) 성산업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있지만, 이는 다른 노동현장에서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는 다르다.

노동에서의 이러한 경험의 차이로 인해 FTM과 MTF을 구분하여 각각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FTM의 경우

FTM들의 구직활동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다. 구직과정에서 남성적 외모와 행동을 갖춘 FTM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답지 못한 여성’으로 인식되었고 ‘여직원’, ‘여사원’을 뽑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여성의 외모를 갖추지 못한 여성’은 못마땅하고 불편한 존재였다. 이력서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FTM이 생물학적 여성임을 증명하지만 면접장에 마주한 사람은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 13】 신○섭 (FTM, 26세)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면접 보러 갔을 때 트랜스젠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른 일을 하려고 면접 보러 가면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력서 보면 여자잖아요. 본인 맞습니까? 예. 진짜 맞습니까?.. 지난번엔 (주민등록증)민증 번호 좀 불러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불러보세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면접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데 취업 못 하고 있던 가계로 다시 왔죠. 그 사람들이 왜 떨어뜨렸는지는 모르니까.

【사례 12】 연○수 (FTM, 24세)

면접 때문에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서류 넣잖아요. 이력서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민증 내니까. 면접 다 보고 되는데 한번도 (되는 적이)없어요.

FTM들이 아무리 많은 면접을 봐도 채용이 되긴 어렵다. 생물학적인 성으로도,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으로도 취업하기 힘들다.

가능한 범위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다보면, 대개 FTM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배달이나 서빙, 운전이었다. 배달과 서빙은 채용과정에서 어떠한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하기에 남성으로 보일 수 있었고, 운전은 까다로운 면접과정을 거치지 않고 취업이 가능하며 동료들과의 협업이 필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으로 보

여도 상관이 없었다. FTM들의 직업이 배달이나 서빙, 운전으로 집중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등학교를 다 마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FTM들은 자신들이 여고에 다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학교에서의 엄격한 규율에 부딪치면 학교를 과감히 그만두고 나왔다. 그래서 FTM들은 낮은 학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 일부 제한된 직종에 종사한다.

그러나 FTM들이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했다. 생물학적 성인 여성으로 취업한 경우, 자신을 여성으로서 대우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직장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은 특히나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계속되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5】 안○상 (FTM, 33세)

졸업하고 컴퓨터 쪽으로 취직을 했는데 이력서를 내야 되니까 면접 때 외모 때문에 잘 안받아주고. 취직이 된 경우에도 회사생활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회사는 여직원 회의가 있었는데 가면 수다 떨고 하는데 거기에 낀 수가 없더라고요. 큰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서 회사 들어가서 6개월 넘긴 적이 없었어요. 3개월 단위로 옮기고, 옮기고....

【사례 6】 김○룡 (FTM, 28세)

제가 회사에 들어간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8년 동안 백수생활 계속하다가, 3개월 4개월 회사생활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1년 넘게 회사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계 일을 하는데 기계라면 남자들의 세계니까 여자들은 거의 취업을 안 하거든요. 그쪽으로 취업을 할려고 해도 (안되고) 취업이 되도 일을 하게 되면 여자니까 일찍 가라. 여자니까 그거밖에 안되겠지. 저랑 같은 입사동기의 동갑내기가 가도 그 친구보다 (나는) 언제나 낙후되는... 회사 내에서 윗사람들이 더 갈라놓는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사회의 여성차별을 FTM이 경험할 때는 그것을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신들의 성별정체성은 남성이기에 더욱 부당하게 느꼈다. 힘든 구직과 이직이 반복되는 가운데 일부의 FTM들은 자신 나름의 취업전략을 구상하기도 했다.

첫째는 자신의 사적 관계망을 이용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다. 자신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을 통해 취업을 했을 때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밝혀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도 상대적으로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래서 직장 내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친분관계의 형성은 때로는 매우 중요하다.

【사례 12】 연○수 (FTM, 26세)

남자 같았으나 어차피 이력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후배고 여자고 그래서 여자로 들어갔어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재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생각을 하는 정도고 가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난 여자였고 난 그런 게 아니고 난 여자를 만난다 얘기하니까 그래 알겠다. 그리고 나를 남자로 대해줬고.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둘째는 남자형제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위장취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 수는 없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따서 일할 기회를 만들어도 기록상으로는 전혀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례 4】 박○환 (FTM, 34세)

고등학교는 1학년 때 그만두었어요. 다니다 만 이유는 복합적인데... 공부하기 싫은 거랑 학교가 여고라는 거 때문이죠. 고등학교 나와서는 처음에 형 이름으로 위조를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술집의 웨이터로. 그동안 백수생활도 많이 했고. 다단계, 장사, 학원운전... 지금 하는 일은 운전인데, 누가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나답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서류는 여자로 되어있지만 일을 하기에는 운전이 좋으니까. 계속 형 이름으로 살다가 형이 결혼하고 싶어하니까. 그때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형 이름으로 취업을 했어요.

【사례 3】 김○진 (FTM, 36세)

거기에서 위장취업을 했어요. 거기서는 주민등록증번호를 확인 안하고 취업시키더라구요. 전 어디 가서 취업해도 불리는 이름 따로 있고 본명이 따로 있다고 해요. 거긴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냥 사람 써버리니까.

세 번째의 다른 취업전략은 간성(intersexual, 양성구유)으로 취업하는 것이었다. 실제 간성은 성전환자와 유사한 정황을 가지고 있다. 양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지만 부모들에 의해 법적으로 여성이라고 등록되었고 이후 사회적 지위를 정정하려 한다면 이러한 간성의 상황은 FTM의 상황과 유사한 스토리를 가질 수 있다. FTM들은 간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실제 간성이라고 자신을 해명한 FTM들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남성적 위치를 인정받았다. 간성과 FTM들은 모두 불가항력적이지만 남성성기의 유무라는 차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다르게 자리 잡았다.

【사례 1】 이○한 (FTM, 27세)

잔머리를 썼죠. 어디 가서 여자라고는 안보이잖아요. 민증은 제시해야하고 위조도 못하고 골머리를 썩히다가 아. 하고 온 게 간성(intersexual). 그게 떠올라서 나 간성(intersexual)이고 이렇게 됬다. 말을 했는데 그게 다 들어맞는 거예요. 호적도 부모님이 경과를 보다가 여자로 올린 거고 사춘기 거치고 하다보니까 겹쳤고 학교 진학했는데 여고를 진학했는데 못 다니겠어서 그만뒀다. 맞아 떨어진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전부 다 남자로 알고 있는 거고,

【사례 6】 김○룡 (FTM 28세)

친구 중에 한명이 양성이었는데, 그 친구가 언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호적정정이 되서 여자친구랑 같이 혼인신고하고 살더라구요. 그런걸 보니까 저도 이력서에 교묘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2를 0으로 바꾸고 제출을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자라는 글자를 다 빼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8년 동안 안 되던 취업이 한달만에 4군데에 합격통지를 받았어요. (언제 취업이 되신거죠?) 올해. 6개월 정도 되죠. 6개월 취업하면서 느낀 게 그냥 여자일 때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금 보면 예전이랑 틀린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근무시간이 좀 늘어나고 힘쓰는 일 좀 하고. 아, 숫자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FTM들의 취업 창구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FTM의 의학적 조치의 과정을 지속해온 기간 따라 차이가 있다. 의학적 조치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FTM의 몸도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르몬 투여를 받고 있는 FTM는 이미

남성적 외양과 스타일을 갖추고 있어 서류상의 성별, 이름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갖춘다. 반면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FTM의 경우, 여성적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여성적 외양의 흔적이 있다. 여성적 외양의 흔적은 서류상의 성과 일치하지만 이 경우, 오히려 FTM들이 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으로 보이는가에 여부에 대한 FTM의 모든 관심은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으로서의 자신들에 대한 인정욕망의 한 측면이다. FTM들은 취업 역시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성별화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성별화된 일자리로부터 자신의 강한 인정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사례 14】 이○규 (FTM, 21세)

(사회 나가보시니까 어때세요?) 일단은 아예 첫판에 딱 봐도 다 여자로 봐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벌기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마음도 되게 갑갑하고 일단..

(어떤 일을 알아보셨어요?)

서빙같은 거는 정말 죽어도 하기 싫더라고요. PC방 주유소 이런 쪽. 된 적도 있죠 그런데 거의 다들 진짜 여자로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쁘장하고 참한 여자를 쓸 거 아니에요? 아예 일구하는 것 자체가 할 일들이 다 여성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② MTF의 경우

MTF들의 경우도 FTM들과 마찬가지로 서류상의 성별과 다른 여성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취업하기가 어렵다. 남성으로 취업을 하려 해도 튕는 외모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MTF들은 FTM과 달리 호르몬 조치의 여부나 투여기간과 상관없이 성전환 수술과 얼굴성형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남성적 육체의 흔적은 상대적으로 잘 드러난다. 키와 골격, 손과 발의 생김새 등은 여성적 스타일과 차장에도 불구하고 남성성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MTF들은 여성적 체형을 갖추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화장을 하는 등 남성적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을 한다. 화장을 하지 않으면 외출을 하지 않는 MTF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MTF들의 경우, 자신이 인식하는 성, 즉 여성으로 취업하기는 FTM보다 어려울 수 있다. MTF들에게 가능한 일자리는 학원강사나 과외교사, 사무직, 자영업 등이었다.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형식의 사무보조나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나 MTF들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쉽게 이직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었다. ‘여자야? 남자야?’라는 사람들의 반복된 질문들 때문에 자신들의 성별정체성이 폭로될지 모른다는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사례 36】 민○연 (MTF, 31세)

졸업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아르바이트하고 만 거죠. 일자리를 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일단 이미지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면접 같은 거 많이 했지만 오라는 데는 한군데도 없는 거죠. 지방 같은 데가 되게 보수적이라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는…편의점. 편의점 밖에 못 해봤어요. 기술이 없어서..다른 쪽에서 머리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자격증도 쓸모없고.

【사례 26】 김○경 (MTF, 34세)

분명, 남자야 여자야라고 물어보지는 않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쟤 남자였어?”라는 얘기.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의 얘기 하셨어요. 농담으로 회식하는데, “수술해라, 내가 수술비 대 줄께” 농담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은. 직원들 있는 데서. 그게 저한테는 위기 상황이었어요. 무난히 넘어가면 좋은데,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괜히 그게 또 겁나더라고요. (나는) 뭔가 일을 해서 내 나름의 계획이 있는 건데,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레 겁먹고, 지레 겁먹은 게 참 많았죠. 그만두게 됐어요.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은 MTF들의 욕망과 달리 사회적으로 여성적 외연이 너무 드러나면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다. 이러한 딜레마는 MTF들을 특정한 직업군으로 이끄는 요인인지도 하다. 바로 성산업-트랜스 전용 클럽-으로의 유입이다. 그리고 MTF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계기는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행동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MTF들을 만날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성전환 수술은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MTF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MTF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되도록 빨리 수술을 마쳐야만 희망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생각은 성산업의 공간, 성매매의 공간으로 유입되는 계기를 만든다. 내가 인식하는 성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을 가기 위한 방법도 이미 제시되어 있는 셈이다. 그래서 여성으로 인정받고 여성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마음대로 꾸밀 수도 있는 트랜스 전용 클럽은 많은 MTF들의 직업공간이 되었다.

또한 성산업의 공간은 많은 MTF들이 모여 함께 정보를 교류하는 커뮤니티이기도 하다. 이제 막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발견한 MTF들은 트랜스 전용 클럽을 찾아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호르몬이나 성전환 수술 등 많은 정보를 듣고 알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하다. MTF들의 집단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트랜스 전용 클럽을 찾고 친분관계를 통해 성산업에서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한다. 트랜스 전용 클럽이 아니면 자신들을 받아주기 어려운 현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25】 강○○ (MTF, 21세)

강○○: 엄마아빠에게 커밍아웃한 시기에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대학을 안가겠다고 했어요. 그 언니가...왜 안가냐고 제발 부탁인데 여기오지 마라. 그 언니가 바 다니는 언니였어요. 여기는 어떤 곳인데 어떻게 살려 그러냐 못 버틴다...그랬어요.

면접자: 고1때 인터넷에 알아보면서 호르몬 치료랑 수술 다 알았네요?

강○○: 예. 그때 알았죠. 돈을 벌어야겠다. 목표가 생긴 거죠. 알아서 돈이 얼마쯤 드는지도 알아놓은 거였죠...언니 얘기 듣고서는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대학가서 과외를 해서라도 돈을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면접자: 대학안가면 트랜스 바에 갈 생각을 한 거네요?

강○○: 그랬죠. 대학이란 데보다 오히려 그걸 크게 열어둔 거였죠. 돈은 내가 나가자마자 별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여성성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테는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였죠. 언니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보도 많이 얻고 최대한 빨리 내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트랜스 클럽도 여성의 상품화에 기반으로 하는 성산업이라서 예쁜 외모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중요하다. 트랜스 클럽의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과 호감을 주지 못하면 일

을 계속해서 하기 어렵다. 예쁜 외모와 여성의 신체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MTF들의 콤플렉스이기도 하다. 꾸미고 치장했는가의 여부,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스스로 갖는 자신감의 정도도 다르다. <사례 36>의 민○연씨는 자신이 예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트랜스 전용 클럽에는 남아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자신이 여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트랜스 클럽은 아닌 일반 업소에서 여성도우미로 일을 했다. 민○연씨에게 여성으로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인정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외모가 예쁘지 않다는 사실은 트랜스 클럽에서 스스로 위축되었던 지점이기도 했다.

【사례 36】 민○연 (MTF, 31세)

서울에 올라오면서 트랜스 바를 갈라고 했었어요. 갈라고 갔는데 일할라고. 갔는데 저보다 다 이쁜 거에요 (웃음) 못하겠다...다 이쁜 거에요. 거기 가봤자 다 이쁘니까. 안된다고 판단 했어요 사람들 와도 이쁜 애 데려가지. 수술 안한 애들은 안쓴대. 그게 가장 큰 거죠. (중략) (본인이 트랜스젠더 바를 가보겠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여자로 인정받고. 거기서는 여자로 인정해주잖아요. 완전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의 노리개 밖에 안되지만 그나마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회관에 가서 일은 조금 했었어요. 일단 여자로 일은 했었어요. 못생겨도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일은 한거죠. (중략) (두려움은 없었어요?) 두려움보다는 기쁘죠. 내가 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일을 하다가 왜 나오신 거죠?) 못생겨서. 그만둔 거에요. 가면은 다 이쁜 사람만 먼저 찾지 인기가 없으니까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만일 돈이 많았다면 관리 (수술)를 할텐데(웃음) 그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나한테.

성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MTF가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MTF들이 중·고등학교 때 처음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확신하고 성전환 수술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교생활은 이제 필요 없는 과정에 불과했다. 자신이 인식하는 성, 즉 여성으로 사는 데에 남성으로서의 학력은 무의미했다.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강박관념은 더해졌다.

실제 MTF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은 FTM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MTF들은

이미 트랜스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었고 구체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알고 있었다. FTM들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다. 자신들의 역할모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FTM은 MTF와 달리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 사회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FTM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조언을 구할 수 경로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MTF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신한 이후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천할 수 있고 상당수의 MTF들이 트랜스 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MTF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거주지 마련의 비용을 빚을 지거나 업소에 따라서는 업주가 선불금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새긴 빚으로 인해 처음 몇 달간 혹은 1~2년간은 제대로 된 수입을 갖지 못한다.

MTF들이 처음 업소의 막내로 들어가면, 심부름부터 시작한다. 트랜스 클럽의 경우, 서울과 지방의 영업 방식은 차이가 있다. 지방의 업소에서는 2차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님에게 술을 많이 파는 데에서 수입을 챙기고 이를 업소와 업소에 있는 MTF의 수입으로 나누는 반면 서울의 업소에서는 술을 파는 것과 개인별 팁, 2차(성매매) 비용에서 수입을 얻는다.

【사례 35】 오○연 (MTF, 31세)

(지방에서 선불금이 있는 경우는?) 선불금이 깎이지가 많아. 업주가 선별금을 싸줘요. 애 월급이 350이고 애가 몇 백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칠천, 팔천 정도를 싸줘요. (싸준다니 누구한테 싸줘요?) 마담한테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200, 그러면 200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월 300을 쳤는데 지가 100 떼먹고 200이라고 하면 200인 줄 알고. 그러나 나중에 딱 들키면 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떠넘기는 거예요.

【사례 27】 임○라 (MTF, 22세)

내가 메이컵이나 미용으로 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그럴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뭘 배울려고 해도 뭘 할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죠. 집에서는 수술은 니가 알아서 해라. 일해도 마담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부려먹고 월급안주기도 하니까 거의 2년 정도 일했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고. ..(중략) 일수를 땡겼기 때문에 일수를 갚고 돈을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일수를 한번 더 땡겨서 그 돈으로 수술할 생각이에요. 수술을 하면 여기 대우가 틀려지잖아요. 어느 정도 수술도 했고 월급도 좀 높아갈 것이고.

MTF들이 일하는 트랜스 클럽은 일정한 위계구조를 가진다. 위계서열은 대개 나 이로도 구분이 되지만 클럽에서의 일한 경력이 때로는 더 중요하다. 이러한 위계서열에 의해 수입도 차등으로 지급된다. 다시 말해서 클럽에서의 일한 경력이 많아지면 수입도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는 뜻이다.

【사례 27】 임○라 (MTF, 22세)

힘든 점은 언니들 비위 맞추는 거. 손님보다 언니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말 하나라도 잘못하면 괜히 찍히고 테이블 못 들어가고. 손님들은 잘하면 팁이 나오니까. 작정하고...

수술의 정도에 따라 트랜스 클럽에서 받을 수 있는 대우도 달라진다. 트랜스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이었는데, 가슴수술을 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손님을 접대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기회는 바로 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중요하다. 그래서 수술의 정도는 클럽에서 수입과도 연관이 있다. 여성 육체와 가까워진다는 사실은 실제 트랜스 클럽 내에서의 입지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

모든 MTF들이 성산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MTF들은 각종 아르바이트나 과외, 학원 강사, 사무직, 자영업의 일을 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일 뿐더러 구직과정에서 번번이 겪었던 좌절감으로 인해 스스로 사회와 관계 맷는 것을 두려워하여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보다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의 보호나 도움을 통해 필요한 때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충당하는 식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34) 많은 MTF들이 일하는 규모가 큰 클럽의 경우는 손님을 접대하는 정확한 역할이 부여된다. 그러나 지방의 소규모 클럽에서는 정해진 역할은 따로 없다.

【사례 26】 김○경 (MTF, 34세)

거의 알바 수준의, 어떤, 저는, 돈벌이를 하는 거였고. 지인들, 사촌언니, 알고 그러니까, 얘기해서, 그냥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해서, 뭐 한 세 템 정도 과외하고 그걸로 그냥, 겨우, 아주 겨우, 제 면치레 하는 정도...학원 강사도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도 제가 뭔가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다르다는 게 있었죠. 학원도 몇 번 트라이 했었는데 안 되고... 시강하는 거 보면서 재밌다고 특이하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두세 번 지나면 연락 안 오고, 결국엔 그쪽에는 생각을 안하게 되는 거고.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적 외모를 가지고 여성적인 태도, 행동을 한다는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이나 조롱으로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성산업에 진출한 경우를 제외하면 MTF들은 FTM에 비해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7) 성폭력

성전환자에게 성폭력의 위험은 상시한다. 성폭력의 위험은 MTF와 FTM의 여부, 수술정도와 상관없이 발생한다. 성전환자라는 성 소수자의 위치는 호기심 어린 성애적 대상으로 쉽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35>의 오○연씨는 이미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 여성으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이를 고소했다. 그러나 강간죄의 성립의 규정이 부녀자, 즉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피해자의 범위를 한정되어 있어 성폭력 가해자가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고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과정에서 경찰들의 비아냥 거리는 태도는 MTF들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어도 고소, 고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³⁵⁾ 성폭력 피해의 경험은 성전환자들에게는 개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동시에 다시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감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

【사례 35】 오○연 (MTF, 31세)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날 여자로 봤고. 거기다가 트랜스인 줄 몰랐고. 술 마시다가, 나

35) 성폭력 피해사건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볼 수 있다.

는 이제 집으로 갔는데 따라왔죠. 술 한 잔만 더 하자고.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문 열어줬는데 맥주 딱 세 잔인가 더 먹더니, 화 덮친 거예요. 싫다고 했는데, 강압으로 막, 배개로 눌러가지고... 그가 나가자마자 112 누르고 오자마자 가지고 바로 경찰서로 갔어요. 그 래 가지고 그때 팬티하고, 산부인과 가지고 장세척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강간은 부녀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강제추행으로 해놨는데, 그 남자를 잡아왔더라고요. 그런 과정상 저를 다시 오라하더라고요. 다시 수사한다고. 근데 따로 여경 불러 달라고 했는데 여경 안 불러주고. “남자새끼가 무슨 여경 불러달라고 하냐”고. 아저씨, 나 여자라고, 외모만 보면 여잔 줄 알지 누가 남자로 알아. 내가 남잔지 어떻게 아니고 따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나왔거든요

<사례 1>의 이○한씨는 호르몬 투여만 받고 있는 FTM이었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직장에서 우연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한씨는 직장동료들에 의한 집단적인 성폭력을 경험했다. 직장동료들이 강제적으로 성별을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성폭력의 경험은 성전환자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적이다. 특히 육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혐오감을 갖는 성전환자들에게 육체가 강제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수치심과 치욕감을 느낄만한 것이다. 성전환자들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은 더해갈 수밖에 없다.

【사례 1】 이○한 (FTM, 27세)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게 됐는데, 갑자기 셋이 달려들더라고요. (중략) 애 진짜 맞네. 이 새끼 변태아냐? 막 욕을 하더라고요. 이제 완전 패닉 상태가 되 가지고. (중략) 제가 다리 밑에 양말 뒤쪽에 칼을 하나 차고 다녔어요. 누굴 해칠려는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남자 셋은 무리일 거 같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되 해야되 해서 .. 꺽꺽 쳐서 기절시켜놓고 끓어놓고...쪽 설득을 했어요. 그때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사표를 냈죠. 그 기억이.. 그리고 나서 제가 더 숨어들려고 했을지 몰라요. 세상 밖으로 나 가지 않을려고 진짜 그리고 집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잠만 잤어요.

성전환자들이 사회 속에 통합되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은 이분법적 성의 구분이 폭력적인 형태로까지 나타난 점이다. 그리고 잠재된 그러나, 현실적인 성폭력의 위험 이 사회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위험에 대한 감지는 FTM의 경우, 육체적

인 힘을 기르고 대인관계에서 위협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8) 가족구성

① 연애관계

성전환자들은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헤어지지 못한다. 성전환자들이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처음 사람을 만나 애정관계를 형성하는데 소극적인 편이다. 대부분 애정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이전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거나 직장이나 친구관계에서 발전한 경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만나게 된 경우, 친구의 소개로 만나는 경우이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주변관계나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가운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FTM에 한정되었다. FTM이 자신들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여성동성애자로서 자신을 인식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FTM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들의 성적지향이 동성지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 여성동성애자와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성전환자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신했을 때도 여전히 자신들의 파트너를 여성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에서 찾기도 했다. 반면 MTF들의 경우, 자신들이 이전에 스스로를 남성동성애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을 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MTF들이 남성동성애자를 만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례 20】 박○현 (FTM, 31세)

대쉬를 못해봤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나이도 있으니까. 진지한 관계이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다는 건 성전환자인 게 없다고 보면 거짓말이죠. 분명히 다르니까. 전 파트너를 여자를 찾는데 일반 여자는 찾다보니까 굉장히 그건 힘이 들고... (레즈비언) 까페 있으니까 말을 걸어보고 대화를 했는데, 통화도 하게 되었는데, 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에요. 넌 일반 남자인데 속이고 우리 놀랄려고 가입을 한 거니까 목소리까지 들어보고 넌 아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이 저를 남자로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자로서 여자 상대를

찾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건 차이가 있죠.

성전환자들이 애정관계를 형성할 때 보이는 태도는 다소 소극적이다. 먼저 다가가서 고백을 하거나 애정표시를 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지, 거절당하지 않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형성에 있어서의 두려움은 애정관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FTM의 경우 이성애자 여성과 파트너로 만나는 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는 자신이 완벽한 남성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언제라도 파트너가 자신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이다. 마찬가지로 여성동성애자를 만나는 경우에도 역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MTF의 경우도 역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상당부분 불안감을 갖는다. 애정이 깊어질 수 이러한 불안감이 커지는데, 때로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공식화시키지 않거나 명확한 애정고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 25>의 강○○씨는 자신과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자신을 여성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는 늘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사례 15】 임○현 (FTM, 31세)

저 사람은 워낙에 레즈비언이였고 그런 사람이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되게 좋아해요. 저는 평생 저 사람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껴 같애요. 맞춰서 살려면 맞춰서 살수 있을 껴 같애요. 떠날까봐 많이 두려워요. 저 사람이 레즈비언이니까 떠날까봐 되게 많이 무서워요.

【사례 25】 강○○ (MTF, 21세)

(왜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을 안해요?) 그게 제가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개는 모르죠 저는 두려워요. 저는 친구관계로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로 그런 말을 하는 거 자체가 부담감을 느끼는 거 같아요. 애인인데 사랑한단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저도 있고. (본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사랑이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저는 개한테

그렇게 말해서 개가 부담감 갖는 게 싫어요... 그래서 개 사이가 틀어지는 게 싫어요. ... 항상 그런 건 있어요. 내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다녀서 그런 게 심하거든요. 누가 나 쳐다보면 왜 쳐다보지? 내가 남자로 보이나 싶은. 개랑 같이 다니면서 남들이 저를 무슨 이유로 쳐다볼 수 있는데 괜히 미안한 마음 들고. 나때매 개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존재해요.

자신의 육체와 상반되는 성별정체성을 갖는 성전환자들은 늘 애정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파트너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트너와의 자신의 관계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늘 의식하고 조심한다. 자신의 불완전성-육체와 성별정체성간의 분리-으로 인해 파트너와의 관계는 언제라도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환자들은 대개 자신들의 애정관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한다. FTM의 경우,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로, MTF의 경우 여성스럽고 보살핌이 있는 여자로 행동하려 한다.

성전환자들에게 파트너의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자신에게 냉소적인 사회속에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지망이 되는 파트너는 사회로의 소통창구이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안에서 높은 만족도를 가지는 성전환자들에게 해어짐의 과정은 매우 뼈아프다. 특히 성전환자들의 파트너가 자신을 떠나 비성전환자들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성전환자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불안전함을 다시금 깨닫는 지점이다.

【사례 1】 이○한 (FTM, 27세)

헤어진 것도 집에서 개가 다른 남자랑 있는 것을 보고. 그때 고민을 했어요. 일반 남자와의 차이에서 오는 자격지심도 있었고, 그래서 헤어지고 근 한달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기서 막혀서 아무 말도 안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가 거의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이었는데 개랑 헤어지고 나서는 정말 내가 별이는 어떻게 별고, 밥은 어떻게 먹고, 말은 어떻게 해야 하나. 큰 혼란으로 왔고 난 과연 남잔가? 재는 다른 남자가 좋아져서 사귀게 된 건데,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개는 온전한 남자고 난 온전한 남자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런 부분이 맘에 안들었나? 이런 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일부의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밝히지 않았다. 사

회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밝혔을 때 헤어지게 되거나 자신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사례 11>의 조○우씨는 파트너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파트너가 자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되어 떠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조○우씨의 예처럼 성전환자들은 사회로부터의 냉대 뿐 아니라, 파트너로부터 이해받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늘 의식하고 있었다.

【사례 11】 조○우(FTM, 33세)

왜 여자친구에게 자신에 대해 말을 안 하셨어요?) 그거 있잖아, 아, 얘길하면 깨지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보다, 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그런 눈빛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요.

② 동거

많은 성전환자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많은 경우, 자신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 위해, 직장 때문에, 가족의 냉대에 대한 저항 등으로 독립을 한 뒤 좋아하는 파트너를 만나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도 한다.

대개 파트너와의 동거생활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10여년 정도까지 이어진다. 성전환자들이 성별변경에 이르는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미혼인 상태에서 동거를 한다. 혼인을 하려고 해도 법적인 지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거생활은 미혼인 경우, 특히 성별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유사결혼생활이다. 단, MTF와 FTM의 동거생활 파트너를 선택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는데, FTM들이 파트너와의 오랜 동거생활을 거치면서 기준의 파트너와 성전환 수술과 성별변경을 마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 MTF들은 성전환 수술 후에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 혹은 성별변경을 한 후에 동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예를 보았을 때, MTF들은 여성으로서의 자

신감을 가졌을 때 동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거생활에서 파트너와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다. 서로를 지칭하는 호칭 역시 그렇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기 전, 가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에는 단순한 친구사이로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소개한다. 그러나 이미 호르몬과 같은 의학적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자신의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우에는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파트너를 정식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파트너의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기도 한다. 물론 파트너의 가족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거나 않더라도 외관상으로 비춰지는 성, 즉 FTM의 경우는 남성으로, MTF의 경우에는 여성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사례 6】 김○룡 (FTM, 28세)

2000년도부터 나와서 살았죠.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친구가 있었고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가 세살 연상이었는데 그런데도 친구인줄 알고 지내다가..

【사례 18】 양○모 (FTM, 33세)

(지금, 파트너와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뭐, 사실 법적, 제도적 가족은 아니지만 와이프라고 호칭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혹시 파트너가 떠나버린 것에 대한 불안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까 이제, 다시 만나게 되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만났어요. 그런 것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이 사람 아니라 누구라도 평생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을 그냥 믿는 것만 못하다, 이런 거죠.

성전환자들은 연애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거생활에서도 파트너가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다. 그래서 성전환자들은 파트너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한다. 파트너에 비해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파트너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기도 했다.

파트너에 비해 자신은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사실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파트너와의

생활에서 자신의 불완전한 몸을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의 육체는 자신이 숨기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고 부정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동거생활에서 자신의 몸은 유일하게 자신이 맡은 성별역할과 대비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함께 지내는 가족이라 해도 파트너 앞에서 옷을 벗지 않는다.

【사례 9】 신○영 (FTM, 48세)

나랑 만나면 불행 아닌가. 친정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빠지는 게 없는데. 그리고 나한테 와서 호강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도 편하게 잔 적이 없다. 그래서 식구(아내)가 잘 때도 나를 잘 못 만진다. 내가 항상 위축되고 몸을 만진다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그러는거 아니까. 항상 나를 만질 때 말을 먼저 하고 만진다. 내가 놀라니까. 그리고 집안에서도 마주보고 옷을 안 갈아입는다. 보여주기 싫어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할까봐. 지금은 원룸에 사니까 내가 옷 갈아입으면 화장실 가 있고 피해주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성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FTM은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이다. MTF는 여성스러운 여성, 집안일을 잘하는 여성으로 되는 것이다. MTF의 경우 아침식사를 반드시 챙기고 청소도 매번 더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례 34】 박○순(MTF, 60세)

나중에 좋은 사람이 생겨도, 결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에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랑 식사를 잘 못 챙기면 스스로 못 견디겠더라고요.

성전환자들은 성별변경 전에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의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거관계에서 모든 법적, 사회적 지위와 요건이 필요하면 파트너의 지위를 활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살고 싶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성전환자들에게 파트너는 사회적 지지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의 파트너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집중된다는 사실로 불안하기도

하다. 극단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 카드발급 등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파트너의 지위를 활용하였다. <사례 9>의 신○영씨는 자신의 모든 사회적 법적 지위의 근거가 파트너였다. 만일 자신이 파트너와 헤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단순히 자신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위자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례 9】 신○영 (FTM, 48세)

모든 게 집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잘 못되더라도 할까봐 항상 불안하고. 모든 게 집사람 앞으로 되어있으니까 항상 그게 화가 나. 사업자 등록증, 어디 인터넷에 가입하는 것도 다 집사람. 실명 넣는 데는 내 이름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 홈쇼핑으로 세탁기를 하나 샀는데, 카드결제를 했어. 확인전화가 나한테 왔는데 본인이 아닌거 같으니까 본인 바꾸라고 하는 상황이 쉽고.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부르라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지. 돈을 찾으려 갈 때 지금은 다 기기로 하지만 예전에 창구로 할 때는 급해도 할 수가 없어서 화가 나지.

성전환자들이 동거생활을 끝내고 이별을 맞게 되는 경우는 대개 파트너의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반대한 경우, 파트너가 불안정한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떠난 경우, 파트너에 대한 미안함으로 헤어진 경우 등이 있었다. 헤어짐의 이유가 어떠한 경우이든 성전환자들에게 상당한 좌절감과 실망을 경험한다. 자신의 유일한 지지망이었던 파트너와의 관계는 큰 허탈감으로 다가온다.

【사례 6】 김○룡 (FTM, 28세)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집안에서 못 만나게 데리고 가고 위낙 집안의 언니들하고 다 친했으니까 동생을 갖고, 동생이 동성애자 하는 게 쉽다. 너도 믿었는데 우리에게 감쪽같이 속이고 그리고 헤어진 게 언니들이 막아서 헤어지게 된 거구. 그게 저로서는 힘들어서 살던 데에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③ 결혼

성전환자들이 성별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는 자신이 인식하는 좀더 완벽한 성의 지

위를 갖추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으면 파트너에게도, 파트너의 가족들에게도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은 심기를 무척 불편하게 한다. 혹여 파트너의 가족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알게 되면 동거생활은 깨지고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별변경은 자신들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이자, 제도적으로 파트너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생식불가능의 문제이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은 스스로를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함의 상태로, 결핍의 상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MTF들은 특히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사례 24】 이○정 (MTF, 32세)

그 전에 사귀던 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 홈피에 우리 사진 다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여동생이 제 홈피에 왔더라고요. 쪽지를 보냈는데 자기 오빠가 장남인데 헤어질 수 없나. 부모님이 아셔서 속상해 하시는데 헤어질 수 없나고. (성전환 때문에?) 일단은 성전환이라는 게 그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아무나, 아무나는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주게 됐죠. 같이 집도 보러 다니고 하이마트도 가고 그랬어요. 정말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건 때문에 호적정정을 신청한 거?) 그 사람이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호적정정을 같이 준비한 거에요.

【사례 25】 강○○ (MTF, 21세)

결혼은 아직 생각없어요. 천애 고아아니면 부모 두고서... 사실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좋아하는 사람으면 그러기 힘들 거 같아요. 개가 좋다고 해도 제가 싫을 거 같아요.

결혼에 대한 의견으로 특히 MTF들은 반복되는 연애관계와 동거생활 속에서 이제는 ‘남성’³⁶⁾을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생긴다고 하였다. MTF들이 성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업소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남성’들을 보고 신뢰하지 못하거나 성산업에 종사하는 MTF 선배들의 예를 보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FTM들

36) MTF의 파트너로 주로 이성애 남성을 뜻한다.

은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와 결혼을 희망한다. 대부분 현재 연인관계나 동거관계의 파트너가 있는 경우, 현재의 파트너와의 결혼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MTF들이 결혼을 성역할로 생각하는 반면 FTM들은 사회적인 인정의 계기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례 24】 이○정 (MTF, 32세)

결혼은 아직까지 생각 없어요. 남자를 잘 못 믿겠고. 그동안 결혼하자는 오빠들도 있었어요. 애를 입양하거나 우리나라 힘들면 외국 가서 살자고 하는 오빠들도 있었는데 제가 남자애들도 접해봤고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누구보다 잘 해주는데 그게 식으면 다른 여자 만나고 바람피우게 되면 다른 데가서 애를 만들어오거나. 사십 넘어올 때까지 남자랑 살다가 남자가 바람피우면 헤어지고 다시 술집 나와서 일하기는 챙피하니까 이러면서 한탄하는 언니들 많이 봤죠. 절대로 남자는 평생 같이 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일을 확실히 갖고 있고 남자랑 같이 산다거나 하는 꿈은 갖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전환자들은 자신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욕망과 달리 실제 결혼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도달할 수 없는 결핍감 혹은 불완전함은 사회적 인정의 여부를 떠나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2. 성전환자의 생활

1) 조사개요

성전환자들의 생활과 차별경험을 수치화된 자료로 남기고자 성전환자들의 현재의 생활과 과거 경험, 차별의 경험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성전환자들의 현재의 생활과 차별경험 외에 성전환자들의 삶을 통해 필요성이 요구되는 정책방향과 목표 등의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도 포함했다.

지금껏 한국사회에서 성전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설문지의 구성은 전적으로 몇몇 성전환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사전결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구성에 도움을 준 성전환자들은 심층면접이 이루어지던 초반기인 2006년 4월부터 2006년 6월 초까지 진행되었던 심층면접자들이었다. 심층면접의 결과로 성전환자들의 특징,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6월 27일부터 2006년 8월 9일까지 진행하였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전환자임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은 성전환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성전환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참여를 허락해 준 성전환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주로 많은 협조를 주었던 인터넷 커뮤니티는 FTM 커뮤니티였다.³⁷⁾ 상대적으로 MTF의 커뮤니티의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웠고³⁸⁾ 이러한 어려움

37)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에 성전환자 인권단체인 (준)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령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의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FTM 커뮤니티의 도움 또한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한 FTM 커뮤니티의 오프라인 모임이 이루어졌고 많은 FTM 당사자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커뮤니티의 몇몇 운영자들은 실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38) MTF 전용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찾기 힘들었다. MTF만이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들(예: CD)과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회원들의 허락을 구한다 해도 커뮤니티의 특성상 오프라인 상의 전체모임(정모)에서 MTF만을 따로 만나기는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던 조사시점 중에 MTF나 CD들의 오프라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접하지 못했다.

을 극복하기 위해 이태원 지역의 트랜스 천용클럽을 방문하여 업소의 허락을 받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지의 내용이 다소 길었기 때문에 이해를 돋기 위해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이하 기획단) 개개인이 직접 설문지를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설문에 응해준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기획단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기획단은 이를 수거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시점 이전에 기획단과 만났던 성전환자들에 한해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주고 받았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해준 모든 성전환자들의 수는 78명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 13>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항목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주체성	MTF	40	51.3
	FTM	38	48.7
연령	10대	2	3.6
	20대	23	41.1
	30대	22	39.3
	40대	7	12.5
	50대 이상	2	3.6
가구주의와 관계	세대주	48	64.0
	세대주의 자녀	23	30.7
	기타	4	5.3
가구규모	1인 가구	23	30.3
	2인	31	40.8
	3-4인 가구	15	10.5
	5인 이상	7	9.2
혼인상태	애인과 동거	18	23.1
	기혼(재혼포함)	1	1.3
	이혼/별거/사별	1	1.3
	미혼	58	74.4
학력	무학 · 초등학교 졸업	3	3.9
	중학교 졸업	5	6.5
	고등학교 졸업	32	41.6
	대학교 졸업	30	39.0
	대학원 졸업 이상	7	9.1
종교	개신교	19	24.4
	천주교	10	12.8
	불교	10	12.8
	없다	35	44.9
	기타	4	5.1

* 이 표의 각 항목별로 무응답은 제외되었다

설문조사응답자는 전체 78명이었는데 MTF가 40명, FTM이 38명이었다. 응답자의 전체 연령분포는 10대가 2명, 20대가 23명, 30대가 22명, 40대가 7명, 50대 이상이 2명이었다. 최연소 연령은 19세였고 최고 연령은 60세였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세대주인 경우가 48명,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가 23명, 기타인 경우가 4명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본가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별도의 세대를 직접 구성하는 세대주가 많았다. 이러한 가구주와의 관계는 가구 규모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23명, 2인 가구가 31명, 3-4인 가구가 15명, 5인 이상 가구가 7명이었다. 응답자들 중 세대를 별도로 구성한 비율이 많다는 것은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가 많은 비율과도 일맥상통한다. 본가에서 독립하여 혼자 지내거나 친구나 애인 등 동거인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이 많았다.

혼인상태는 애인과 동거하는 경우가 18명, 기혼인 경우는 1명,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1명, 미혼인 경우 58명으로 대부분 미혼인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미혼인 상태에서 애인과 동거는 18명이었다. 상대적으로 기혼은 1명으로 호적정정을 한 후 기혼인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

학력은 무학·초등학교 졸업(중퇴, 재학포함)자는 3명이었고 중학교 졸업자(중퇴, 재학포함)는 5명, 고등학교 졸업자(중퇴, 재학포함)는 32명, 대학교 졸업자(중퇴, 재학포함)는 30명, 대학원 이상 졸업자(중퇴, 재학포함)는 7명이었다. 많은 수가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졸업자였다.

종교는 개신교가 19명, 천주교가 10명, 불교가 10명, 기타 종교가 4명,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35명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비율이 약간 많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개신교의 비율이 많았다.

3) 현재의 생활

(1) 가족관계

<표 14> 가족규모

가족규모	빈도	비율(%)	
1인 가구	23	30.3	
2인	31	40.8	
3-4인	15	10.5	
5인 이상	7	9.2	
계	76	100.0	

평균 가족규모
2.28

조사대상자의 가족규모는 2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40.8%, 31가구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의 비율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전체의 30.3%, 23가구가 1인 가구였다. 오히려 3~4인 가구는 10.5%인 15가구에 그쳤고 5인 이상 가구는 9.2%에 7가구에 불과했다. 그리고 설문대상자의 평균³⁹⁾ 가족규모는 대략 2인 정도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의 수도 파악하였다.

<표 15> 형제관계

형제의 수	빈도	비율(%)	평균 형제의 수 3명	형제관계	빈도	비율(%)
1	9	13.0		첫째	28	39.4
2	18	26.1		가운데	20	28.2
3-4	25	36.2		막내	23	32.4
5명 이상	17	24.6		계	71	100.0
계	69	100.0				

전체 응답자 중 독자인 경우는 13.0%, 9명, 형제자매가 2인 경우는 26.1%인 18명,

39) 4-2장에서 제시한 모든 평균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설문조사대상자들이 응답한 수치를 평균값으로 계시한 것이다

3~4인 경우는 36.2%인 25명, 5명 이상인 경우는 24.6%인 17명이었다.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에서 본인이 첫째인 경우는 39.4%로 28명, 막내인 경우는 32.4%로 23명이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의 수는 대략 3명이었고 맏이인 비율이 가장 많았다.

(2) 가구경제

① 가구 총 수입

<표 16> 가구수입과 개인수입

가구 총 수입 (기준: 월)			본인의 수입 (기준: 월)			
	빈도	비율(%)		빈도	비율(%)	
70만원 이하	7	10.1	18.8	70만원 이하	22	31.4
70-100만원 이하	6	8.7		70-100만원 이하	7	10.0
100-150만원 이하	7	10.1	30.4	100-150만원 이하	10	14.3
150-200만원 이하	14	20.3		150-200만원 이하	10	14.3
200-250만원 이하	5	7.2	20.3	200-250만원 이하	5	7.1
250-300만원 이하	9	13.0		250-300만원 이하	7	10.0
300-400만원 이하	6	8.7	30.4	300-400만원 이하	5	7.1
400만원 초과	15	21.7		400만원 초과	4	5.7
계	69	100.0		계	70	100.0
월 평균 가구 총 수입			월 평균 본인 수입			
275.12만원			163.54만원			

설문조사에 응한 성전환자 가구의 가구 월평균 수입으로 400만원이 넘는 수입이 있는 가구가 15사례, 150~200만원 이하가 수입인 가구가 14사례, 250~300만원 이하가 수입인 가구가 9사례, 100~150만원 이하의 수입인 가구와 70만원 이하의 수입인 가구가 각각 7사례, 300~400만원 이하의 수입인 가구와 70~100만원 이하의 수입인 가구가 각각 6사례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가구 수입의 평균은 약 275만원 정도였다. 이러한 가구수입의 평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통계적 수치에서 발견

되는 문제점은 비교적 적은 수의 대상자들(69명) 가운데에서도 가구수입의 경우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월 가구수입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0.4%이지만, 또한 100~200만원 이하의 가구수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30.4%였고 200~300만원 이하의 가구수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3%, 100만원 이하의 수입인 가구의 비율은 18.8%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비율 이상으로 월 200만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이유는 성전환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의 유형에 따른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별정체성의 유형과도 상관이 있다.

가구 수입 가운데 본인의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였다. 70만원 이하의 수입자는 22, 70~100만원 이하의 수입자는 7명, 100~150만원 이하의 수입자와 150~200만원 이하의 수입자자는 각각 10명, 200~250만원 이하의 수입자는 5명, 250~300만원 이하의 수입자는 7명, 300~400만원 이하의 수입자는 5명, 400만원이 넘는 수입자는 4명이었다. 70만원 이하의 수입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적은 수입은 본가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겠지만, 독립한 세대의 경우 적은 수입은 생계의 위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② 재산상태

<표 17> 가구 재산상태

가구 재산상태	빈도	비율(%)	평균 재산액
300만원 이하	17	32.7	약 1억 1천 68만원
300-1,000만원 이하	5	9.6	
1,000-3,000만원 이하	7	13.5	
3,000-5,000만원 이하	5	9.6	
5,000-1억 이하	5	9.6	
1억-3억	8	15.4	
3억 초과	6	11.5	
계	52	100.0	

설문응답자의 가구 재산상태(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포함)⁴⁰⁾에 대해 알아보았다.

3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17가구로 가장 응답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억~3억의 재산이 있는 가구가 8가구, 1,000~3,000만원 인 가구가 7명, 3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가구가 6명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재산 액은 대략 1억 1천 68만원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재산분포는 1,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42.3%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수의 성전환자 가구는 많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3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11.5%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대상자 가구 내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③ 월 생활비

<표 18> 월 평균 생활비

월 평균 생활비	빈도	비율(%)	평균 월 생활비
30만원 이하	4	5.5	약 144만원
30~50만원 이하	10	13.7	
50~100만원 이하	19	26.0	
100~150만원 이하	13	17.8	
150~200만원 이하	15	20.5	
200만원 초과	10	16.4	
총	71	100.0	

조사대상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를 알아보았다.

월 평균 생활비가 50~100만원 이하가 19명, 150~200만원 이하가 15명, 100~150 만원 이하가 13명, 30~50만원 이하인 경우와 200만원 초과인 경우는 각각 10명씩, 그리 30 만원 이하가 4명이었다. 그리고 평균 월 생활비는 대략 144만원 정도였다.

월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월평균 가구수입이나 본인의 월수입에 비해 그 편차가

40) 재산상태에 대한 질문은 정확한 자산을 토대로 하여 설문에 답하도록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략적인 가구 상황에 대해 답해주기를 희망했으므로 정확한 재산상태라고 할 수 없다.

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저축상황

조사대상자들의 저축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축여부에 대해 응답한 대상자 73명 중 저축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명으로 전체 50.7%였고 저축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명으로 전체의 49.3%였다.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응답자들의 월평균 저축액은 50~100만원 정도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만원 이하가 11명, 100~150만원 정도가 5명, 150만원 넘게 저축하는 수는 3명에 불과했다. 전체응답한 대상자들에 한해 이들의 월 저축액 평균치는 대략 96만원이었다.

<표 19> 저축상황

정기적인 저축여부	저축여부	빈도	비율(%)
	예	37	50.7
	아니오	36	49.3
	계	73	100.0
월 평균 저축액 약 96만원	저축비용	빈도	비율(%)
	50만원 이하	11	35.5
	50-100만원 이하	12	38.7
	100-150만원 이하	5	16.1
	150만원 초과	3	9.7
	계	31	100.0

⑤ 채무상태

<표 20> 채무상태

채무상태	채무여부	빈도	비율(%)
	예	37	50.0
	아니오	37	50.0
채무액 평균 3,890만원	계	74	100.0
	1,000만원 이하	8	26.7
	1,000~1,500만원 이하	5	16.7
	1,500~3,000만원 이하	7	23.3
	3,000~5,000만원 이하	3	10.0
	5,000~1억 이하	5	16.7
	1억 초과	1	6.7
총		29	100.0

조사대상자들의 채무상태는 현재 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빚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50.0%였다. 절반정도가 빚이 있었다. 빚이 있는 경우의 빚의 액수는 1,000만원 이하가 8명, 1,500~3,000만원 정도가 7명, 1,000~1,500만원 정도, 5,000~1억 정도가 각각 5명씩, 3,000~5,000만원 정도가 3명이었다. 빚의 액수, 즉 채무금액은 평균적으로 대략 3,890만원이었다.

채무관계에 있는 조사대상자들이 결국 빚을 지게 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빚을 지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주택자금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상당부분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주택자금마련을 위해 빚을 지는 경우가 10명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업자금 마련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응답자는 각각 7명씩으로 많았다.

<표 21> 빚을 지게 된 이유

빚을 진 이유	빈도	비율(%)
생활비	7	18.4
사업자금	7	18.4
주택자금	10	26.3
보건의료비	4	10.5
노름 혹은 술값 등 유흥비	2	5.3
애인 혹은 친구등에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5	13.2
기타	3	7.9
계	38	100.0

⑥ 신용불량자 여부

<표 22> 신용불량자 여부

신용불량자 여부	빈도	비율(%)
신용불량자이다	15	20.8
그렇지 않다	57	79.2
계	72	100.0

조사대상자 가운데 신용불량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았다.

응답자 가운데 15명, 20.8%가 신용불량자였고 57명 79.2%는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 비교적 소수이긴 하지만 20%의 비율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⑦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표 23>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	빈도	비율(%)
식비, 외식비	9	11.8
교육비	2	2.6
교통비, 차량유지비	5	6.6
주거비	9	11.8
호르몬 투여비용	3	3.9
성전환 수술을 위한 수술비용	22	28.9
문화비	5	6.6
내구재	1	1.3
빚	13	17.1
기타	5	6.6
없음	2	2.6
계	76	100.0

조사대상자에게 일반적인 지출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이 어느 것인지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이 성전환 수술 비용이었다. 성전환 수술 비용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8.9%였다. 그리고 13명이 빚이 부담스럽다고 답했고 각각 9명이 식비와 주거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각각 5명씩은 교통비/차량유지비, 문화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3) 거주지와 거주형태

① 거주지역

조사대상자들이 태어난 지역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이 태어난 지역은 서울 외, 부산과 같은 7개의 광역시 및 전국 각 도에 모두 분포하고 있었지만 서울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다. 전체 응답자의 32.5%인 25명이 서울에서 태어났고 부산이 13.0%인 10명, 전라남북도가 10.4%인 8명, 경상남북

도가 9.1%인 7명, 인천이 6명, 경기도가 5명이 태어났다.

반면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서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응답자의 67.9%인 53명이 서울에 거주하였고 경기도에 14.1%인 11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가 전국적인 단위를 하기보다는 서울·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한계이기도 하다.

<표 24> 태어난 지역과 현재 거주지역

태어난 지역		빈도	비율(%)	현재의 거주지역		빈도	비율(%)
	서울	25	32.5		서울	53	67.9
	부산	10	13.0		부산	3	3.8
	대구	4	5.2		인천	2	2.6
	인천	6	7.8		대전	2	2.6
	대전	1	1.3		울산	2	2.6
	광주	2	2.6		경기도	11	14.1
	울산	2	2.6		충청남북도	3	3.8
	경기도	5	6.5		경상남북도	2	2.6
	강원도	2	2.6		계	78	100.0
	충청남북도	4	5.2				
	전라남북도	8	10.4				
	경상남북도	7	9.1				
	제주도	1	1.3				
	계	77	100.0				

② 최근 거주지역을 옮긴 이유

<표 25> 현재 거주지역으로 이사를 한 이유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한 이유	빈도	비율(%)
태어나서 계속 한곳에 있었다	12	16.0
가족들이 이사를 해서	13	17.3
연인과 배우자 때문에	4	5.3
친구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2	2.7
직장문제 때문에/학교 때문에	35	46.7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	3	4.0
기타	6	8.0
계	75	100.0

최근 현재의 거주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이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사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직장과 학교때문’이었다. 직장과 학교 때문에 이사를 했던 응답자는 35명으로 전체 46.7%였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사를 해서’라는 이유도 전체 17.3%인 13명이 답했고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3명이 답했고 ‘연인과 배우자 때문에’라는 이유로 거주지역을 옮긴 이유도 4명이나 답했다.

종합해보면, 한 지역에 계속 살았다는 경우와 가족들이 이사를 해서 옮겼다는 경우를 제외하면 직장과 학교 때문에 거주지역을 옮긴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 소수의 의견으로는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혹은 연인, 배우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친구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소수의 의견은 비록 소수이지만, 성전환자들이 이전에 맺고 있던 사회적 관계망 유지의 어려움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예로 이와 같은 이유로 거주지역을 옮기는 경우는 성전환자들의 특징적인 일면을 보여준다.

③ 거주지

조사대상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형태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가장 많았다. 전체응답자의 44.2%인 34명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였고 28명인 36.4%가 아파트에, 10명인 13.0%가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노숙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4명, 비주거용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1명이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많은 수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편 비주거용 주택이나 일정한 주거지 없음과 같은 주거불안정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 또한 있었다.

<표 26> 거주형태와 점유형태

주택형태	항 목	빈도	비율(%)
	단독주택	10	13.0
	아파트	28	36.4
	다세대, 다가구주택	34	44.2
	여관, 고시원 및 주거용 주택이 아닌 기타건물	1	1.3
	노숙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음	4	5.2
	계	77	100.0
주거점유형태	항 목	빈도	비율
	무상	2	2.6
	월세	11	14.3
	보증부 월세	18	23.4
	전세	16	20.8
	자가	24	31.2
	기타	4	5.2
	없음	2	2.6
	계	77	100.0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마련의 비용과 주거비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알아보았다. 자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세나 보증부 월세, 월세인 경우, 일정하게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는지 알아보았다.

보증금 및 전세금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5명, 500~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6명, 1,000~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4명, 3,000~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명, 6,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2명이었다. 대체로 조사대상자들은 3,000만원 이하의 적은 전세금으로 주거지를 마련하였고 보증금 및 전세금액 평균은 대략 2,718만원이었다. 월세의 경우는 35만원 이하인 경우가 10명, 35~50만원 이하인 경우가 4명, 50만원이 넘는 경우 역시 4명이었다. 월세나 보증부 월세에서 생활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월 35만원 이하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월세금액 평균은 대략 41만원이었다.

<표 27> 주거비용

보증금 및 전세		빈도	비율(%)	평균 보증금 및 전세 금액 약 2,718만원
	500만원 이하	5	22.7	
	500~1,000만원 이하	6	27.3	
	1,000~3,000만원 이하	4	18.2	
	3,000~6,000만원 이하	5	22.5	
	6,000만원 초과	2	9.1	
	계	22	100.0	
월세		빈도	비율	평균 월세 금액 약 41만원
	35만원 이하	10	55.5	
	35~50만원 이하	4	22.2	
	50만원 초과	4	22.2	
	계	18	100.0	

(4) 의학적 조치의 과정

① 의학적 조치의 과정: 호르몬 투여

- 호르몬 투여

<표 28> 호르몬 투여 여부

호르몬 투여 여부	빈도	비율(%)
예, 현재 하고 있다	52	66.7
과거에 한 적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18	23.1
한적 없다	8	10.3
계	78	100.0

조사대상자의 호르몬 투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현재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응답자 중 52명, 66.7%였고 과거에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대상자들은 18명, 23.1%, 투여한 적 없는 대상자들은 8명으로 전체의 10.3%였다. 성별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자들 중 많은 수는 현재 호르몬 투여를 통한 의학적 조치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 호르몬 투여방법 및 투여횟수

<표 29> 호르몬 투여 방법과 투여 횟수

투여방법(복수응답)	빈도	비율(%)	투여주기(복수응답)	빈도	비율(%)
먹는 약을 복용한다	13	18.6	1주일에 2-3회	4	5.7
호르몬제를 일괄구매하여 나 혹은 친한 친구, 친지가 주사한다	40	57.1	1주일에 1회	23	32.9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사를 맞는다	21	30.0	2주일에 1회	18	25.7
바르는 약을 사용한다	2	2.9	한달에 1회	15	21.4
기타	3	4.3	기타	10	14.3
호르몬 대상자	70명		호로몬 대상자	70명	

호르몬 투여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호르몬 투여의 방법과 투여 횟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호르몬 투여의 방법으로 호르몬제로는 주사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일괄 구매하여 직접 주사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중 57.1%인 40명으로 많은 수가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사를 맞는 경우는 21명으로 응답자의 40%를 차지하였다. 반면 먹는 약을 복용하는 응답자는 13명, 바르는 약을 사용하는 응답자는 2명이었다.

이 질문문항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인이 여러 가지 방법의 호르몬제를 동시에 투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투여했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몇 가지의 방법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한가지의 방법으로 호르몬제를 투여하고 있었으나 2가지의 방법으로 호르몬을 투여하는 응답자는 8명, 3가지의 방법으로 호르몬을 투여하는 응답자는 1명이 있었다.

<표 30> 호르몬 투여 방법의 가지수

몇 번의 호르몬 투여를 하는가	빈도	비율(%)
1가지 방법	60	87.0
2가지 방법	8	11.6
3가지 방법	1	1.4
계	69	100.0

- 호르몬 투여비용과 투여기간

또한 호르몬 투여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월평균 얼마의 호르몬 투여비용을 지불하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동안 호르몬 투여를 했는지 물어보았다.

월평균 호르몬 투여비용은 1만원 이하인 경우가 23명이 답해서 36.5%를 차지했고

1~2만원 정도인 경우가 16명으로 25.4%, 2~5만원 정도인 경우가 13명으로 20.6%, 5~10만원 정도가 7명, 11.1%, 10만원 초과인 경우가 4명으로 6.3%였다.

평균적으로는 월 4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월 5만 원 이하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한다.

<표 31> 호르몬 투여비용과 투여기간

호르몬 투여비용	빈도	비율(%)	호르몬 투여기간	빈도	비율(%)
1만원 이하	23	36.5	1년 이하	18	26.9
1-2만원 이하	16	25.4	1년~3년 이하	15	22.4
2-5만원 이하	13	20.6	3년~5년 이하	7	10.4
5-10만원 이하	7	11.1	5년~7년 이하	7	10.4
10만원 초과	4	6.3	7년~10년 이하	11	16.4
총	63	100.0	10년 초과	9	13.4
평균 4만원			총	67	100.0
			평균 66개월 (5년 5개월)		

호르몬 투여기간은 1년 이하인 경우가 18명으로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았고, 1년~3년 정도인 경우가 15명, 7년~10년 정도인 경우가 11명, 3년~5년 정도, 5년~7년 정도가 각각 7명씩이었다. 평균적으로는 조사대상자의 호르몬 투여기간은 현재 시점에서 대략 5년 5개월 정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호르몬 처방과정

호르몬 투여는 가장 먼저 전문의의 진단과 의학적인 처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체로 성전환자들은 병원에서 자신의 상태를 검사받고 진단받는 과정은 주로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의 병원에서 이루어진다.

의학적인 진단은 다양한 검사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이 호르몬제

투여의 처방을 받기 전에 어떠한 검사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하였다. 이 질문문항은 다양한 검사를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32> 호르몬제 투여 처방 전 검사과정(복수응답)

처방 전 검사과정	빈도	비율(%)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38	54.3
성형외과 의사와의 상담	20	28.6
비뇨기과 의사와의 상담	13	18.6
MMPI 검사(다면적 인성검사)	21	30.0
호르몬 검사	20	28.6
정신해리검사	8	11.4
기타검사	6	8.6
전혀 받지 않았다	12	17.1
전체 대상자	70명	

응답자의 많은 수가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을 받았다. 38명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21명이 MMPI 검사라는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았다. 20명씩이 성형외과 상담과 호르몬 검사를 받았다. 그 외에 정신해리검사는 8명이, 기타 검사는 6명이 받았다. 기타 검사에 대한 의견으로는 내과에서의 상담, 산부인과 상담과 검진, 간검사가 있었다. 반면, 전혀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경우도 12명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를 전혀 받지 않고도 호르몬제 투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언급해준다.

<표 33> 호르몬 진단 전 받은 검사의 수

검사의 수	빈도	비율(%)
1가지	27	46.6
2가지	11	19.0
3가지	12	20.7
4가지	4	6.9
6가지	3	5.2
7가지	1	1.7
계	58	100.0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다양한 검사를 개인별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확인해보았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를 받은 적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살펴보았다. 1가지의 검사만 받고 호르몬 처방을 받은 응답자가 27명이었고, 2가지 검사를 받은 응답자가 11명, 3가지 검사를 받은 응답자가 12명, 4가지 검사를 받은 응답자가 4명, 6가지 검사를 받은 응답자가 3명, 7가지 검사를 받은 응답자가 1명이었다. 이렇게 호르몬제 투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는 응답자 개인별로 1가지에서 7가지까지 다양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적인 요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성전환자의 성전환 과정에서 호르몬 처방에 대한 의학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는 이유

<표 34>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는 이유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비용부담 때문에	3	11.5
몸이 너무 힘들어서	3	11.5
해도 별 효과가 없어서	2	7.7
필요성을 못 느껴서(나이 때문에)	2	7.7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6	23.1
몸에 해롭기 때문에	2	7.7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사회적 관계나 지위를 잊기 싫어서)	8	30.8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1	3.8
기타	5	19.2
계	26	100.0

성전환자들이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호르몬 투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응답자들이 답변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였다. 8명이 답변했다. 그리고 6명은 ‘가족들의 반대’ 때문이었고 다음으로는 ‘비용부담 때문에’ 혹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해도 별 효과를 못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했다.

답변 항목 가운데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와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비용부담 때문에’라는 이유는 대체로 호르몬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이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해도 별 효과를 못 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이유들은 대체로 과거 호르몬제를 투여하다가 현재는 그만둔 상태에 대한 이유이다.

따라서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상당수는 호르몬을 회망하지만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르몬을 과거에 투여했다가 그만둔 경우는 몸이 힘들거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호르몬제에 대한 필요성이 자신에게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답변과 달리 ‘호르몬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와 같은 호르몬제에 대한 거부, 전환과정에 대한 거

부의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의 답변은 1명이었다.

- 앞으로 호르몬 투여 계획

<표 35> 앞으로의 호르몬 투여 계획 여부

앞으로의 호르몬 투여 계획	빈도	비율(%)
앞으로 호르몬 투여를 할 계획이다	12	57.1
호르몬 투여를 할 계획이 없다	5	23.8
잘 모르겠다	4	19.0
계	21	100.0

호르몬 투여를 현재 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들에 한해 앞으로 호르몬 투여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앞으로 호르몬 투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12명으로 전체의 57.1%였다. 그러나 호르몬 투여를 할 계획이 없다고 한 응답자는 5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이었다. 응답자들이 과거에 호르몬을 투여했으나 그만둔 사례까지 포함되므로 대체로 전반적으로 호르몬 투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의학적 조치의 과정: 외과적 수술

<표 36> 지금까지 받은 수술(복수응답)

받은 수술의 종류	빈도	비율(%)
가슴수술	35	44.9
난소 정소 제거수술	28	35.9
성기형성수술	22	28.2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	20	25.6
전체 대상자	78명	

성전환을 위한 수술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인식하는 성의 몸으로 외관을 갖추는

가슴수술, 난소/정소 제거수술, 성기형성수술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의 모습에 더 근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얼굴성형, 목소리 성형 등과 같은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수술의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성전환을 위한 수술을 얼마나 시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이 항목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들 중 가슴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체의 44.9%인 35명이었고 난소, 정소 제거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체의 35.9%인 28명, 성기형성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체의 28.2%인 22명이 받았다. 그리고 얼굴성형, 목소리 성형 등의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체의 25.6%인 20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현황은 성별정체성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표 37> 성별정체성에 따른 수술현황

단위:명(%)

수술현황	MTF	FTM	계
수술하지 않았다	11(28.2)	25(65.8)	36(46.8)
1가지 수술만 받았다	5(12.8)	3(7.9)	8(10.4)
2가지 수술을 받았다	7(17.9)	7(18.4)	14(18.2)
3가지 수술을 받았다	5(12.8)	2(5.3)	7(9.1)
4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았다	11(28.2)	1(2.6)	12(15.6)
계	39(100.0)	38(100.0)	77(100.0)

<표 37>은 성별정체성에 따른 수술현황을 보여준다. <표 378>에 의하면 MTF와 FTM의 수술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MTF의 경우, MTF 전체 대상자 가운데 71.8%인 28명이 수술경험이 있는 반면에 FTM의 경우, FTM 전체 대상자 가운데 34.2%만이 수술경험이 있었다. 또한 4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대부분 MTF에 국한되어 있었다.

• 가슴수술

<표 38> 가슴수술

가슴수술비용	빈도	비율(%)	수술연도	빈도	비율(%)
300만원 이하	8	25.0	1996년 이전	4	14.8
300~500만원 이하	16	50.0	1996~2000년	11	40.7
500~800만원 이하	2	6.25	2001~2004년	5	18.5
800만원 초과	6	18.8	2005~2006년	7	25.9
계	32	100.0	계	27	100.0
평균 503만원					
시술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내	28	84.8	종합병원	11	35.5
국외	5	15.2	개인병원	21	67.7
계	33	100.0	계	31	100.0

가슴수술의 비용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지불한 금액은 300~500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다. 가슴수술 대상자의 50.0%인 16명이 3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한 대상자는 25.0%인 8명이었고 500~8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대상자는 2명, 8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대상자는 6명이었다. 이들 중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재수술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지불한 가슴수술의 비용은 대략 503만원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가슴수술을 시행했던 수술연도는 1996~2000년인 경우가 전체 대상자의 40.7%인 11명, 2005~2006년인 경우가 전체의 25.9%인 7명, 2001~2004년인 경우가 5명, 1996년 이전인 경우가 4명이었다.

가슴수술을 받았던 병원은 대부분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그리고 종합병원보다는 개인병원에서 시술받은 경우가 많았다.

- 정소, 난소 제거수술(생식능력 제거 수술)

<표 39> 정소, 난소제거 수술

정소/난소제거 수술비용	빈도	비율(%)	수술년도	빈도	비율(%)		
200만원 이하	2	50.0	1996년 이전	3	21.4		
200~500만원	2	50.0	1996~2000년	5	35.7		
			2001~2004년	3	21.4		
계	4	100.0	2005~2006년	3	21.4		
			계	14	100.0		
평균 약 333만원			평균 1999년				
시술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내	15	75.0	종합병원	13	59.1		
국외	5	25.0	개인병원	8	36.4		
계	20	100.0	무면허시술	1	45.5		
			계	22	100.0		

조사대상자들이 답변한 정소, 난소제거수술에 지불한 비용으로는 200만원 이하가 2명, 200~500만원 이하가 2명이었다. 평균적으로 정소, 난소제거수술에 드는 비용은 대략 333만원이었다.

수술년도가 1996~2000년에 수술을 받은 해당자는 5명, 이 외에 1996년 이전, 2001~2004년, 2005~2006년에 수술을 받은 해당자는 각각 3명씩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수술을 받은 병원은 국외보다는 국내에서, 개인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무면허시술로 수술을 받은 응답자도 1명이 있었다. 성전환 수술 자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시술을 받은 응답자가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 성기형성수술

<표 40> 성기형성수술

성기형성 수술비용	빈도	비율(%)	수술연도	빈도	비율(%)
500만원 이하	1	5.0	1996년 이전	5	31.3
500~1,000만원 이하	10	50.0	1996~2000년	9	56.3
1,000~1,500만원 이하	4	20.0	2001~2004년	1	6.3
1,500~2,500만원 이하	3	15.0	2005~2006년	1	6.3
2,500만원 초과	2	10.0			
계	20	100.0	계	16	100.0
평균 1,390만원			평균 1997년		
시술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국내	14	66.7	종합병원	14	70.0
국외	7	33.3	개인병원	6	30.0
계	21	100.0	계	20	100.0

성기형성수술의 비용으로 조사대상자들이 지불한 비용로는 500~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 중 10명이 성기형성수술로 500~1,000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4명은 1,000~1,500만원이하, 3명은 1,500~2,500만원 이하, 2명은 2,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였다. 일부 재수술을 받은 경우는 재수술 비용도 포함되었다. 평균적으로 1,390만원 정도의 비용이 성기형성수술에 지불되었다.

수술연도는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1996~2000년에 수술을 받은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1996년 이전에 수술을 받은 대상자는 5명, 2001~2004년, 2005~2006년 사이에 성기형성수술을 받은 대상자는 각각 1명씩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이 수술을 받은 병원은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국내, 개인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받았다.

-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

얼굴성형과 같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에 좀더 가까운 외모를 갖추기 위한 수술 역시 성전환 수술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술은 거의 대다수가 MTF에 한정되어 있었다. MTF의 경우, 여성적인 외모를 갖추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성형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지불한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비용은 300만원 이하가 5명, 300~500만원 이하가 5명, 500~1,000만원 이하가 4명,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응답자가 6명이었다. 평균적으로 892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술일 경우, 대부분 국내의 개인병원에서 이루어졌다.

<표 41>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	빈도	비율(%)
300만원 이하	5	25.0
300~500만원 이하	5	25.0
500~1,000만원 이하	4	20.0
1,000만원 초과	6	30.0
계	20	100.0
평균 892만원		
국내	18	100.0
개인병원	18	100.0

③ 향후 수술 계획

<표 42> 향후 수술 계획

향후 수술 계획	빈도	비율(%)
지금 수술 외에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30	71.4
수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12	28.6
계	42	100.0

조사대상자들 중 현재 성전환에 관련한 수술을 한 차례라도 시술받은 응답자에 대해 앞으로 또 다른 수술을 계획 중인지 알아보았다.

설문응답자 중 71.4%인 30명은 ‘지금 수술 외에 또 다른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28.6%인 12명은 ‘수술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수술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응답자는 이미 성전환 수술을 모두 마쳤거나 수술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표 43> 성전환 수술 계획 여부

성전환 수술 계획 여부	빈도	비율(%)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있다	42	79.2
계획하고 있지 않다	4	7.5
모르겠다	7	13.2
계	53	100.0

성전환 관련 수술을 전혀 받지 않은 대상자들이 미래에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현재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9.2%인 42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는 전체의 7.5%인 4명,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2%인 7명이었다.

<표 44> 성전환 수술을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는 이유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비용부담 때문에	4	36.4
너무 위험해서	2	18.2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1	9.1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3	27.3
직장이나 주위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1	9.1
계	11	100.0

성전환 수술을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떠한 이유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비용부담이 성전환 수술을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무 위험해서’, ‘가족들의 반대’나 ‘직장이나 주위사람들의 눈’ 때문이라는 이유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 중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라는 이유를 제외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은 의사는 있지만 비용의 문제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와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사회적 위치 때문에, 혹은 의료기술의 안전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 수술을 주저하고 우려하는 조사대상자들의 태도가 나타난다.

④ 수술 부작용

<표 45> 수술 부작용이 있었는지의 여부

수술 부작용 여부	빈도	비율(%)
수술부작용이 있었다	17	43.6
없었다	22	56.4
계	39	100.0

성전환 관련 수술을 한 차례라도 시술받은 응답자 가운데 수술 부작용이 있었던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의 43.6%인 17명, 수술 부작용이 없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56.4%

인 22명이었다. 상당수의 비율이 수술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수술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가슴수술의 경우, 가슴염증, 모양이나 촉감, 과다출혈의 문제 등이 있었고 성기형성수술의 경우, 질 협착의 문제,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로는 모양이상 등이 있었다. 그 외 가려움증, 흉터, 부어오름, 기억력 감퇴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대부분 모양이나 촉감이상, 혹은 질 협착과 같은 부작용은 재수술을 여러 번 거치기도 한다.

(5) 성별변경

① 성별변경

<표 46> 성별변경의 여부

성별변경 여부	반도	비율(%)	성별변경 과정에서의 어려움	반도	비율(%)
예	6	8.0	비용의 문제	4	36.4
신청 후 기각	2	2.7	성별변경까지 걸리는 시간	4	36.4
아니오	64	85.3	판사의 몰이해	2	18.2
신청중	3	4.0	모멸감을 느끼는 지속적인 질문	1	9.1
계	75	100.0	계	11	100.0

현재 성별변경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대상자들로부터 확인하였다.

‘성별변경을 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대상자 75명 가운데 8.0%인 6명이었고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인 2명, ‘성별변경을 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85.3%인 64명이었다. 그리고 현재 신청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인 3명이었다. 대부분 성별변경을 하지 못했고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사례도 있었다.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을 허가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성전환자들은 특별한 경우⁴¹⁾를 제외하면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육체를 바꾼 이후 몇 가지의 서류들⁴²⁾만을 구비하면 성별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 이전의 성별변경의 절차는 가슴수술과 정소/난소 제거수술(생식능력 제거수술), 성기형성수술까지 마친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지방법원에 제소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6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관련법이나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 법원의 해당 판사의 이해정도에 의해 성별변경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성전환자들은 모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술의 과정을 거친 뒤, 생물학적인 육체가 이미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단여하에 따라 성별변경이 허가되기도 불허되기도 하였다. 결국 성별변경까지의 과정은 성전환자들에게는 기나긴 인내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설문조사에서 ‘성별변경을 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미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이전에 개별적으로 성별변경을 신청을 한 경우였다. 자연히 성별변경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인 경우였고 이러한 제도의 미비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였다. 자연히 성별변경을 한 대상자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었다.

성별변경을 시도한 조사대상자들에 한해 이들이 느끼는 성별변경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성별변경까지 걸리는 비용과 시간이었다. 이 외에 판사들이 성전환자의 생활과 차별에 따른 어려움을 이해하지 않는 점과 성별변경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있었다.

41) 성전환자 가운데 이전에 혼인을 하고 자녀가 있었던 경우, 성별변경을 허하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

42) 성별변경을 위해 지방법원에 성전환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의사 진단서, 수술확인서, 호적등본2통, 주민등록 2통(병적증명서 2통), 본인 진정서(경위서), 배우자(동거인)의 진정서, 가족의 진정서, 친지의 인우보증서, 수년 전부터 반대의 성으로 살아왔음을 증명할 외모 사진, 현재의 외모 사진의 서류를 갖추어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이후의 성별변경 계획

<표 47> 성별변경 계획

성별변경 계획	빈도	비율(%)
성별변경을 할 계획이다	59	83.1
하지 않을 것이다	3	4.2
모르겠다	9	12.7
수술을 할 의지가 없어서	3	25.0
현재 나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잊고 싶지 않아서	2	16.7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서	5	41.7
비용문제 때문에	2	16.7
소계	12	100.0
계	71	100.0

아직 성별변경을 하지 못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앞으로의 성별변경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다. 앞으로 성별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전체 응답자 71명 가운데 83.1%인 59명으로 대다수가 성별변경의 의지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4.2%인 3명,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12.7%인 9명이었다.

‘성별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성별변경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혹은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서’였다. 전체 12명의 대상자 가운데 5명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수술을 할 의지가 없어서’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명이었고 ‘현재 나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잊고 싶지 않아서’와 ‘비용문제 때문에’ 성별변경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2명씩이었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의 완벽한 육체를 갖고자 하는 욕망과 성별변경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 때문에, 비용 때문에 성별변경을 망설이거나 거부하기도

하며, 지금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 수술이나 법적 제도적 성별변경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기도 한다.

(6) 직업활동

① 구직

<표 48>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

현재의 일자리를 구하게 된 경로	빈도	비율(%)
신문, 방송, 인터넷의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11	18.0
벼룩시장, 전단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9	14.8
친구, 이웃의 소개	26	42.6
본인, 가족의 결심/가족, 친지의 소개	7	11.5
기타	8	13.1
계	61	100.0

조사대상자 중 현재 대상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였는가를 질문하였다. 전체 대상자 중 ‘친구, 이웃의 소개로 구했다’는 응답자가 42.6%,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 방송, 인터넷의 사원채용광고를 보고 구했다’는 응답자도 18.0%인 11명으로 많았다. ‘벼룩시장, 전단지의 구인광고를 통해 구했다’는 응답자는 14.8%인 9명이었고 ‘본인, 가족의 결심 및 가족 혹은 친지의 소개로 구했다’는 응답자는 11.5%인 7명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13.1%의 8명이 ‘다른 수단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구했다’고 답했다. 성전환자들 중 많은 수는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 친구나 이웃의 소개를 통해서 구하였다. 성전환자라는 사실이 구직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여 구직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개를 통하여 직장을 구하는 안전한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9>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	빈도	비율(%)
내 시간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	6	9.8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서	2	3.3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7	11.5
쉽게 구할 수 있어서	3	4.9
채용과정에서 굳이 호적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아서	8	13.1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서	23	37.7
기타	12	19.7
계	61	100.0

현재 일, 직장을 가지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에게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61명 중 37.7%인 23명은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기에 지금의 직장을 선택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채용과정에서 굳이 호적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13.1%인 8명으로 많았다.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라는 답변은 11.5%인 7명이었다. ‘내 시간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는 9.8%인 6명이었고,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은 4.9%인 3명이 답하였다. 3.3%인 2명은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 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현재의 일을 구한 이유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과 취업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보다 다른 이유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성전환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자신이 인식하는 성과 사회가 인식하는 성이 다르고 사회가 인식하는 성으로 취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채용과정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쉽게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한 취업요건 중의 하나다. 또한 자신의 시간을 편히 이용할 수 있고 대면접촉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중요한 취업의 변수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취업의 요건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 노동현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성전환자들이 구

할 수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채용이 용이한 직장이나 가능한 일들로 계통화되고 있다.

② 현재의 직업

<표 50> 직업

직업	빈도	비율(%)
사무직	5	6.4
가게운영/개인택시	5	6.4
공장노동자	6	7.7
식당, 주방청소/서빙/배달	2	2.6
유통업소 종사자/공연예술인	27	34.6
운전(영업택시, 버스, 트럭 등)	2	2.6
학원강사/과외교사	3	3.8
전업주부	1	1.3
학생	5	6.4
무직	10	12.8
기타	12	15.4
계	78	100.0

조사대상자들의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12.8%인 무직자와 6.4%의 학생, 1.3%인 전업주부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79.5%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유통업소 종사자였다. 전체의 34.6%인 27명이 유통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장노동자는 전체의 7.7%인 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가게운영 및 개인택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6.4%, 5명씩이었다. 그밖에 학원강사 및 과외교사는 3.8%인 3명이, 식당, 주방청소 및 서빙, 배달과 운전은 각각 2.6%인 2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기타 직업으로는 서비스직 종사자, 공무원, 보험설계사와 같은 영업사원, 전문직 종사자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27명의 유통업소 종사자들은 거의 MTF들인데, MTF의 직업은 유통업소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통업소 종사자를 제외하면 MTF들의 직

업은 사무직, 가게운영 및 운전, 식당청소 및 배달 등의 일이었다. 반면 FTM의 직업은 공장노동자, 서빙과 배달, 운전, 학원 강사, 학생 등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표 51>에서 잘 나타난다.

<표 51> 성별정체성에 따른 직업분포

단위:명(%)

	사무 직	가게 운영/ 개인 택시	공장 노동자	식당 청소/ 서빙/ 배달	유흥 업소 종사자	운전	학원강 사/과 외교사	전업 주부	학생	무직	기타	계
MTF	2(5.0)	2(5.0)	1(2.5)	2(5.0)	26(65.0)	-	1(2.5)	1(2.5)	-	4(10.0)	1(2.5)	40(100.0)
FTM	3(7.9)	3(7.9)	5(13.2)	-	1(2.6)	2(5.3)	2(5.3)	-	5(13.2)	6(15.8)	11(28.9)	38(100.0)
계	5(6.4)	5(6.4)	6(7.7)	2(2.6)	27(34.6)	2(2.6)	3(3.8)	1(1.3)	5(6.4)	10(12.8)	12(15.4)	78(100.0)

<표 52> 직업별 월평균수입

직업	월평균수입
사무직	136만원
가게운영/개인택시	162만원
공장노동자	135만원
식당청소/서빙/배달	110만원
유흥업소 종사자	291만원
운전	140만원
학원강사/과외교사	90만원
전업주부	-
학생	-
무직	-
기타	190만원

직업에 따른 월 평균수입을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는 월평균 수입이 136만원, 가게운영 및 개인택시 운영자는 평균 162만원, 공장노동자의 경우 평균 135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식당청소, 서빙, 배달 종사자의 월평균 수입은 평균 110만원, 유흥

업소 종사자의 월 평균수입은 291만원, 운전자는 140만원, 학원강사 및 과외교사는 90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밖에 기타직업 종사자들은 월평균 19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

직업에 따른 월평균 수입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였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수입이 더 나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MTF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MTF이나 FTM에 비해 더 빨리 성전환 수술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된다.

(7) 사회적 관계망

① 가족과의 관계

<표 53> 가족들의 성별정체성 파악 여부와 지지 여부

가족들이 현재 내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다	빈도	비율(%)	현재 나의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준다	빈도	비율(%)
모두 알고 있다	45	57.7	전적으로 지지해준다	20	28.2
일부만 알고 있다	24	30.8	지지해주는 편이다	27	38.0
전혀 모르고 있다	9	11.5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19	26.8
계	78	100.0	철저히 반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5	7.0
			계	71	100.0

조사대상자들의 가족들이 조사대상의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조사대상자의 성별정체성을 지지하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정체성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의 57.7%인 45사례로 절반이상의 응답자 가족들이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 중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30.8%인 24사례였다. 반면 전혀 모르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는 11.5%인 9사례였다. 이런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가족들이 조사대상자의 성별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성전환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능한 한 가족들에게 밝혔음을 보여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대상자의 성별정체성을 지

지해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설문대상자들의 성별정체성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족들은 전체 응답자의 28.2%, 20명이었고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편인 가족들은 전체의 38.0%인 27명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지지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8%인 19명이었고 철저히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가족들은 전체 응답자의 7.0%인 5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들의 경우, 대체로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을 대체로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많았다. 전체의 66.2%인 47명의 가족들이 지지해주고 있었고 33.8%인 24명이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가족들 중 성별정체성으로 고민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대체로 이에 대한 지지를 보내지만 극심한 반대와 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있었다.

② 친구들과의 관계

<표 54> 성별정체성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의 여부

현재 나의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빈도	비율(%)
전혀 모르고 있다	9	11.5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알고 있다	24	30.8
어느 정도 친구들이 알고 있다	12	15.4
상당수 알고 있다	15	19.2
모두 알고 있다	18	23.1
계	78	100.0

조사대상자의 성별정체성을 친구들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알고 있는 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30.8%인 24명이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친구들만이 알고 있는 경우는 15.4%인 12명, 친구들 상당수가 알고 있는 경우는 19.2%인 15명, 모두가 알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23.1%인 18명이었다.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전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모르는 경우는 전체의 11.5%인 9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친구들에게 조차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해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다.

③ 정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정보처

<표 55>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는 곳(복수응답)

정보나 도움을 요청하는 곳	빈도	비율(%)
전문의료기관	7	9.0
전문상담기관	4	5.1
주변의 가까운 비트랜스젠더 친구	10	12.8
아는 트랜스젠더 친구	39	50.0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31	39.7
트랜스젠더와 관계된 책이나 논문 등의 자료	18	23.1
기타	6	7.7
정보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데가 없다	5	6.4
전체 대상자	78명	

조사대상자들이 성별정체성에 관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이나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장 많이 정보를 구하는 대상으로는 아는 성전환자 친구들이었다. 응답자의 50.0%가 성전환자 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구했고, 39.7%가 성전환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구했고, 23.1%가 관련 책이나 논문 등의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구했고 12.8%가 주변의 가까운 비성전환자 친구들을 통해서 구했다. 많은 수의 대상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전환자 당사자나 성전환자 당사자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동호회 활동

<표 56> 인터넷 동호회 활동 여부

동호회 활동여부	빈도	비율(%)	오프라인상의 만남 여부	빈도	비율(%)
동호회활동을 하고 있다	45	57.7	오프라인 만남은 전혀 하지 않는다	9	20.0
하고 있지 않다	33	42.3	한 두차례 만나보았다	20	44.4
계	78	100.0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편이다	16	35.6
			계	45	100.0

조사대상자들이 성전환자들의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57.7%인 45명이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42.3%인 33명은 그렇지 않았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해서 온라인상의 만남 외에 오프라인상의 만남도 갖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응답자는 35.6%인 16명이었고, 한두 차례 만나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4.4%인 20명이었고 반면 전혀 만남을 갖지 않고 있는 응답자는 20.0%인 9명이었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자들은 한두 차례 이상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정보도 교환하고 친분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⑤ 기타 사회적 관계들

<표 57>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단위: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가 매우 나쁘다	관계가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계가 좋은 편이다	관계가 매우 좋다	해당사항 없음	응답평균
부모님	3(3.9)	6(7.8)	25(32.5)	12(15.6)	23(29.9)	8(10.4)	3.67/69
형제자매	3(3.1)	3(3.1)	18(24.3)	17(23.0)	26(35.1)	7(9.5)	3.90/67
학창시절 친구	3(3.9)		16(21.1)	23(30.3)	23(30.3)	11(14.5)	3.97/65
직장 고용주·동료	-	1(1.4)	19(25.7)	22(29.7)	19(25.7)	13(17.6)	3.97/61
이웃	-	2(2.6)	25(32.9)	17(22.4)	15(19.7)	17(22.4)	3.76/59
트랜스젠더 친구	-	1(1.3)	13(17.1)	28(36.8)	28(36.8)	6(7.9)	4.19/70

조사대상자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알아보고자 하는 주변 관계는 대략 부모, 형제·자매, 학창시설 친구, 직장 고용주·동료, 이웃, 성전환자 친구들과의 관계였다.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45.5%인 35명이 관계가 좋다고 답했고 11.7%인 9명이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많은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는 대체로 좋다고 답하였다. 이를 응답평균으로 보았을 때도 응답평균 3.67로 관계가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형제자매 관계 역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8.1%인 43명이 형제자매와 관계가 좋다고 답했지만 6.2%인 6명은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평균도 3.90으로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창 시설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다. 전체의 60.6%인 46명은 관계가 좋다고 했으나 3.9%인 불과 3명은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평균도 3.97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직장의 고용주·동료들과는 전체응답자의 55.4%인 41명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4%인 1명만이 고용주·동료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응답평균도 학창시설 친구와 마찬가지로 3.97로 고용주·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웃과의 관계는 전체의 42.1%인 32명이 관계가 좋았고 1.4%인 2명은 관계가 좋지 않

았다. 응답평균도 3.76으로 관계가 대체로 좋았다. 같은 성전환자 친구들과의 관계도 73.6%인 56명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1명은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응답 평균도 4.19로 높아 성전환자 친구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전체 응답평균의 비교를 통하여 부모, 형제자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의 고용주 · 동료, 이웃, 성전환자 친구들 간의 관계 중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들 중 성전환자 친구들과의 관계가 응답평균 4.19로 가장 높아 다른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좋았고, 다음으로 학창시절 친구들과 직장의 고용주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응답평균 3.97로 좋았다. 그리고 형제자매와의 관계(응답평균 3.90), 이웃과의 관계(응답평균 3.76), 부모와의 관계(응답평균 3.67) 순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성전환자들간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보다는 현재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직장 고용주나 동료,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8) 가족구성

① 만남

<표 58> 애인 및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

파트너를 만나게 된 경로	빈도	비율(%)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의 소개	4	21.1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3	15.8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5	26.3
인터넷 커뮤니티나 동호회활동을 통해서	2	10.5
클럽이나 식당,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된 사람	2	10.5
기타	3	15.8
계	19	100.0

조사대상자 중 현재 기혼자이거나 애인과 동거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해 현재의

애인 및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대상자 19명 중 5명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현재의 애인, 배우자로 만났고, 4명은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만났다'고 답하였다. 3명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만났다'고 답하였다. 이 외에 '인터넷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2명, '클럽이나 식당, 술자리 등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2명이었다.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들은 파트너와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대면관계로 충분히 형성한 후에 애인이나 배우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으로 알고 지낸 관계이거나 현재의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 속에서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우가 주변 사람들의 소개나 즉석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경우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② 애인/배우자에게 나의 성별정체성을 알리기(커밍아웃)

<표 59> 파트너 및 파트너 가족에게 성별정체성을 밝혔는지의 여부

파트너에 대한 커밍아웃 여부	빈도	비율(%)
애인/배우자에게만 밝혔다	8	42.1
애인/배우자와 나의 가족에게만 밝혔다	8	42.1
전혀 밝히지 않았다	3	15.8
계	19	100.0

현재 기혼자이거나, 애인과 동거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들에 한해 결혼을 할 때 혹은 동거를 시작할 때 자신의 성별주체성을 상대자 혹은 상대자 가족에게 밝혔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대상자 중 8명은 '애인/배우자에게만 밝혔다'고 답하였고, 또 8명은 '애인/배우자와 자신의 가족에게만 밝혔다'고 답하였다. 반면 '애인/배우자와 자신의 가족, 상대방 가족에게 모두 밝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혀 없었고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명이었다.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은 때로는 자신의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조차 밝히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관계유지에 있어서 극단적인 외로움이나 불안함을 가질 수 있는데 설문응답에서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밝히지 못한 응답자 역시 3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애인이나 배우자는 알고 있었고 일부는 자신의 가족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

③ 성적지향

<표 60> 성적지향

성적지향	빈도	비율(%)
나는 이성애자이다	60	77.9
나는 동성애자이다	4	5.2
나는 이성애와 동성애를 상관하지 않는다	10	13.0
잘 모르겠다	3	3.9
계	77	100.0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신이 동성애자, 이성애자와 같은 분명한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설문 대상자 중 77.9%인 60명은 ‘자신은 이성애자’라고 답하였으며 5.2%인 4명은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답하였다. ‘이성애와 동성애를 상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13.0%, 10명이 있었으며, 3.9%,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④ 결혼계획

<표 61> 이후의 결혼 계획

이후 결혼계획	빈도	비율(%)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	7	9.7
결혼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동거까지만 생각한다	12	16.7
꼭 결혼하고 싶다	45	62.5
모르겠다	8	11.1
계	72	100.0

조사대상자들 중 미혼자에 한해 앞으로 호적정정을 한 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대상자 중 62.5%인 45명의 응답자는 ‘꼭 결혼하고 싶다’고 답하였나, 16.7%인 12명은 ‘결혼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동거까지만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1.1%인 8명이 있었고,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9.7%인 7명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결혼계획에 대해 ‘꼭 결혼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 ‘하고 싶지만 동거까지만 하겠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상당수였다.

<표 62>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오픈항목)

결혼계획을 가지지 않는 이유
자신감이 없어서
여자로 생활하기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모두를 속이면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잘못되진 않기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구속받는게 싫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혼자가 편해서
결혼생활에 부족하다
결혼의 필요성과 명분을 잘 모르겠고 생식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인으로 살면서 숨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자유로움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 확신이 없다
구속받는 게 싫고 결혼에 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트랜스이기에 사랑만 하고 살고 싶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호적정정의 의지가 분명하고 따라서 결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인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태도도 나타난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결혼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많은 사람을 속이고 싶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생식능력 결여라는 사실이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9) 어린시절의 경험

① 어린시절의 경험

<표 63> 어린시절의 경험

단위:명(%)

어린시절의 경험	그렇다	아니다	총사례수
1. 어린시절 가족관계가 좋은 편이었다	56(71.8)	22(28.2)	78(100.0)
2. 나의 행동이나 취향으로 친구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51(65.4)	27(34.6)	78(100.0)
3. 나의 행동이나 취향으로 친구에게 따돌림 받은 적이 있다	29(37.7)	48(62.3)	77(100.0)
4. 나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구타당한 적이 있다	13(17.3)	62(82.7)	75(100.0)
5. 초·중·고등학교 다닐때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39(50.0)	39(50.0)	78(100.0)
6. 나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선생님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 있다	23(29.9)	54(70.1)	77(100.0)
7. 나의 행동이나 취향으로 인해 학교에서 많이 싸웠다	13(17.1)	63(82.9)	76(100.0)
8. 학교다닐 때 나의 성별정체성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다	47(64.4)	26(35.6)	73(100.0)
9. 초·중·고등학교 다닐때 나는 모범생인 편이었다	42(55.3)	34(44.7)	76(100.0)
10. 나의 성별정체성 때문에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21(27.6)	55(72.4)	76(100.0)

조사대상자들의 어린시절의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어린시절 가족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1.8%인 56명이 가족들과의 사이가 좋았다고 답했다. 반면 나의 행동이나 취향으로 인해 친구

들에게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5.4%인 51명, 따돌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7.7%인 29명,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7.3%인 13명이었다.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응답자는 29.9%인 23명이었다.

그러나 나의 성별정체성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던 경우가 많아서 64.4%인 47명이 학교다닐 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학교에서 나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자주 싸움을 했던 응답자는 17.1%인 13명에 불과했다. 대체로 학교를 다닐 때 모범생이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55.3%인 42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출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0%인 39명, 나의 성별정체성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응답자는 전체의 27.6%인 21명이었다.

상당수의 조사대상자들은 어린시절 가족관계가 좋았고, 학교에서는 큰 싸움없이 조용히 모범생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다른 행동, 취향으로 인해 대부분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구타당하거나 선생님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이런 차별경험이 반복되거나 심해지면, 자연히 가출을 결심하거나 결국에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였다.

② 가출

<표 64> 가출을 시도했던 이유(복수응답)

가출이유	빈도	비율(%)
가족들과 불화때문에	12	15.4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8	10.3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10	12.8
가족과 독립해서 돈을 벌기위해	6	7.7
기타	10	12.8
전체 대상자	39명	

가출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가출시도의 이유를 질문하였다. 상당수의 대상자들이 학교에서 조용히 가출을 결심했던 이유는 ‘가족들과의 불화 때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와 같은 성별정체성 문제와 별개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와 같이 나의 정체성으로 인한 가출문제도 있었다. 특히 기타의견에서는 명확하게 자신들이 가출을 했던 이유 중 상당수가 자신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기타의견으로는 ‘철이 없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와 같은 의견도 있었지만 ‘나랑 같은 사람을 찾으려’, ‘나의 정체성 문제로 인해 죽고 싶어서’, ‘동네 눈초리 때문에’라는 이유가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출을 결심하게 된 의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성별분리가 시작되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의 혼란과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표 65> 가출시도에 대한 기타의견

가출시도에 대한 기타의견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이를 비관해서
철이 없어서
나랑 같은 사람을 찾으려
동네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집안사정이 어려워서
정체성의 혼란으로 죽고 싶어서

③ 학업포기

<표 66> 학업포기의 이유

학업포기의 이유	빈도	비율(%)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때문에	3	14.3
공부가 하기 싫어서/적성에 맞지 않아서	2	9.5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나를 차별해서	5	23.8
교복이 입기 싫어서	3	14.3
돈을 벌기 위해	4	19.0
기타	4	19.0
계	21	100.0

조사대상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로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 나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이유가 가장 많았다.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나를 차별해서’,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때문에’, ‘교복을 입기 싫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와 같은 이유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였는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했던 이유는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다른 옷 차림(교복)을 강요받는다는 사실에 매우 힘겨워했다. 그러므로 성별분리의 전형적인 공간인 학교는 조사대상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학교 내의 차별까지 더해지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더욱 명확해진다.

(10) 차별경험

① 군대 내에서의 경험

<표 67> 군복무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여부

군복무 여부	빈도	비율(%)	신체검사 여부	빈도	비율(%)
예	10	25.6	예	35	89.7
아니오	29	74.4	아니오	4	10.3
계	39	100.0	계	39	100.0

MTF의 경우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게 된다. MTF들이 신체검사를 받게 될 때 이미 호르몬이나 수술 등 의학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성 주체성 장애’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시하면 신체검사를 통해서 군 면제를 통보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체검사 후 군복무를 위한 입대 통지서를 받고 입대한다. 대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신체검사나 입대 통지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10대나 20대 초반에 일찍 깨닫게 된 MTF들의 경우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의학적 조치를 시행하거나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르게 이미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군복무는 면제받는 비율이 많지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늦게 깨닫거나 아웃팅으로 인해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MTF들의 상당수는 군복무를 마치기도 한다.

조사 대상이었던 MTF들 중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던 대상자는 총 응답자 39명 가운데 89.7%인 35명이었고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⁴³⁾고 답한 대상자는 전체의 10.3%인 4명, 그리고 군복무를 마친 대상자는 전체의 25.6%인 10명이었다. 상당수의 MTF들은 의학적 진단과 의학적 조치에 의해 이미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

43) 일반적으로 군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는 모든 MTF들이 받는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명이었다. 이런 설문응답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설문응답을 한 이유로는 첫째 질문문항을 잘못 이해하여 답변한 경우이거나 둘째, 자신이 신체검사 현장에서 군면제 조치나 귀가조치를 받게 된 경우, 이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은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설문응답은 실제 오류일 가능성성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문에 군 면제를 통보받은 비율이 많았다.

<표 68> 군 입대와 군복무 과정에서의 차별 경험

단위:명(%)

군대내 차별경험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은 편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해당 사항 없음	**응답 평균
1. 신체검사과정에서 신체검사관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 있다.	2(6.1)	6(18.2)	8(24.2)	1(3.0)	13(39.4)	3(9.1)	3.57
2. 입대 후 군부대에서 고참이나 상관에게 인격적 모멸감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 있다	1(2.7)	-	1(2.7)	1(2.7)	3(8.1)	31(83.8)	3.83
3. 입대 후 군부대 동료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 있다	1(2.7)	-	1(2.7)	1(2.7)	3(8.1)	31(83.8)	3.83

**응답평균은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그런 편이었다를 2점, 그저그랬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었다 4점, 전혀 그렇지 않았다 5점을 각각부여하여 전체응답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MTF들이 군입대와 군복무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경험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질문문항은 신체검사과정에서의 차별여부와 입대 후 군대내 상관이나 동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별여부로 구분하였다.

신체검사과정에 차별대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MTF 성전환자들은 총 응답자 33명 가운데에서 8명이었고 차별대우를 경험하지 않았던 MTF 성전환자들은 14명이었다. ‘차별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

또한 입대 후 군대내 고참이나 상관으로부터의 차별여부 항목에서도 역시 ‘차별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총 응답자 6명 중 1명이었고 4명은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다. 군부대 동료로부터의 차별여부 역시 ‘차별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보다 ‘그렇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수가 더 많았다. 동료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는 5명 가운데 1명뿐이었다. 대체로 군 입대와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나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군입대 과정이나 군복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② 차별경험

<표 69> 차별 경험

단위:명(%)

차별경험	그렇다	아니다	총사례
1.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35(44.9)	43(55.1)	78(100.0)
2.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16(20.5)	62(79.5)	78(100.0)
3.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수군거리기도 한다	48(61.5)	30(38.5)	78(100.0)
4.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욕설이나 비아냥거림을 들은 적이 있다.	51(65.4)	27(34.6)	78(100.0)
5.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8(10.3)	70(89.7)	78(100.0)
6. 자해경험이 있다	35(45.5)	42(54.5)	77(100.0)
7.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62(80.5)	15(19.5)	77(100.0)
8.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39(50.0)	39(50.0)	78(100.0)
9. 나는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60(76.9)	18(23.1)	78(100.0)
10. 현재 나는 정신과나 특정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7(9.0)	71(91.0)	78(100.0)

조사대상자들이 차별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를 위한 10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35명인 44.9%였고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응답자의 16명인 20.5%였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경험은 전체 중 48명인 61.5%가 하였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욕설이나 비아냥거림은 51명인 65.4%가 경험하였다. 또한

주위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경우는 10.3%인 8명이었다.

많은 수의 조사대상자들은 길거리를 다닐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비아냥,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었고 적지 않은 수의 대상자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들은 이러한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45.5%인 35명이 자해경험이 있었고 자살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0.5%인 62명이었으며 자살시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0.0%인 39명이었다. 그리고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경험한 응답자 역시 76.9%인 6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정신과나 특정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응답자는 9.0%인 7명이었다. 이렇게 극단적인 우울증이나 조울증, 자살충동과 자해경험, 자살시도의 행동들은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외부적인 차별로 인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증후들로서 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자살충동과 조울증,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었고 절반이 상의 대상자들이 자해경험과 자살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정체성에 의한 자기혼란과 사회적 차별의 심각성이 개인에게 발현되는 형태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11)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

<표 70>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알게 된 시기

연령	빈도	비율(%)
13세 이하	8	11.4
14-19세 이하	24	34.3
20대	30	42.9
30대 이상	8	11.4
계	70	100.0

많은 성전환자들에게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계기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자신의 일생에서 어느 시기에 처음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는가는 결국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첫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은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를 성전환자 연예인의 등장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10대와 20대인 경우에 성전환자 연예인의 등장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전환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조사대상자들에게 언제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전체 대상자의 42.9%인 30명이 20대에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14~19세까지의 시기, 즉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34.3%인 24명이었다. 이 외에 13세 이전이나 30대 이후에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1.4%, 8명씩이었다. 상당수의 조사대상자들은 중·고등학교 시기나 20대에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다.

(12) 생활만족도

① 생활만족도

<표 71> 일과 생활수준 만족도

단위:명(%)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평균
1. 현재의 직장(일)에 대해서 만족한다	6(9.1)	16(24.2)	16(24.2)	14(21.2)	14(21.2)	3.21/66
2. 현재의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	23(30.3)	20(26.3)	15(19.7)	10(13.2)	8(10.5)	2.47/76
3. 우리 집(주거형태)에 대해 만족스럽 게 생각한다	14(18.4)	20(26.3)	13(17.1)	18(23.7)	11(14.5)	2.89/76
4. 현재 사는 동네 환경에 만족한다	11(14.5)	16(21.1)	21(27.6)	19(25.0)	9(11.8)	2.99/76

조사대상자들의 현재의 일과 생활수준, 주거지와 주거지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알

아보았다. 먼저 자신의 일(직장)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42.4%,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33.3%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평균을 보았을 때 응답평균은 3.21로 ‘약간 만족한다’는 의견이 평균적이었다.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23.7%,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56.6% 이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이는 응답평균⁴⁴⁾에서도 나타난다. 응답평균은 2.47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38.2%,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44.7%였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더 많았고 응답평균 역시 2.89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은 36.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은 35.6%이었다. 거주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응답평균으로 보았을 때는 응답평균 2.99로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생활과 주거지 만족도에서 가장 만족하는 영역은 일에 대한 것이었으나 일을 통한 수입이나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였고, 주거지 역시 만족하지 못하였다. 반면 주거지 환경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다.

② 생애주기별 행복도

<표 72> 생애별 행복도

단위:명(%)

생애별 행복도	매우 불행했다	약간 불행했다	그저 그랬다	약간 행복했다	매우 행복했다	응답평균
유년기(0-13세)	11(15.7)	15(21.4)	19(27.1)	9(12.9)	15(22.9)	3.06/70
청소년기(14-19세)	28(37.8)	14(18.9)	17(23.0)	6(8.1)	9(12.2)	2.38/74
청년기 (20-29세)	18(23.7)	10(13.2)	19(25.0)	19(25.0)	10(13.2)	2.91/76
장년기 (30-50)	2(4.8)	5(11.9)	11(26.2)	13(31.0)	11(26.2)	3.62/42
중년기 (50세 이상)	-	-	-	1(25.0)	3(75.0)	4.75/4

44) 응답평균은 ‘전혀그렇지 않다’에 1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 2점, ‘그저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각각 부여하여 전체 응답의 평균을 낸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조사대상자들에게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행복도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이 질문항목은 실제 성전환자들이 일생의 어느 시기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었다.

일생의 시기 구분은 초등학교 이전 시기,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 20대, 30대와 40대, 50대 이상으로 나누었다. 초등학교 이전 시기는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35.8%였고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7.1%였다.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응답평균⁴⁵⁾을 파악했을 때는 초등학교 이전 시기에 대한 행복지수는 3.06으로 중간수준을 약간 상회하였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는 ‘행복했다’는 응답보다 ‘불행했다’는 대답이 월등히 많았다. 중·고등학교 재학 시기 자신이 ‘행복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3%에 불과했지만 ‘불행했다’고 답한 비율은 56.7%였다. 이러한 지점은 응답평균에서도 나타난다. 응답평균 역시 2.38로 자신이 불행했다고 느끼는 정도가 컸다.

조사대상자들의 20대는 자신이 ‘행복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8.2%였고 ‘불행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36.9%였다. 20대에는 자신이 ‘행복했다’고 답한 비율이 많았다. 그러나 응답평균으로 확인하면, 응답평균은 2.91로 자신의 20대를 다소 불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30~40대에는 자신이 ‘행복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57.2%였고 ‘불행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6.7%였다. ‘불행했다’고 느끼는 비율보다 ‘행복했다’고 느끼는 비율이 훨씬 많았다. 응답평균 역시 3.62로 30~40대에는 ‘약간 행복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50대 이후에는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행복했다’고

45) 응답평균은 ‘매우 불행했다’에 1점, ‘약간 불행했다’에 2점, ‘그저 그랬다’에 3점, ‘약간 행복했다’에 4점, ‘매우 행복했다’에 5점을 각각 부여하여 응답자의 응답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응답평균에 대한 해석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과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의 평균인 3점을 기준으로 하여 행복지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3점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행복했던 것으로 3점 이하이면 상대적으로 불행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느끼고 있었다. 응답평균 역시 4.75로 50대 이후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행복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체적인 일대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였고 다음이 20대의 사회진출의 시기였다. 반면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시기는 50대 이후였고 다음이 30~40대였다. 실제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성별정체성이 확립되는 중·고등학교 시기는 혼란의 상황과 성별로 구분되는 학교 제도 속에서 가장 갈등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진출의 경험을 하게 되는 20대에는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생활하기 힘든 사회의 벽이 놓여 있어 또한번의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되는 시기이다. 반면 30~40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상황에서 기반을 잡게 되어 이전 시기의 어려움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응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③ 현재의 심리상태

<표 73> 조사대상자들의 현재의 심리상태 단위:명(%)

항 목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응답 평균
1.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3(3.8)	11(14.1)	18(23.1)	22(28.2)	24(30.8)	3.68/78
2. 열심히 일하면 나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다	2(2.6)	4(5.2)	6(7.8)	31(40.3)	34(44.2)	4.18/77
3.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11(14.3)	12(15.6)	16(20.8)	22(28.6)	16(20.8)	3.26/77
4.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8(10.4)	9(11.7)	9(11.7)	26(33.8)	25(32.5)	3.66/77
5. 나는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다	5(6.5)	8(10.4)	16(20.8)	15(19.5)	33(42.9)	3.82/77
6.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다 (혼자인 것 같다)	22(28.6)	10(13.0)	12(15.6)	16(20.8)	17(22.1)	2.95/77
7.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27(35.1)	13(16.9)	14(18.2)	14(18.2)	9(11.7)	2.55/77

조사대상자들의 현재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질문은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뛰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59.0%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17.9%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자신이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열심히 일하면 나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84.5%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7.8%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많은 수의 조사 대상자들이 노력하면 자신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력감을 자주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49.4%가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고 답해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29.9%의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응답자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찬가지로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66.3%가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22.1%의 비율보다 훨씬 많은 대상자들이 자신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와의 만남이 즐거운가’에 대해서는 62.4%가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다’고 한 반면 16.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친구들과의 관계를 즐겁게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2.9%가 ‘소외된 것 같다’고 답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41.6%의 응답보다 약간 자신이 소외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가’에 대해서는 29.9%가 ‘무시하는 것 같다’고 답했고 52.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13) 성전환자로서의 삶

① 성전환자의 삶에서의 어려움

<표 74> 성전환자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복수응답)

성전환자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빈도	비율(%)
취직이나 진학의 어려움	41	52.6
교제와 결혼의 어려움	33	42.3
생계의 어려움	29	37.2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20	25.6
대인공포,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17	21.8
도덕과 종교로 인한 갈등	8	10.3
이웃, 학교,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	5	6.4
성희롱, 성폭행	4	5.1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3	3.8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3	3.8
혐오범죄를 당할 위험	1	1.3
전체 대상자	78명	

조사대상자들에게 성전환자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대상자들 중 취직이나 진학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은 52.6%, 41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취직과 진학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제와 결혼의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는 42.3%인 33명이었다.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가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는 25.6%인 20명이었고 대인공포 및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한 응답자는 21.8%인 17명이었다. 도덕과 종교로 인한 갈등은 응답자의 10.3%인 8명이, 이웃, 학교 및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는 6.4%인 5명이 성전환자로서의 삶의 어려움으로 들었다. 성희롱 및 성폭행의 문제는 5.1%인 4명이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성전환자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는 취직의 문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힘든 문제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로 인한 어려움 또한 성전환자가 겪을 수 있는 큰 어려움 중 한가지였다. 이외에 성희롱이나 이웃, 학교 등에서의 차별과 따돌림도 성전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성전환자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따돌림으로 인해 대인공포, 소외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

② 신분증 제시의 상황

<표 75> 신분증 제시의 경험여부와 신분증 제시의 상황

신분증 제시의 경험여부	빈도	비율(%)
예	74	94.9
아니오	4	5.1
계	78	100.0
신분증 제시의 예(복수응답)		
취업	51	65.4
금융서비스 이용	52	66.7
공공기관 출입	37	47.4
선거투표	29	37.2
진학	14	17.9
해외여행시의 출입국 심사	31	39.7
불심검문과 같은 불필요한 신분증제시의 상황	55	70.5
청소년여부의 판단을 위한 신분증 제시	26	33.3
기타	5	6.4
전체 대상자	78명	

조사대상자들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신분증 제시의 상황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설문응답자 78명 중 94.9%인 74명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단지 5.1%인 4명만이 곤란을 겪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신분노출과 신분증은 성전환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분증 제시의 곤란한 상황은 대체로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밝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곤란을 겪은 상황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대개 취업과 진학, 금융기관, 공공기관 출입, 선거, 출입국심사 등의 상황이었다. 이 중

전체 설문대상자 78명 중 70.5%인 55명은 불신검문과 같은 불필요한 신분증제시의 상황의 곤란하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리고 66.7%인 52명은 은행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들었고 취업과정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65.4%인 51명이나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 출입의 상황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자는 47.4%인 37명이였으며 해외여행시의 출입국 심사는 39.7%인 31명이, 선거투표시의 상황은 37.2%인 29명이 곤란하다고 답하였다. 이 외의 상황으로는 청소년여부의 판단을 위한 신분증 제시가 33.3%인 26명이, 그리고 진학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7.9%, 14명이 답하였다.

대체로 신분증 제시로 곤란한 상황은 불신검문의 상황, 금융서비스 이용, 취업, 공공기관 출입, 출입국 심사, 선거투표, 청소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진학의 순서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신분증 제시의 상황 자체만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놓여 있으며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③ 차별에 대한 대처방법

<표 76>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했을 때의 대처 방법

차별에 대한 대응	빈도	비율(%)
참는다	29	37.7
곧바로 항의한다	7	9.1
무시한다	28	36.4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을 표현한다	4	5.2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1	1.3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	1	1.3
차별받은 적 없다	7	9.1
계	77	100.0

조사대상자들이 성별주체성으로 인하여 여러 차별을 경험했을 때 대상자들은 어떤 대처 방법을 취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대상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참는다’는 응답자는 37.7%,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시한다’는 응답자도 36.4%인 28명

으로 역시 많았다. ‘곧바로 항의한다’는 응답자는 9.1%인 7명,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을 표현한다’는 응답자는 5.2%인 4명이었다. 단지 9.1%인 7명이 차별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외의 답변으로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가 1명,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한다’가 1명이었다.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별주체성으로 인하여 여러 종류의 차별을 경험했을 때 참거나 무시하는 식으로 대처하였다. 반면 곧바로 항의를 하거나 고발, 주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직접적인 대처 방법을 취할 경우 2차적인 차별과 피해를 당할 수 있거나 혹은 원치 않는 커밍아웃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차별에 대한 고소, 고발의 경험

<표 77> 경찰 혹은 상담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가의 여부

사회적 차별에 대한고소/고발 경험	빈도	비율(%)
예	7	9.0
아니오	47	60.3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4	34.1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까봐서	10	24.4
나의 성별정체성이 알려지게 될까 두려워서	14	34.1
기타	3	7.3
소계	41	100.0
차별을 경험한 적 없다	24	30.8
계	78	100.0

조사대상자들에게 성별주체성으로 인한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후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고소나 고발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전체 응답자 78명 중 69.3%인 54명은 ‘성별주체성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30.8%인 24명은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불과 9.0%인 7명만이 고소나 고발을 하

였다. 60.3%인 47명은 사회적 차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차별에도 불구하고 고소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나의 성별정체성이 알려 질까봐’, ‘인격적 모독을 당할까봐’와 같은 두려움과 불신 때문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4.1%인 14명이었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알려지게 될까 두려워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34.1%인 14명이었다.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까봐서’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4.4%인 10명이 있었다. 결과로 볼 때 성전환자들은 자신들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주위에 알려질 수 있고 모욕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경찰이나 상담기관에 고소나 고발하지 않았다. 이는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이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현재의 삶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생애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누적된 차별의 경험과 사회적 낙인을 내재화한다. 이렇게 일상화된 차별의 경험은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전환자에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략에 있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전환자들은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과 타인들에게 인식되는 성 사이에서의 갈등과 생물학적 성과 자신의 성별정체성 사이에서의 충돌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당한다. 때때로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삶을 견고한 젠더 규범의 힘의 무게에 눌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고통의 연속으로 이해하게 된다. 말하자면 끊임없는 긴장감, 혼란, 불안정성 등으로 뒤엉킨 삶은 성전환자들을 사회와 분리시키고, 이러한 분리 속에서 성전환자들은 자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실천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구조적,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 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전환자의 삶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미묘한 지점들을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1) 빈곤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상에 나타난 성전환자들의 직업 가운데, FTM의 경우에는 택배, 운송, 공장 노동자, 서비스업 등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자영업과 전문직이 있거나 취업준비 상태에 있다. 그리고 MTF의 경우에는 사무보조, 학원 강사 및 과외교사, 강사, 학생 등이 있었고 적지 않은 비율(설문대상의 65.0%)의 MTF가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FTM과 MTF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별화된 직업군의 선택과 신분확인절차의 유무이다. 대개 성전환자들은 MTF의 경우 성산업이나 사무직, 자영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FTM들은 공장노동, 사무직, 자영업의 비율이 높았다. MTF의 성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점, FTM의 공장노동자 비율이 높은 점은 성별화된 직업군 분포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신분확인절차가 없는 직업을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청소나 배달, 서빙의 일을 많이 하고 있었다.

설령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장 내 불평등한 대우, 편견에 가득 찬 시선 등으로 인해서 잣은 이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정한 자원이 없는 성전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쉽게 처할 수 있다.

(1) 노동기회로부터의 좌절

대체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규직과 무직이었다. 성전환자들이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에 의지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듯 하다. 우선, 낮은 학력이다. 대체적으로 성전환자들은 강력한 젠더 규범이 작동하고 있는 제도교육의 장인 학교를 무사히, 게다가 좋은 성적으로 마친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생물학적인 성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 사이의 갈등, 긴장, 충돌만큼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과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 사이에서도 역시 좀처럼 화해하기 어려운 간극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곤란한 것은 이러한 ‘불안전한’ 상태에서 스스로도 자기 이해의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타인들도 이러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젠더 규범, 즉 여성적인 덕목과 남성적인 특징을 강제하는 학교 교육은 성전환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공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통념에 기반한 젠더 규범은 성전환자들에게 강력한 차별의 근거로 작동하기에, 성전환자들은 스스로도 소위 ‘학창시절’을 자기 전망을 갖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예비적 단계로서 활동하기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중, 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큼의 학력자원을 갖춘다는 것은 ‘사치스럽게’ 까지 느껴질 정도이다. 성전환자들은 내적 갈등과 학교 내 차별을 견디다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이후에 구직활동을 하게 될 때 정규직에 응시할 기회를 사전에 상실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사 학교를 형식적으로 졸업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정적인 노동현장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는데, 구직활동에서 반복적인 탈락과 좌절을 경험한다.

성전환자들의 구직활동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조차 어려운데, 왜냐하면 서류상의 성별과 외관상 인식되는 성별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성적 외양과 행동을 갖춘 FTM들

은 일반적으로 ‘여성답지 못한 여성’으로 인식되고 ‘여직원’, ‘여사원’을 뽑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여성의 외모를 갖추지 못한 여성’은 못마땅하고 불편한 존재이며, MTF 역시 외관상 파악되는 것은 ‘여성’적이거나 ‘적어도 남성적이지 않기에’ 거북한 존재로 여겨진다.

직업 선택이 성별화되는 이유는 이미 사회적 구조상 젠더 규범에 따른 성별화된 직업군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MTF의 경우, MTF 커뮤니티를 통해서, 커뮤니티의 성격과 성산업이 결합된 ‘트랜스바’에서 직업을 구하는 경향이 있고, FTM의 경우 남성으로서, 단순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무엇보다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성전환자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의 취업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된다.

(2) 노동현장에서의 배제

어렵사리 직장을 구하게 되더라도, 한 직장 내에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FTM의 경우, 생물학적 남성집단은 해부학적으로 성전환을 한 FTM을 ‘남성’으로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물학적 우위를 과시할 뿐만 아니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긴장관계 속에서 FTM과 생물학적 남성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러한 상황은 더욱 FTM에게 불리하다. 왜냐하면 고용주 역시 직장 내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그 갈등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직장 내 갈등은 간혹은 FTM에 대한 부당해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자신의 분리한 조건, 즉 ‘어렵게 얻은 직장’인 만큼 FTM은 이 부당한 상황을 ‘참아내기’라는 가장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참아내기’라는 선택은 FTM을 더욱 고립시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된다.

MTF의 경우, 여성적 외양과 행동, 취향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구직과정 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FTM의 남성적 외양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성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MTF들은 그 어떠한 여성적 행동과 취향도 용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3) 생계위험의 상황

성전환자들의 직업이 육체적인 단순 노동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늘 고용형태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성산업에 종사하는 MTF의 경우, 직장인 ‘트랜스바’는 성산업 업소인 만큼 가부장적이고 젠더화된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데, 이 때 ‘여성스러운’ 체격조건, 목소리, 외모 등에 따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FTM의 경우, 경제상황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그것은 곧 해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전환자들은 언제 다시 취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은 가중된다.

여기서 더욱 힘겨운 것은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혹은 관계망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대체적으로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신한 이후,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부분 외관상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외관상은 변화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 즉 친구, 가족, 친척, 동료 등과의 관계 역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성전환의 욕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은 성전환자의 변화과정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면서 관계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성별 전환에 따라 새롭게 관계가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성별을 젠더 규범에 기대어 자기 근거를 만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시도하지 못하는 듯 하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의 의학적 조치를 하는 동안, 기존의 관계와 단절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이다. 노동기회의 박탈 및 노동현장에서의 배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과의 단절이라는 ‘이중적’ 고립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좌절의 경험과 생활고는 차별받고 고통 받는 성전환자들의 자기 소외를 강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2)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이 다수로부터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기는 과정으로 인해 개인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Pierson은 사회적 배제를 개인, 가족, 집단 또는 근린들로부터 이들이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는 과정(2001 : 7)이라고 보았고, Turner는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 활동 및 그 참여 과정에서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1986 : 121). 결과적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이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권리,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부정되고 실현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Alvey, 2000).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는 단순히 개인 간, 집단간,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에 의한 개인의 편입이라는 쌍방향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일방향적 관계로 왜곡되는 것을 규정하는 용어이다.

성전환자의 문제에서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는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성전환자 문제의 사회적 배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족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좌절이고, 둘째는 제도, 특히 신분등록 및 제시에서 나타나는 사회로부터의 배제이고, 셋째는 젠더 규범에 기반하여 성전환자들을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의 배제라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배제는 모두 성전환자의 삶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낳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1) 가족으로부터의 배제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그리고 가족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심리적, 정서적, 문화적으로 젠더 규범이 강요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생물학적 여성은 ‘딸’ 그리고 언니, 누나, 여동생으로서, 생물학적 남성은 ‘아들’ 그리고 오빠, 형, 남동생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이러한 가족

관계 내 구성은 오랜 세월 성전환자들을 억압하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지속적이고 고통스럽게 기억된다. ‘딸’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요당했던 FTM, ‘아들’로서의 역할 수행을 강요당했던 MTF는 가족들과 끊임없는 갈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자신의 성별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스럽게 생물학적 성에 부합하는 성을 강요받았던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가족은 직접적이면서도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억압의 조건이었다. 가족으로부터의 성역할의 강요, 냉대, 차별, 소외로 인해서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은 더욱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적 관계는 성전환자들의 성확정을 위한 의료적 조치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촉발된다. 의료적 조치를 통해 몸을 변화시키는 만큼, 지금껏 인식해왔던 성과는 전혀 다른 외관을 지니게 되는데, 이 때 성전환자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수용될 뿐만 아니라 존중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성전환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족에게 숨기거나 혹은 고지는 하되 연락을 끊거나 아니면 아예 단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성전환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전환을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배제되는 과정에서, 가족과 성전환자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재구성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정부분 사회적 맥락의 변화, 즉 성전환자들의 법적 지위의 확보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이 수반되었을 때, 성전환자들과 가족 내 관계의 재구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로부터의 배제

한국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신분증 제시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불필요할 만큼 많으며, 어떤 집단에 가입할 때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많다. 신분증 제시와 개인정보의 요구는 매우 일상적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고 만 해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당한다. 주민등록번호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성별, 직업, 수입, 혼인여부, 취미 등 다양한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매우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된다. 대부

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의 부당함을 인식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전환자들에게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조차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예를 들어, 인터넷 가입 시, 주민등록상에 이미 성별이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성별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전환자들에게는 매우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등록상의 성은 생물학적인 것으로 일정부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여성 혹은 남성으로 자신의 성별을 표기할 때 주민등록상의 성별과 일치해야 가입이 되지만,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별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은행업무, 공공기관 방문, 수표 사용 시, 핸드폰 구입 시, 여권제시 등을 할 때마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은 자신들의 질문과 시선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매우 불쾌한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과 사회적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불편함을 선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 그러하다. 운전면허 제도는 일정한 단계별로 끊임없이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데, 그 단계마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비껴가기 위해서, 차라리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부당한 피해를 호소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다. 왜냐하면 법적 처리의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성별로 인해서 피해를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노출에 대한 부담감과 그에 대한 피해가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3) 사회적 시선의 폭력

생물학적 성에는 그에 부합하는 헤어스타일, 몸짓, 말투, 옷 입는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이미 정해져 있다. 성전환자들은 이러한 이미 정해져 있는 문화적, 상징적 코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성전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에서 읽힐 수 있는 생물학적 성의 특징들을 지워가는 사람들이다. 말하자면, 생물학적 남성들은 수염, 목젖, 근육 등의 육체적 표식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짧은 머리스타일, 남성 정장,

말투 등의 문화적인 상징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 표식과 그에 부합된 코드가 드러나지 않는 남성들은 무언가 ‘여성적인’ 혹은 ‘적어도 남성이지 않은’ 느낌을 자아낸다. 그런 만큼 강력한 젠더 규범에 복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환자들은 매우 기묘하고 낯선 분위기를 연출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묘하고 낯선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의식하고 있는 성전환자들에게는 ‘기묘하고 낯설음’, 그 지점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성전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긴장’ 속에 놓이게 된다. 그들의 일상적 경험은 젠더 규범으로 가득차있는 사회에서 언제나 ‘불일치함’, 기묘하고 낯선 대상임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불일치함은 언제든, 어디서든 산재해있으며, 그러한 공간에서 느끼는 긴장은 사소 하지만, 극도의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들은 길을 걸을 때,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성으로 보이는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으로 보이는지, 자신이 충분히 그저 평범한 여성 혹은 남성으로 보이는지 등에 관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길을 물을 때 자신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속옷을 사러 갔을 때, 점원이 보이는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지 등 말이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은 언제, 어디서든 성전환자들의 육체와 스타일을 ‘구경’하듯이 쳐다보며, 심지어는 폭력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시선은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자신이 어디에 속해야하는지, 어떤 성별을 선택해야하는지 곤란해 할 뿐만 아니라, 어디 곳을 선택하든 내쫓기거나 혹은 배제당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중구속에 의해서 성전환자들은 언제나 어려운 선택과 힘든 결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배제와 차별은 내재화되며, 일상적인 삶을 지속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다.

3)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긴장, 협상

(1) 육체와의 경합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경합을 벌인다. 외모성형, 다이어트, 헬스, 젊음의 유지(anti-aging) 등은 바로 이러한 육체와의 경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부장적 젠더 불평등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의 육체와 긴장하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인정하거나 혹은 충돌하면서 육체와의 경합을 벌이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육체와의 경합을 전 생애의 과정이라 할 정도이다. 왜곡된 미적 가치 속에서 여성들은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욕망과 끊임없이 경합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관계로부터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는 않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환자들 역시 육체와의 경합으로 그 삶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의 벌이는 육체와의 경합은 ‘선택적’이라면,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육체와의 경합은 ‘존재론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벌이는 육체와의 경합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만하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육체는 단순한 물리적, 해부학적, 필수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육체는 자신의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의 공간이다. 여성의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여성아 아니고, 남성의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남성이 아니다.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의 작용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와 규정은 결국 육체와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과의 상관성에 관한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육체와 스스로가 인식하는 자기 자신과의 상관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이성애적이고 가부장적인 젠더 규범의 힘의 무게에 눌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고통의 연속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체로 ‘여성의 몸에 간힌 남성’ 혹은 ‘남성의 몸에 간힌 여성’으로 자신을 규정하는가 하면, 때로는 ‘두 개 이상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상관성에 대한 자기-이해와 자기-확신의 과정은 개인의 삶의 지향, 조건, 세대, 지역, 계급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더욱이 한 개인의 삶의 전개 과정 속에서 조차 전혀 다르게 규정된다.

그러나 개인의 갈등과 혼란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대한 이해는 온전히 개인의 몫은 아니다. 한 개인의 경험, 그 경험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정체성 구성과정에는 이미 사회적인 통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의 육체와 벌이는 경합의 과정에는 견고한 젠더 이분법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견고한 젠더 이분법은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성전환자들에게 배제와 차별을 내재화시킨다. 말하자면 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삶의 주체로서 자존감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든다. ‘여자로 태어나서 “왜” 남자로 바꾸려고 하는지’ 혹은 ‘남자로 태어나서 “왜” 여자가 싶었는지’와 같은, ‘왜’라는 질문으로 가득 찬 적대적인 질문이나 혹은 편견에 가득 찬 시선은 성전환자들을 고립시킨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삶 자체가 이해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감’이나 자신이 사회적 관계들 속에 외톨이로 자신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소속될 수 없다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경우, 자신의 욕망이나 인식을 충분히 설명할 언어를 찾지 못할 수도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이러한 불신감과 외로움의 감정들로 인해서, 스스로 사회와의 단절을 시도하기도 한다. 자기 안으로 끝없이 침잠하면서, 고립적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 사회적 차별에 의한 결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2) 정상성에 대한 긴장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신하는 것과 동시에 성별을 확정하는 의학적 조치를 선택한다. 의학적 조치는 호르몬 투여, 가슴수술, 난소 및 정소 제거, 혹은 자궁적출수술 그리고 성기재건수술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학적 조치의 과정에 따라서 육체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육체만이 아니라 그 변화에 따라 성전환자들의 사회적 관계 역시 변화한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성의 육체에 근접할수록 육체와의 경합의 강렬함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스스로가 인식하

는 성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이 점차적으로 일치되면서, 충분히 사회적 통념상의 ‘여성’ 혹은 ‘남성’으로 인정된다. 그럼으로써 성전환자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비성전환자들은 성전환자들의 성을 해부학적 조치를 통해서 획득된, ‘허구적인’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생물학적 우월감을 과시한다. 생물학적 우월감은 성전환자들을 열등하고, 결핍된 존재로서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생득적 성과 해부학적 으로 획득된 성의 차이를 차별적 조건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성’이다. ‘정상적이다’라는 표현은 상당 부분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거나 ‘젠더 규범에 부합한다’라거나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생물학적 여성이 가부장적으로 불평등한 젠더 규범에 부합된 ‘여성스러움’을 지니는 것이 자연의 순리는 아니며, 또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성은 삶의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상성’은 매우 허구적인 것이며, 허구적인 것을 마치 ‘진리’인 듯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젠더 규범에 근거한 ‘정상성’을 기준으로 성전환자들을 위치 짓고 규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3) 자기전략으로서의 가장(masquerade)하기

성전환자들에게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다. 사회의 한 영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장벽들을 마주하면서 성전환자들이 느끼는 갈등은 무엇보다 크다.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나는 이후 나의 계획 속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식되는 것이 좋을까? 어떠한 식의 관계 맺기가 좋을까? 무수한 질문들 속에 성전환자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전략을 갖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지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사고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다. 성전환자들의 육체의 문제,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타인에서 비롯되지만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의해 스스로의 육체에 대한 반감과 혐오는 때에 따라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생물학적인 육체와 정체성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은 결국 타인과의 관계 맷기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성전환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간성(intersexual)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며, 동성애자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식의 전략은 모두 성전환자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관계 맷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전환자들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가장하기도 한다. 동성애자로 지칭되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자신과 타협하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자신을 동성애자로 소개하는 방식을 택한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을 때, 생물학적 성에 의해 규정된 지위 때문에 ‘2자’로 혹은 ‘1자’로 시작되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적절하게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저 여잔(남잔)데요”라는 말을 던지기도 한다. 자신을 완전히 속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성(intersexual)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성별변경을 할 것이고 지금은 호적상 성별이 잘못 기재된 상태라는 간성(intersexual)의 정황은 적당히 성전환자들의 경우에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타협지점을 만들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을 이해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은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그리고 애인을 소개받거나 만나려 할 때 등 어떤 장소와 시간에서도 스스로를 내보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전환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거절과 배제의 경험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만약 성전환자들이 사회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성전환자들의 가장 (masquerade)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성전환자들이 사회로부터의 소통용 관계 맷기에서 끊임없이 가장하려는 모습은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에서 나타나는 자기전략으로서의 태도이다.

5장.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모색

1.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1)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의 확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은 생애 전반에서 뿐 아니라 학교, 직장, 화장실, 공공기관 등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이 반복된다. 차별은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비아냥거림이나 욕설, 구타, 성폭력 외에도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분하여야만 하는 사회적 시선에서도 존재한다. 일상적인 시선의 폭력은 또 하나의 분명한 차별이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와 다르게 자신의 성을 인식하는 성전환자들은 성별화된 사회의 보이지 않는 성의 구분과 강제 속에서 지속적인 위협감과 뜻하지 않는 폭력에의 공포를 경험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항상 성전환자들을 법적, 제도적 성으로 호명해왔다. 이러한 방식 속에서 성전환자들의 정당한 자기 정체성을 부인되었고 성전환자들의 시민권은 철저히 묵인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성전환자에 대한 조롱과 욕설, 구타, 성폭력 등은 직접적인 차별⁴⁶⁾의 형태로 나타났고, 어느 공간에서나 육체에 기반한 성으로 구분하는 사회적 시선과 은밀한 배제는 간접적인 차별⁴⁷⁾의 방식이었다. 차별경험은 성전환자들의 생애 전 과정에 누적되어 있고 이로부터 차별의 결과는 자살과 자해의 시도, 사회적 관계맺기에서의 좌절과 소외 등의 심리적인 단절이었다. 이는 그 동안 한국사회가 성전환자들에게 가했던 차별과 폭력, 배제의 방식이 초래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전환자들이 사회구성원

46)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법적 차별행위 규정에 제시된 직접차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이나 연령, 신체조건, 성적지향 등 개인의 태생적 또는 후천적 속성을 기준으로 그 개인에 대해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의도가 가시적인 형태로써 편견과 고정관념을 토대로 의도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말한다.

47) 국가인권위원회의 위법적 차별행위 규정에 제시된 간접차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즉 직접차별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기초로 한 의도적인 것이라면, 간접차별은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른 집단간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중립적, 객관적으로 보이는 제도적 장치들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게 불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때 발생하는 차별을 말한다.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없었던 차별의 피해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획일적인 문화가 강제한 차별은 당연히 주어져 있어야 할 성전환자의 시민권적 위치를 사장시켰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시민권 회복에 대한 인식은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 사회적 차별의 결과에 대한 정책 모색

성전환자들은 대체로 중·고등학교를 거치는 시기 혹은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자신을 주어진 생물학적 성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한다. 성전환자들의 자기 육체와 성별정체성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성전환자들의 정체성 찾기의 시간들은 생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육체와 성별정체성 간의 갈등, 정체성 찾기의 내면적 혼란은 사회적 차별에 의해 더욱 가중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시기,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지 않는 여/남학교에 입학을 하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교복을 입는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여성/남성의 또래문화 속에서 성전환자들의 행동은 지속적인 차별의 이유가 된다.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 당하거나 배제당하는 등의 차별경험으로 인해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처럼 성전환자들이 가출이나 학업포기, 취업기회의 제한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스스로 현재의 성별정체성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다. 성전환자들이 겪는 내면적 갈등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단지 자신들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혼란에서만 기인하지 않는다. 성전환자에 대한 명백한 외부의 차별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환자들의 상당수는 극단적인 생계 위험과 고용불안, 대인공포에 시달리거나 사회로부터 은둔한다.

물론 모든 성전환자들의 생애가 차별경험에 의해 극단적인 생계위험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전환자의 생애에서 차별경험은 성전환자들의 현재의 생활과 모습을 만들어낸 명백한 이유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정책은 배제되었던 성전환자들의 기본적인 성적 시민권의 확보와 동시에 오랜 시간동안의 차별경험에 대한 정책적 보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실제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났고 그 결과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불안한 현재를 살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전환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이고 누적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

2. 성전환자들이 희망하는 사회정책

성전환자들의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현재 자신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기에 현실 속에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조사는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설문은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성전환자를 위한 정책마련의 필요성 인식여부, 희망하는 정책, 희망하는 사회적 서비스로 질문문항을 구성했다. 이 설문에 응한 전체 응답자는 78명이었다.

(1) 정책현황

<표 78> 국가지원 여부

국가지원 여부	빈도	비율
현재 지원받고 있다	2	2.6
지원받아본 적이 있다	5	6.5
전혀 받아본 적 없다	70	90.9
계	77	100.0

설문대상자들에게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및 지원과 같은 국가 지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았다. 성전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설문대상자의 6.5%인 5명이 ‘과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2.6%, 2명만이 ‘현재 지원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은 정부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은 법·제도상의 성별 문제로 인해 제한된 취업기회 속에서

구직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성전환자들이 취업 가능한 일자는 비정규직이나 상시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비공식부문에 집중되었다.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은 고용불안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더구나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의학적 조치의 비용부담까지 안고 있다. 자연히 비정규직의 적은 수입으로 수술비용을 위해 저축을 해야 하므로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자들이 자신의 외양과 생물학적, 법적, 사회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험하는 일상적인 차별경험은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축소시킨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의 사회적 지지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성전환자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점들을 양산한다. 그러나 현재, 어떠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어려움들은 성전환자 개인의 손에 달려있다.

(2) 사회정책의 필요성 인식

<표 79> 성전환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여부

성전환자를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 여부	빈도	비율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73	93.6
필요하지 않다	3	3.8
모르겠다	2	2.6
계	78	100.0

설문대상자들에게 성전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78명 중 93.6%인 73명은 ‘성전환자를 위한 국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3.8%인 3명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고 2.6%인 2명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성전환자들은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차별의 지점들이 분명히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정책수립방향에 대한 서비스

<표 80> 희망하는 성전환자 관련 정책 안

희망하는 국가의 정책/지원안(복수응답)	빈도	비율	우선순위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마련	53	67.9	1순위
성전환 수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38	48.7	2순위
성적취향이나 성주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제정	16	20.5	3순위
자립지원	14	17.9	4순위
단일한 의료체계의 확립과 기초의료가이드라인의 설정	9	11.5	5순위
생계보장	9	11.5	5순위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지속적 상담기관과 제도의 마련	8	10.3	7순위
사회기관이나 기업체에서의 무리한 주민등록증 요구에 대한 제재	4	5.1	8순위
한국사회의 트랜스젠더 실태보고	2	2.6	9순위
기타	2	2.6	9순위
전체 대상자	78명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사대상자들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희망하는지 질문하였다.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은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장 필요한 국가의 정책지원으로 전체 설문응답자의 67.9%인 53명은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48.7%인 38명은 ‘성전환 수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체 응답자의 20.5%인 16명은 ‘성적취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17.9%인 14명은 ‘자립지원’을 요구하였다. 11.5%인 9명은 ‘생계보장’을, 역시 11.5%의 9명은 ‘단일한 의료체계의 확립과 기초의료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10.3%를 차지한 8명은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지속적 상담기관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5.1%인 4명은 ‘사회기관이나 기업체에서의 무리한 주민등록증명 요구에 대한 제재’를 원하였다. 2.6%인 2명은 ‘한국사회의 트랜스젠더 실태보고’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성전환 증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기관을 설립하여 정체성 설립에 도움을 주고 후원해주었으면 한다’, ‘호르몬 투여에 대한 의료보험의 적용이 필요하다’의 의견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국가의 정책과 지원안으로 단연 ‘성별변경 법안 마련’과 ‘성전환 수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꼽았다. 이는 성전환자들이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인정(recognition)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제한된 취업기회와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전환 수술 비용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제고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성전환 수술비용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현실화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립지원’과 ‘생계보장’에 대한 요구 역시 차별로 인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한 성전환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요구안이다.

(4) 희망하는 사회적 서비스

<표 81> 희망하는 사회서비스

희망하는 사회서비스(복수응답)	빈도	비율	우선순위
취업상담	38	48.7	1순위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된 방문간호와 의료지원	30	38.5	2순위
성별정체성 관련 상담	19	24.4	3순위
기술, 기능교육	17	21.8	4순위
차별에 대응한 신고기관의 활성화	15	19.2	5순위
인간관계, 부모 자녀관계의 역할훈련 등과 같은 사회성훈련	11	14.1	6순위
쉼터, 일시보호소 같은 긴급보호시설	9	11.5	7순위
기타	5	6.4	8순위
여가, 취미교육	4	5.1	9순위
성추행, 성폭력 상담	3	3.8	10순위
전체 대상자	78명		

조사대상자들에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떠한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이 질문문항 역시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로 전체의 설문대상자 가운데 48.7%인 38명은 ‘취업상담’을, 38.5%인 30

명은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된 방문간호와 의료지원’을 요구하였다. 24.4%인 19명은 ‘성별정체성 관련 상담’을, 21.8%인 17명은 ‘기술, 기능교육’을 희망하였고 19.2%인 15명은 ‘차별에 대응한 신고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14.1%인 11명은 ‘인간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역할훈련 등과 같은 사회성 훈련’을, 11.5%의 5명은 ‘쉼터, 일시보호소 같은 긴급보호시설의 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5.1%의 4명은 ‘여가, 취미교육’을, 3.8%의 3명은 ‘성추행, 성폭력 상담’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기타의견으로는 ‘성전환자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성전환자의 사보험 가입불가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성별변경의 문제와 같은 법적, 사회적 정책에 대한 요구를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로 성전환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항목은 ‘취업상담’이었다. 성전환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계보장과 노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다.

많은 수의 성전환자들은 실제 생물학적인 성으로 취업하기를 꺼려한다. 성전환자들이 생물학적 성으로 취업한다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관계망의 형성이 생물학적 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기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취업을 하고자 해도 생물학적 성과 다른 외모는 구직과정에서 차별받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생계의 문제는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취업상담은 성전환자에게 중요하다. 또한 호르몬과 성전환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부작용과 건강상의 위협으로 인해 많은 조사대상자들은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희망하였다. 이 외에 자신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로 갈등하는 성전환자들을 위한 성별정체성 상담기구의 마련, 학업포기 등으로 인해 사회진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 기능교육, 수많은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신고기관의 활성화 등도 성전환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이다.

3.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1) 법적 · 사회적 지지망 확충

(1)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특별법 제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과정은 2006년 6월 22일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2006년 6월 이전의 성별변경 절차는 성전환자가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지방법원에 성별변경을 신청하면 개별 판사의 판단에 의해 성별변경이 최종 허가되었다. 당시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모든 의료적 시술을 마치고 이미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변경이 기각당하는 예가 많았다. 판사가 성전환자의 상황과 실태를 잘 이해하지 못해 기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은 기존에 생물학적 성염색체에 근거하여 성을 구분하던 관행을 깨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의료적 시술을 모두 마친 상당수의 성전환자들이 일정요건의 서류를 갖추면 성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성전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부재하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변경 관련 특별법 제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한국사회내의 성전환자의 현실이다. 특히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은 한국사회에서 성전환자를 처음으로 법적,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사회에서 성전환자의 삶은 수많은 차별과 배제 속에서 존재한다. 성별화된 사회에서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도,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으로도 살지 못했다. 아무리 자신이 인식하는 성의 외양을 갖추고 성역할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 장벽 속에서 성전환자들은 인정받기 어려웠다. 특히 학교제도 내에서의 차별, 취업기회의 제한, 빈곤과 고용불안, 교제와 결혼의 어려움 등과 같은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층위 속에서 생물학적 성을 바꾸기 위한 엄청난 비용의 부담은 성전환자로서의 삶을 더욱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사회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

려할 때, 성별변경이 현재처럼 가슴수술과 정소/난소제거 수술, 성기형성수술에 이르는 모든 성전환 수술을 이행해야한다는 요건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미 호르몬 투여, 가슴수술, 정소/난소제거 수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성전환자들은 결코 이전 성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⁴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단지 생물학적인 육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차 성 구분에서 육체라는 기준은 이미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성전환자가 아니더라도 육체는 전환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육체보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기긍정,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인정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성전환자들은 분명 생물학적 육체와 반대되는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와 성전환자의 성 주체성 장애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여부가 확인이 되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성별변경의 요건 중 가장 많은 비용부담이 드는 성기형성수술의 여부는 성별변경의 필수적인 요건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다.⁴⁹⁾

(2) 성전환자 관련 각종 법조항 개정 및 정책 마련

① 신분등록제 상의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규정 마련

개인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신분관계를 표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신분관계를 표시하는 법은 현재 호적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태어나서 출생과 혈연관계, 사망을 표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의 호적법은 2005년 3월 1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민법에서 호주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된 이후, 새로운 대체법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48) 호르몬 투여만 받더라도 이미 신체의 외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의 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49) 일부에서는 성별변경의 요건이 완화되면 성별변경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별변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년 간, 수십년간의 노력과 비용과 더불어 의료기술을 겪어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그 모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은 결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성별변경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부계혈통만을 인정하고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공식적으로 용인하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신분상의 정보와 변동사항을 노출시켰던 호적법이 바뀌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체법안에서도 신분상의 확인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쓰여 왔던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신분의 확인과 주민등록번호상의 구분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이후에⁵⁰⁾ 성전환자가 바뀐 성으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할 때, 그 변경사실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혹은 인권침해적인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성별변경에 관련된 법적, 공식적 기록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이후에 공문서의 기록은 본인이 원할 경우 바뀐 성으로 다시 표기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이전에 획득한 사회적인 자격이나 경력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것이 마련되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병역법 및 제도의 정비

우리사회는 성별에 따라(학력, 장애 등도 영향이 있지만)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 의무 중 하나가 병역의 의무이다. 생물학적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역대상자의 징집의 문제는 성별변경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진 이후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 성별변경에 대한 대법원판결 이후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 시점에서 성전환자임이 확인되면 MTF의 경우 병적을 해제하고 FTM의 경우 명확한 규칙이 없지만, 징병신체검사 규칙의 390조(음경절단)과 380조(고환결손 또는 위축)의 규정으로 인한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물학적 기준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의 설정은 성 기능과 성기의 완전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성전환 수술을 모두 마친 FTM이 병역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미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50) 현재 2006년도 6월 22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이 가능해졌다.

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징집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성별변경자의 기존 법 조항 적용여부

현행 법체계는 모두 양성을 기준으로 한다. 혼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혼인과 가족관계가 양성을 전제로 성립됨을 밝히고 있다(제36조 제1항) 또한 민법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전제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상속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경우를 강간죄(제297조)로 규정하고 ‘남성’이 ‘여성’에 대해 간음 이외의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제289조)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죄의 객체는 ‘여성’에 한정되며 ‘남성’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현행법상 ‘남녀’구분은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호적법(성별표기) 병역법(현역입영대상), 민법(혼인연령), 행형법(남녀의 구분수용) 형사소송법(여자에 대한 신체수색) 근로기준법(여자의 야간작업제한, 유해 위험 작업금지) 등 다양한 법 영역의 기초가 되어 있다. 양성중심의 법 조항에서 해당하는 모든 이중적 구분에서 성별변경을 한 성전환자는 변경된 성으로 법이 마련한 모든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2) 의료정책

(1) 성전환 과정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설정

대부분의 성전환자는 호르몬 투여나 외과적 시술과 같은 성 전환의 과정을 거친다. 의학적 조치의 이행은 가장 먼저 정신과 전문의의 ‘성 주체성 장애’라는 진단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어느 진료과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호르몬 투여를 위한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성전환자들은 개인별로 ‘성 주체성 장애’ 진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받았던 검사과정이 모두 달랐고, 어떤 경우는 별다른 검사과정 없이 호르몬을

처방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전환 관련 수술 역시 일정한 절차나 체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나 수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 또한 많았다. 이는 성전환증 판단과 호르몬 투여, 성전환 관련 수술 등에 정통한 전문의가 부족한 현실도 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의료계에서는 성전환 관련 의학적 조치에 능통한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의료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의료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체계적인 의학적 조치의 절차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2) 성전환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적용

성전환자들의 성전환 과정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은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성별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신의 육체를 바꾸고자 한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성전환 수술의 비용으로 성전환자들은 가슴수술은 평균 500만원, 정소, 난소제거수술은 평균 330만원, 성기형성수술은 평균 1,300~1,4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성전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130만원 정도를 성전환 수술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당연히 지출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성전환 수술비용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전환자들에게 따르는 빈곤과 고용불안정의 상태는 성전환을 어렵게 한다. 그만큼 수술을 받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만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기간 또한 늘어난다.

성전환자의 성전환 수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전환자에 관련한 모든 법과 제도의 목적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성전환자의 인권과 성적 시민권의 보장이라면, 성전환자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포괄할 수 있는 모든 예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은 모두 국가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 가운데 의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해 보험급여의 대상과 비대

상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질병과 치료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놓은 것이다. 이에 의하면 급여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된다. 반면 비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인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를 명시하였다.

성전환자들은 신체의 기능개선을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학계의 진단에 의하면 성전환자의 성전환증은 ‘장애’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라 자신의 성별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재활의 치료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술은 결코 자신의 기능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성전환 수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대상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서구의 경우,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성전환 수술 및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판례 역시 성전환 수술 및 치료에 대해 공적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⁵¹⁾

3) 심리적 지원

성전환자들은 대개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에 주변사람들과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은 남들과 달리 생물학적인 성에 어울리지 못하고 곁돌면서 오히려 반대의 성 역할로 자신을 긍정하는 경향은 더 강해진다.

성전환자의 기본적인 갈등은 자신의 육체와 정체성이 일치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성전환자들은 ‘왜 나만 다를까’를 고민하게 되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혼자라는 고립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물학적 성으로

51) 1987년 연방항소법원은 Meriwether v Faulkner 사건에서 “성전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성적 선호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1977년 Doe v 미네소타 공공복지부와의 사건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의료적 지원을 미네소타 주가 거부한 것은 연방규칙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네소타 주 대법원은 성전환증은 복잡한 의료적 · 정신적 문제이고 수술은 성전환증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수단으로 알려져 있고 각 신청자의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의료지원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불리워지고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이 불리워지고 구분되는 제도에 포함되기를 거부하고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자체를 꺼린다. 자괴감과 소외, 고립감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육체적 성에 근거한 성별제도와 이분법적 젠더문화로부터 성전환자들은 지속적인 타자로 남겨진다. 이러한 과정은 성전환자들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쌓는 과정 이자,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소외와 단절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일상의 곳곳에서 차별로 나타난다. 성전환자들의 외양과 행동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심받았고, 의심받았을 때 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육체의 성과 다른 성을 가졌다고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증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강고한 젠더문화는 여자같은 남자, 남자같은 여자 혹은 여자이지 않은 남자, 남자이지 않은 여자를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때때로 별종취급을 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성적 대상화를 하기도 했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양상은 다분히 폭력적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며 사회와의 소통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관계망을 쌓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공포심을 갖는다. 내면적 갈등과 소외감은 증폭되어 자신을 해하거나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자아존중감은 훼손되고 결국 심리적 나락의 상태로 빠지기 쉬웠다.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은 다시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기의 내면적 혼란과 자기부정의 감정,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으로 인해 성전환자들은 자기 생애 전반에 대한 자기계획과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교제도로부터의 도피는 이후 성전환자들의 생애에서 많은 기회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기, 특히 초·중·고등학교 시기의 성별정체성 상담과 심리적 지원은 중요하다. 심리적 지원을 통해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긍정하고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을 줄여나가면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역할을 담당할 성별정체성 상담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히 학교와 사회에 성 상담기구가 제도화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강구되어야 한다.

유아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상담과 성별정체성 관련 상담이 소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정이라는 방향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 상담기구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와도 연계되어 사회의 구성원 누구라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담·의료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냉대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망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차별금지법의 제정

성전환자들은 성별주체성으로 인해서 제도적, 문화적, 일상적 차원에서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사회구성원안에서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차별을 정의하고 그것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마련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에는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성전환자가 겪는 차별을 시정해나가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성별" 규정에 "남성이나 여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성별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나, 성전환자의 성별주체성을 계속 "분류되지 않는" 상태로 말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다양한 상황을 포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또한 성별변경 등으로 하나의 성별로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이후에도 그 내력이 알려지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인권위의 권고안은 부족하다.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학적, 제도적, 사회적 절차를 밟아나가고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과 차별금지를 위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5) 인권교육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은 '나'와 다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 실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의 외모의 차이만큼이나 다양한 생각과 태도, 스타일

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은 몇 가지의 사회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의 여성다움, 남성의 남성다움이라는 젠더문화의 공고한 생물학적인 기반은 그 경계의 넘나듦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공고한 젠더문화는 성전환자들의 경우, 성별정체성과 육체와 다르다는 사실을 ‘흉내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시킨다. 또한 성전환자들이 육체의 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권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는 ‘나’ 혹은 ‘우리’와 다른 가능성의 여지를 망각하고 있다. 성전환자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기 확신은 근거없는 흉내와 믿음으로 전락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회의 획일성에 의한 폭력에 무너지게 된다.

반면 우리사회에서 성, 성별정체성, 연령, 신체조건, 성적지향, 인종 등의 차이에 근거한 다양성은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딜레마는 자연히 사회적 갈등과 사회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와 환경, 문화를 바꾸어가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성전환자들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인정을 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라진 시민권을 회복해가기 위해서는 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감수성의 개발은 단지 성전환자의 경우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양한 성소수자와 성, 인종, 연령, 신체조건에 의한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곳곳에서의 다양한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 직장, 공공기관 등의 각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제도 내에서는 교과과정, 교육내용에서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고, 근로현장 내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성전환자의 경우, 신분증 발급과정, 출입국 심사과정, 형사절차과정에서의 신분노출로 인한 곤란한 경험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예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성전환자들이 빈번한 사회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신분노출의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2차 차별의 피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형사·사법기

관의 철저한 인권교육을 통해 1차적인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형사절차과정에서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기 때문이다.

6) 성전환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 보호에 대한 권고

성전환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성으로 살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변경은 이들에게 가장 큰 지원책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성전환자라고 확신하는 한, 생물학적 성으로 살아가길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제공한다.

FTM의 경우, 이미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남성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남성으로 취업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애인이나 배우자를 만나도 결혼을 하거나 2세 입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불안정한 가족의 지위 때문에 언제라도 애인이나 배우자가 떠날지 모르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 MTF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여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취업이나 결혼이 불가능하며, 배우자를 만나도 생식능력의 부재로 가족 내에서 아내의 위치는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는다. 성전환자의 삶에서의 많은 한계와 어려움은 상당부분 성별변경의 문제이다. 그러나 성별변경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게 남아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성별변경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별변경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성전환 수술의 모든 과정을 마친 뒤에도 다시 성별변경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은 남아있다. 그러므로 성별변경 전후 등 성전환자의 생애 전반을 단지 ‘성전환’이란 단절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을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성전환자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성전환’은 단지 어느 시기 갑자기 등장하는 변화가 결코 아니다. 성전환자의 ‘성전환’은 스스로의 성별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과정, 발견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사회적 인정의 부재로 인한 차별의 경험, 의학적 조치의 과정, 성별변경 이후의 생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성전환자들의 생애 전반을 살펴보는 것은 ‘성전환’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면밀히 이해하고 성전환자들의 생애전반에 나타나는 차별의 지점을 확인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성별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별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전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성전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로부터 보호이다. 결국 성전환자들의 성적 시민권의 회복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지위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전환자들도 자신들이 인식하는 성별정체성으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고 오랫동안의 누적된 차별경험으로 인한 배제된 삶을 살았던 피해를 인정하여 이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로부터의 보호만으로 이미 과거로부터 누적된 차별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성전환자들의 삶에서 단지 기회의 평등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차별받았던 결과까지 평등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성적 시민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과 배제의 삶을 살았던 성전환자들이 ‘성전환’의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지점들을 중심으로 필요한 정책적 고려지점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것이다.

(1)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성전환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성전환자들이 배달이나 서빙과 같은 일을 주로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사적인 지지망을 이용하여 취업하기도 한다. 일부는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취업을 하기도 했고, 또한 일부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주변관계를 통해 취업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를 제외하면,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능력을 통해서 취업하기는 매우 어렵다. 설령 생물학적 성으로 취업한다 해도 일의 특성상 직장 내 동료들과의 공동업무가 전제되지 않는, 예를 들어 운전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독자적인 자신만의 공간이 확보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이다.

특히 MTF의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일부이다. MTF들은 성산업(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MTF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성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서 MTF들은 여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외모를 꾸밀 수 있다. 또한 성산업의 공간 다른 MTF들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의 역할을 한다. 때로는 갈등하지만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성전환 수술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다. 외부적인 취업의 제약요건과 성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공동체의 역할에 의해서 많은 MTF들이 성산업에 종사한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자들의 취업경로가 제한적인 이유는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을 사회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외양과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받아온 차별과 성별화된 학교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너무 일찍 학업을 포기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성전환자들은 이미 어린 나이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깨달았다.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진학과 취업, 결혼생활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모든 법적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성전환자들에게는 큰 좌절을 겪게 했고, 구체적인 생의 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업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이유는 이러하다. 그러나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성전환자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저학력의 경력은 돈을 벌어 성전환을 꾀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좌절을 다시 안겨주는 셈이다. 그러므로 성전환자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취업교육과 취업상담이 필요하다. 이는 성전환자들의 기본적인 생계마련과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철저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

(2) 사회보장권 : 기초적인 생계보장

저학력과 사업체에서의 구체적인 노동경험이 없는 성전환자들은 배달과 서빙, 단순 업무의 사무직 등, 적은 수입으로 생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마저도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체성이 커밍아웃 되는 순간에는 언제라도 해고될 위험이 있다. 성전환자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비정규직이라서 비정규직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커밍아웃의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고용불안정의 상태는 계속된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성전환자들은 사회 곳곳에서 차별로 인해 사회제도와 노동현장으로부터 탈피하여 집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생계보장이다.

성전환자들이 가족들의 보호와 지지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생계보장의 문제는 간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독립하여 생활하는 경우는 실제로 생계의 문제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가족들 외에 자신들이 지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도 차단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MTF인 <사례 23>의 이○혜(가명)씨는 가족으로부터 쫓겨나 혼자 생활하고 있다. 현재는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으로부터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않고 배달 일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당장의 생계문제에 급급한 이○혜씨는 성전환 수술을 너무도 희망하고 있지만, 막막하기만 하다.

현재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보호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⁵²⁾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성전환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의학적 조치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적은 수입의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한다. 당연히 수입의 일부분은 호르몬과 수술을 위해 쓰인다. 그러므로 가능한 수입의 범위에서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설령 성전환자들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고 해도 실제 생활의 상당부분은 최저수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전환자 생활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여 차별과 의학적 조치의 비용을 제외한 생활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52)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절대빈곤선을 설정하고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 항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공식부분으로 성전환자들의 취업시장이 축소되어 있는 만큼, 그리고 차별에 의해 고용불안정이 발생하는 만큼 성전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이나 다양한 지원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전환자들이 차별에 의해 고용불안정의 상황을 맞이한다는 점을 살펴 성전환자들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제고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인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의 의미는 퇴색할 수 있다.

(3) 보장된 사회적 지위 속에서 가정을 구성할 권리

성전환자들이 가정을 꾸리고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것은 성별변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변경이 가능하고 결혼이 가능하다 해도 성전환자들이 아이를 희망하여 입양을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남을 수 있다. 특히 공문서상에 성별변경의 여부가 남아 있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할 경우, 입양절차의 법적·사회적 요건과는 별도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성전환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커밍아웃 될 경우 수많은 차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성별변경 이후 모든 공문서는 제한적인 요건을 엄격히 부여하여 성별변경의 여부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⁵³⁾ 섬세한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성전환자들의 입양문제 역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4)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권리

많은 성전환자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가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대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나 주거비 마련을 위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집을 나오더라도 고시원이나 여관 같은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는 사람의 집에서 기거하기도 하고 일수방을 마련하기도 한다. 빚이 생기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주택자금의

53) 성별변경의 여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성별변경 이전의 모든 학력과 공인 자격증 등의 사회적 지위가 성별변경 이후에도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이 지내왔던 과거의 경험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셈이기 때문이다.

마련이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빈약한 수입의 상당부분은 주거비로 지출된다. 설문조사에 응했던 성전환자들의 경우, 가구수입이 100만원 이하인 비율이 전체의 18.8%를 차지하였지만 이들의 한달 평균 월세 지출의 비용은 대략 40만원이었고 35만원 이하의 월세를 지출하는 경우도의 비율이 상당수였다. 성전환자에게 있어서 주거비 부담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의 성전환자들을 위한 주거빈곤의 해소는 성전환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토대가 된다. 일례로 월세, 전세금 마련을 위한 융자제도, 임대료 보조제도의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확대 등은 검토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급하게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성전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주거보호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5)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권리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 성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호르몬 투여를 하고 성전환 수술을 받는다. 의학적 조치의 과정은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인식하는 성으로서 완전함을 갖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성전환자에게 적합하고 체계적인 성전환의 의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의학적 조치를 진행 중인 성전환자들은 모든 의료사고에 개인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전문적인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야하는 지점도 중요하지만 성전환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의학적 조치의 과정 전반에 걸친 정책적인 보호도 제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계의 진단 이후 호르몬 투여의 과정과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상담의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전환은 단지 성전환자의 개인적 욕망에 따른 선택이 아니다. 성전환의 과정이 성별정책으로 인한 하나의 과정이라면 충분히 성전환자의 성전환 과정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전환자들의 성전환 과정과 이후의 생활에서 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야 한다. 간단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도가 마

련된다면, 성전환자들이 의학적 조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모든 문제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육받을 수 있을 권리

성전환자들은 생물학적 성으로 학교에 다니기를 꺼려한다. 그것은 단지 자신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현재의 학교가 철저히 성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속적으로 여성들에게 여성되기를 가르치며 남성에게는 남성 되기를 가르친다. 정기적으로 속옷검사 검사, 복장검사를 하는 등의 과정은 학교가 충분히 성별화된 공간임을 보여준다. 교복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교복은 치마이며 남성의 교복은 바지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학교의 착한 여성만들기의 교육은 여성속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여성적 외모를 갖추었는지, 여성소지품을 가지고 다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인 규율을 제시하고 이를 강제한다. 상대적으로 학교가 남학생들에게 학생으로 하지 말아야 할 위반사항들에 대해 좀더 엄격한 제제를 가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에게는 여성적 몸가짐을 강조하는 것이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성전환자들에게 성별분리의 공간인 학교는 참을 수 없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학교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했을 때 학교의 제도화된 성별화 규율은 폐지되어야 한다. 규율 검사, 예를 들어 여성용품 착용, 여성속옷 착용여부, 복장검사, 두발검사 등은 폐지하고 학생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확장되어야 한다. 교과과목의 자유로운 선택, 복장이나 두발에 대한 선택 등과 같은 자유로운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학생들이나 선생님으로부터의 차별 역시 방지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전환자들은 학생들의 놀림이나 선생님으로부터의 불합리한 대우로 인해 학교를 일찍 그만두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직접적인 차별로 인한 학업포기는 이후 성전환자들이 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제공한다. 저학력과 자퇴경험은 구직활동과 취업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제약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의 차별이 사라지도록 학교 내의 인권교육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학교 내에서 차별받는 성전환자들이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상담·심리상담교사 운영제도가 시행되어 적어도 학업포기의 상황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차별 때문에 학교를 일찍 그만둔 성전환자들이 학교제도 밖에서 학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배달이나 서빙과 같은 단순노동의 적은 월급으로 교육비의 부담까지 안기는 힘들다. 그래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성전환자들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종주, '성전환 수술로 인한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 김비(2001),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 서울: 오상
-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김지혜(1998), "레즈비언/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본 서구 레즈비언 발전 과정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남현미(2005), "젠더전환자(transgender)의 정체성과 적용", 경북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루빈, 헨리 S(2004), "(성전환자) 남성처럼 글 읽기", 톰 디그비 엮음 『남성 페미니스트』, 김고연주 · 이장원 옮김,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루인(2006), "트랜스/젠더 선언문 $\frac{1}{2}$ ", (미간행)
- 박미선(1998), "젠더", 『여/성이론』, 1호,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박수진(2004),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 -20?30대 레즈비언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박현정(1999), "성별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서동진(1993), "근대자본주의사회에서 동성애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외(2006), "성전환자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 자료집", (미간행)
- 오수연(2006), "자기서사(Self-Narrative)를 통해서 본 레즈비언 정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윤조(2005), "트랜스젠더", 『여/성이론』, 12호,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이경(2001), "하리수, 그 날짜 변경선의 코드 읽기", 『여/성이론』 5호,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이무상, '성전환증의 의학적 검토'
- 이승현(2006), "성전환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미간행)
- 이정애(2001), "매스미디어에 나타난 트랜스젠더의 담론연구-'하리수' 담론의 전개와
그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정희진(2003), "도대체, 누가 여성일까", 강봉균 외 공저 『월경越境하는 지식의 모험
자들』, 파주: 한길사
- 조미나(2001), "사이버 공간에서 동성애자 집단의 소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
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조은, 조주현, 김은실(2002), 『성 해방과 성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재희(2002),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트랜스젠더 여성의 구성성에 관한 연구 -트랜스
젠더 커뮤니티 'R'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
문 (미간행)
- 최협, 김성국, 정근식, 유명기 엮음(2004),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콜라핀토, 존(2002),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 이은선 옮김, 서울: 바다출판사
- 한인섭 · 양현아 편(2002),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서울: 사람생각
- 혜일, C. 제이콥(2004), "내 목에 남아 있는 희미한 추억을 추적하며", 톰 디그비 엮음
『남성 페미니스트』, 김고연주 · 이장원 옮김,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홍춘의(2002), "성전환자의 성별 결정에 대한 법적 접근", 한인섭 · 양현아 편 『성적
소수자의 인권』, 서울: 사람생각
- Jason Cromwell(1999), Transmen and FTMs - Identities, Bodies, Genders, and

Sexualitie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Jay Prosser(1998), Second Skin, Columbia University Press

Judith Halberstam(1998), Female Masculinity, Duke University Press

Julie A. Greenberg, Marybeth Herald(2005), You Can't Take It With You: Constitutional Consequences Of Interstate Gender-Identity Rulings, Washington Law Review

Pat Califia(1997), Sex Changes - The Politics of Transgenderism, Cleis

Raine Dozier, "Beards, Breasts, and Bodies: Doing Sex in a Gendered World", GENDER & SOCIETY, vol. 19 No. 3

【첨부자료】 설문지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성전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한국성전환자 인권연대(준)는 최초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는 성전환자들의 생애를 중심으로 성전환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여 성전환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전환자들을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전환자들의 인권신장과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답변하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실태조사의 자료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지켜질 것이며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인권실태조사 과정에서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모두 숫자화 되고 합산하여 제시되므로 개인의 신분은 절대 보장됩니다. 다시 한번 개인의 정보보호에 대한 약속을 드리며, 설문의 정답은 없으므로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숫자화 되어 통계적으로 분석되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6월 한국성전환자 인권연대(준) ‘지령이’
성전환자 인권 실태조사 기획단

조사담당자	한무지	핸드폰: 010-2274-6854	e 메일: muji21@empal.com
설문담당자	한영희	핸드폰: 011-294-1031	e메일: passioni@hanmail.net

1. 귀하의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주체성	<input type="checkbox"/> ① MTF	<input type="checkbox"/> ② FTM
2. 출생년도	____년생	
3. 세대주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① 세대주 (본인) <input type="checkbox"/> ② 세대주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③ 세대주의 자녀 <input type="checkbox"/> ④ 세대주 자녀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⑤ 세대주의 손자녀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_____) (세대주는 현재 독립가계를 구성하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자)	
4. 형제·자매 관계	_____남 _____여 중 _____째 (현재 호적상의 성을 기준으로 답해주세요)	
5. 학력	<input type="checkbox"/> ① 무학·초등학교 졸업(중퇴포함) <input type="checkbox"/> ② 중학교 졸업(재학/중퇴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고등학교 졸업 (재학/중퇴포함) <input type="checkbox"/> ④ 대학교 졸업(재학/중퇴포함) <input type="checkbox"/> ⑤ 대학원 재학, 중퇴, 졸업 이상	
6. 현재의 혼인상태	<input type="checkbox"/> ① 애인과 동거 <input type="checkbox"/> ② 기혼(재혼포함) <input type="checkbox"/> ③ 이혼/별거/사별 <input type="checkbox"/> ④ 미혼	
7. 종교	<input type="checkbox"/> ① 개신교 <input type="checkbox"/> ② 천주교 <input type="checkbox"/> ③ 불교 <input type="checkbox"/> ④ 없다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8. 직업	<input type="checkbox"/> ① 사무직(사무업무) <input type="checkbox"/> ③ 가게운영/개인택시(자영업) <input type="checkbox"/> ④ 공장노동자 <input type="checkbox"/> ⑤ 건설노동자·가사도우미(파출부) <input type="checkbox"/> ⑥ 식당·주방청소/서빙/배달 <input type="checkbox"/> ⑦ 가정부·파출부 <input type="checkbox"/> ⑧ 유통업소 종사자/공연예술인 <input type="checkbox"/> ⑨ 연예인·모델 <input type="checkbox"/> ⑩ 운전(영업택시, 버스, 트럭 등) <input type="checkbox"/> ⑪ 학원강사/과외교사 <input type="checkbox"/> ⑫ 집안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컴퓨터관련, 가내수공업 등) <input type="checkbox"/> ⑬ 전업주부 <input type="checkbox"/> ⑭ 학생 <input type="checkbox"/> ⑮ 무직 <input type="checkbox"/> ⑯ 스포츠인 <input type="checkbox"/> ⑰ 기타 (_____)	

2. 귀하의 가족구성에 관한 항목입니다. 현재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남편/남자친구·배우자 ④ 아내/여자친구·배우자
 ⑤ 누나, 언니/여동생같은 여자형제 (_____ 명)
 ⑥ 형, 오빠/남동생 같은 남자형제(_____ 명)
 ⑦ 할아버지 ⑧ 할머니 ⑨ 외할아버지 ⑩ 외할머니
 ⑪ 친구 ⑫ 기타 친척(_____ 명) ⑬ 가족관계없음

3. 귀하께서 살고 계신 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 표해주십시오.

1. 귀하께서 살고 계신 주택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②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③ 다세대, 다가구 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안에 산다) <input type="checkbox"/> ④ 여관, 고시원 및 주거용 주택이 아닌 기타 건물 <input type="checkbox"/> ⑤ 노숙 및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음	
2.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점유형태는 어떻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무상 <input type="checkbox"/> ② 월세 (월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③ 보증부 월세 (보증금 _____ 만원+월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④ 전세 (보증금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⑤ 자가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input type="checkbox"/> ⑦ 없음	

4. 귀하께서 현재까지 거주하신 지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표해주십시오. 해당지역이 없으면 기타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십시오.

1. 태어난 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대전 <input type="checkbox"/> ⑥ 광주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경기도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도 <input type="checkbox"/> ⑩ 충청남·북도 <input type="checkbox"/> ⑪ 전라남·북도 <input type="checkbox"/> ⑫ 경상남·북도 <input type="checkbox"/> ⑫ 제주도
2. 현재의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대전 <input type="checkbox"/> ⑥ 광주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경기도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도 <input type="checkbox"/> ⑩ 충청남·북도 <input type="checkbox"/> ⑪ 전라남·북도 <input type="checkbox"/> ⑫ 경상남·북도 <input type="checkbox"/> ⑫ 제주도
2-1. 거주지역을 옮기셨다면 옮기신 이유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하셨다면 이사하신 이유)	<input type="checkbox"/> ① 태어나서 계속 한곳에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② 가족들이 이사를 해서 <input type="checkbox"/> ③ 연인과 배우자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④ 친구들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직장문제 때문에/학교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⑥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5. 귀댁의 가구 소득과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표해주십시오.

1. 귀댁에서의 모든 수입을 합쳤을 때 총 수입은 모두 얼마입니까?(본인소득+배우자소득 등 모두 포함)	월 _____ 만원
1-1. 전체 수입 가운데 본인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 _____ 만원
2. 귀댁의 현재의 재산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액을 합쳐 대략 답해주세요) 오. 그러나 가구나 전자제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_____ 만원
3. 귀댁의 한달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월 _____ 만원
4. 귀댁에서는 매달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한달 평균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5. 귀댁에서는 빚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_____ 만원)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5-2. 무슨 용도로 빚을 지게 되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② 사업자금 <input type="checkbox"/> ③ 주택자금(주거비) <input type="checkbox"/> ④ 학자금 <input type="checkbox"/> ⑤ 보건의료비(호르몬치료, 수술비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⑥ 노름 혹은 술값 등 유흥비 등 <input type="checkbox"/> ⑦ 애인 혹은 친구 등에 빌려주고 받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
6. 귀하는 신용불량자이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6. 다음의 지출 항목 가운데 귀하게서 느끼시기에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항목은 무엇입니까?

다음 항목 중 한가지만 골라주시고, 그 자세한 내역을 적어주십시오.

▶ 지출항목 : () → 자세한 내역: ()

- | | |
|---------------------------|------------------------|
| ① 식비·외식비 | ② 교육비(학교등록금, 학원비 등) |
| ③ 교통비, 차량유지비 | ④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
| ⑤ 호르몬 투여비용 | ⑥ 성확정 수술을 위한 수술비용 |
| ⑦ 문화비(취미, 여가생활 등에 들어가는 돈) | ⑧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
| ⑩ 빛(상환금) | ⑪ 기타 |
| ⑫ 없음 | |

7. 귀하는 현재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으십니까?

- ① 예, 현재 하고 있다(문항 8로 가시오)
 ② 과거에 한 적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문항 8로 가시오)
 ③ 한 적 없다 (문항 13로 가시오)

8. 귀하는 호르몬제를 어떻게 투여하셨습니까? 혹은 현재 어떻게 호르몬을 투여하고 계십니까? 호르몬을 투여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모두(과거 하셨던 분, 현재 하고 계신 분)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골라 답변해주십시오.

- ① 먹는 약을 복용한다 ② 호르몬제를 일괄 구매하여 나 혹은 친한 친구, 친지가 주사한다
 ③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사맞는다 ④ 바르는 약을 사용한다
 ⑤ 기타 ()

9. 귀하는 호르몬을 얼마나 자주 투여하십니까? 과거 호르몬 투여경험이 있으신 분도 얼마나 자주 투여 하셨는지를 답변해주십시오.

- ① 1주일에 2-3회 ② 1주일에 1회 ③ 2주일에 1회
 ④ 한 달에 1회 ⑤ 기타 ()

10. 귀하의 호르몬 투여 비용은 한 달에 얼마 정도가 듭니까? 과거에 호르몬을 투여하시고 현재 하지 않으신 분도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월 _____ 만원

11. 귀하는 현재까지 얼마동안 호르몬 투여를 하고 계십니까? 과거 호르몬을 투여하셨지만 지금 하지 않으시는 분 역시 호르몬 투여기간이 얼마동안이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_____년_____개월

12. 귀하께서 호르몬 투여를 받으시기 전에 받으신 검사와 진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과거에 호르몬 투여받으셨던 분 역시 검사받으신 항목을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 ①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② 성형외과 의사와의 상담 ③ 비뇨기과 의사와의 상담
 ④ MMPI 검사/다면적 인성검사: 정신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으로 주로 남성성, 여성성을 테스트 하는 검사
 ⑤ 호르몬 검사 ⑥ 정신해리검사 ⑦ 기타 검사()
 ⑧ 전혀 받지 않았다 ↗ 문항 15번으로 가시오

13.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는 분만) 귀하는 왜 현재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다음 중 두 가지 이유만 선택하여 답해주십시오.

- ① 비용부담 때문에 ② 몸이 너무 힘들어서 ③ 해도 별 효과가 없어서
 ④ 필요성을 못 느껴서(나이 때문에) ⑤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⑥ 몸에 해롭기 때문에
 ⑦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사회적 관계·지위를 잃기 싫어서)
 ⑧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⑨ 기타 ()

14. (호르몬 투여를 하지 않는 분만) 귀하는 앞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15. 귀하는 성전환을 위해 다음의 수술 중 어떤 수술을 하셨습니까? 해당하는 수술을 모두 체크해서 답하시고, 수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각각의 수술비용과 수술을 하신 지역도 적어주십시오.

수술여부		수술비용	수술받은 날짜	수술한 지역	수술병원
<input type="checkbox"/>	1. 가슴수술(문항 15-1로 가시오)	_____만원	_____년도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 <input type="checkbox"/> ② 국외	<input type="checkbox"/> ①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무면허시술
<input type="checkbox"/>	2. 난소·정소제거 수술(문항 15-1로 가시오)	_____만원	_____년도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 <input type="checkbox"/> ② 국외	<input type="checkbox"/> ①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무면허시술
<input type="checkbox"/>	3. 성기형성수술(문항 15-1로 가시오)	_____만원	_____년도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 <input type="checkbox"/> ② 국외	<input type="checkbox"/> ①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무면허시술
<input type="checkbox"/>	4. 기타 성전환에 도움이 되는 수술(목소리, 얼굴성형 등) (문항 15-1로 가시오)	_____만원	_____년도	<input type="checkbox"/> ① 국내 <input type="checkbox"/> ② 국외	<input type="checkbox"/> ①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② 개인병원 <input type="checkbox"/> ③ 무면허시술
<input type="checkbox"/>	5. 수술하지 않았다 (문항 16으로 가시오)				

☞ 성전환을 위한 수술을 한 가지라도 받으신 분은 문항 15-1로 가시고, 수술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은 문항 16으로 가시오

15-1. 귀하는 지금 받으신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5-2. 귀하는 수술 후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① 예(문항 15-3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문항 17로 가시오)

15-3. 귀하가 경험하신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6. 귀하는 미래에 성확정 수술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① 예(문항 17로 가시오) ② 아니오(문항 16-1로 가시오)

③ 모르겠다(문항 16-1로 가시오)

16-1. 귀하게서 성확정 수술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시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비용부담 때문에

② 몸에 해롭기 때문에

③ 너무 위험해서

④ 정상적인 성기능을 가질 수 없어서

⑤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⑥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⑦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현재 나의 사회적 관계·지위를 잃기 싫어서)

⑧ 기타()

17. (현재 일, 직장을 하고 계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현재의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① 신문, 방송 인터넷의 사원채용 광고를 보고

② 벼룩시장, 전단지의 구인 광고를 통해

③ 국·공립 및 사설 직업소개소를 통해

④ 친구, 이웃의 소개

⑤ 본인, 가족의 결심/가족, 친지의 소개

⑥ 기타()

18. (현재 일,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한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① 내 시간을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② 사람들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서

③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④ 쉽게 구할 수 있어서

⑤ 채용과정에서 굳이 호적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⑥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서

⑦ 기타()

19. (현재 기혼자이거나, 현재 애인과 동거하고 계신 분들만 답해주십시오.) 현재의 애인 및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 ①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의 소개 ②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③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④ 인터넷 커뮤니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⑤ 클럽이나 식당,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 ⑥ 기타 ()

20. (현재 기혼자이거나, 현재 애인과 동거하고 계신 분들만 답해주십시오.) 귀하께서 결혼을 하실 때 혹은 동거를 시작하실 때 귀하의 성별주체성을 상대자, 혹은 상대자 가족에게 밝히셨습니까?

- ① 애인/배우자에게만 밝혔다 ② 애인/배우자와 나의 가족에게만 밝혔다.
 ③ 애인/배우자, 나의 가족, 상대방 가족에게 모두 밝혔다 ④ 전혀 밝히지 않았다.

21. 귀하께서는 예를 들어, 동성애자, 이성애자와 같은 분명한 성적지향이 있습니까?

- ① 나는 이성애자이다. ② 나는 동성애자이다.
 ③ 나는 이성애와 동성애를 상관하지 않는다 ④ 잘 모르겠다.

22. (미혼자만) 앞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호적정정을 한 이후의 결혼계획)을 계획 중이십니까?

- ① 전혀 결혼할 생각이 없다(문항 22-1로 가시오)
 ② 결혼은 하고 싶지만 하지 않고 동거까지만 생각한다.(문항 22-1로 가시오)
 ③ 꼭 결혼하고 싶다. ④ 모르겠다.

22-1.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분만)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3. 다음은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경험하신 항목에 대해 솔직하게 표 해주십시오

1. 어린시절(초·중·고) 나는 가족들(직계가족)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2. 현재 가족들이 나의 성별주체성에 대해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모두 알고 있다(아래 2-1로) <input type="checkbox"/> ② 일부만 알고 있다 (아래 2-1로) <input type="checkbox"/> ③ 전혀 모르고 있다 (아래 3으로)
2-1. 현재 나의 성별주체성을 알고 있는 가족들이 나를 지지해 주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전적으로 지지해준다 <input type="checkbox"/> ② 지지해주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③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철저히 반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3. 현재 나의 주변 친구들 중에 나의 성별주체성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모르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어느 정도 친구들이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④ 상당수 알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⑤ 모두 알고 있다
4. 나의 행동이나 취향에 대해(나의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5. 나의 행동이나 취향으로 인해(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6. 나의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맞은 적(구타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7. 초·중·고등학교 때 기출을 시도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아래 7-1번으로)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아래 8번으로)
7-1. 귀하의 기출은 성별주체성 때문이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7-2. 기출을 시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가족들과의 불화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②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input type="checkbox"/> ③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input type="checkbox"/> ④ 가족과 독립해서 돈을 벌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_____)
8. 나의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사항없음
9. 나의 행동이나 취향으로 인해(성별주체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싸움을 많이 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사항없음
10. 학교(초·중·고) 다닐때 나의 성별주체성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사항없음
11.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모범생인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사항없음
12. 나의 성별주체성 때문에 중간에 학교(초·중·고)를 그만두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아래 12-1번 항목으로)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문항 13번으로) <input type="checkbox"/> ③ 해당사항없음 (문항 13으로 가시오)
12-1.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u>한가지만</u> 골라서 답해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①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때문에 <input type="checkbox"/> ② 학비가 부담이 되어서 <input type="checkbox"/> ③ 공부가 하기 싫어서/적성에 맞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④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 너를 차별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교복이 입기 싫어서 <input type="checkbox"/> ⑥ 돈을 벌기 위해서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_____)
13. 귀하는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연령 _____ 세 때

24. (MTF만 답변해주십시오) 군대(방위산업체 포함)에 다녀오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MTF만 답변해주십시오) 귀하께서는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6. (MTF만) 군입대 과정과 군입대 후 자신의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신 분이나 군에 입대하셨던 분이 답변해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었 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은 편이었 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해당사 항 없음
1. 신체검사과정에서 신체검사관으로부터 인격적 모멸감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입대 후 군부대에서 고참이나 상관에게 인격적 모멸감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입대 후 군부대 동료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이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 적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방위산업체 근무자는 '해당사항없음'에 체크해주십시오.						

27. 귀하께서는 성별변경을 하셨습니까?

① 예(문항 27-1로 가시오)

② 신청 후 기각(문항 27-1로 가시오)

③ 아니오(문항 28로 가시오)

27-1. 귀하께서 성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한가지만 답변)

① 비용의 문제

② 성별변경까지 걸리는 시간

③ 변호사의 몰이해(나를 이해 못하는 변호사)

④ 판사의 몰이해(나를 이해 못하는 판사)

⑤ 모멸감을 느끼는 지속적인 질문

⑥ 기타()

28. 앞으로 성별변경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예(문항 29로 가시오)

② 아니오(문항 28-1로 가시오)

③ 모르겠다(문항 28-1로 가시오)

28-1. 성별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시거나 아직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한가지만 답변)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수술을 할 의지가 없어서 | <input type="checkbox"/> ② 가족의 반대 때문에 |
| <input type="checkbox"/> ③ 현재 나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 |
| <input type="checkbox"/> ④ 굳이 바꿀 필요성을 못 느껴서 | <input type="checkbox"/> ⑤ 비용문제 때문에 |
| <input type="checkbox"/> ⑥ 기타() | |

29. 다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귀하께서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해주십시오.

1.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성적 추행이나 희롱만을 의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2.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3.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수군거리기도 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4.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욕설이나 비아냥거림을 들은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5. 내 모습이나 행동,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6. 자해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7. 자살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8. 자살시도를 해본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9. 나는 조울증이나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10. 현재 나는 정신과나 특정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①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다

30. 다음은 트랜스젠더로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어려움을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 | | |
|--------------------|-------------------------|
| ① 학교에서의 차별과 따돌림 | ② 대인공포,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
| ③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 ④ 이웃, 학교, 직장동료로부터의 소외 |
| ⑤ 교제와 결혼의 어려움 | ⑥ 혐오범죄를 당할 위험 |
| ⑦ 생계의 어려움 | ⑧ 성희롱, 성폭행 |
| ⑨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 ⑩ 도덕과 종교로 인한 갈등 |
| ⑪ 취직이나 진학의 어려움 | |

31. 귀하께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곤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예(문항 31-1로 가시오)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문항 32로 가시오) |
|--|--|

31-1. 곤란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경우들이었습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클라주십시오.

- ① 취업
 ② 금융서비스 이용(은행 구좌만들기, 카드만들기)
 ③ 공공기관 출입(도서관, 국회출입 등) ④ 선거 투표
 ⑤ 진학 ⑥ 해외여행시의 출입국 심사
 ⑦ 불심검문과 같은 불필요한 신분증 제시의 상황
 ⑧ 청소년 여부의 판단을 위한 신분증 제시(예: 술, 담배 판매에서의 신분증 제시 등)
 ⑨ 기타()

32. 성별주체성으로 인해 귀하께서 여러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귀하는 대체로 다음 중 어떤 대처 방법을 취하십니까? 다음 중 대표적인 예, 하나만 클라주십시오.

- ① 참는다 ② 곧바로 항의한다
 ③ 무시한다 ④ 시간이 지난 후 감정을 표현한다
 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⑥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
 ⑦ 인권 관련 상담기관에 의뢰 ⑧ 차별받은 적 없다
 ⑨ 기타()

33. 귀하께서는 귀하의 성별주체성과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주로 어디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정보를 입수하십니까?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클라주십시오.

- ① 전문의료기관 ② 전문상담기관
 ③ 주변의 가까운 비트랜스젠더 친구
 ④ 아는 트랜스젠더 친구 ⑤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⑥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책이나 논문 등의 자료 ⑦ 기타()
 ⑧ 정보를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데가 없다

34. 귀하께서는 현재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인터넷 동호회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① 예(문항 34-1로 가시오) ② 아니오(문항 35로 가시오)

34-1. 귀하께서는 현재 활동하고 계신 인터넷 동호회의 오프라인 모임과 만남에도 참석을 하시는 편입니까?

- ① 오프라인 만남은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두차례 만나보았다
 ③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편이다

35. 귀하께서는 성별주체성으로 인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신 후에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문항 36으로) ② 아니오(문항 35-1로 가시오)
 ③ 차별을 경험한 적 없다(문항 36으로)

35-1. 고소나 고발을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가지만 답변)

- 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②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까봐서
 ③ 나의 성별주체성이 알려지게 될까 두려워서 ④ 기타()

36. 귀하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분들과의 관계는 어떤 십니까?

	관계가 매우 나쁘다	관계가 나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관계가 좋은 편이다	관계가 매우 좋다	해당사항 없음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⑥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⑥
학창시절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직장 고용주 · 동료	①	②	③	④	⑤	⑥
이웃	①	②	③	④	⑤	⑥
트랜스젠더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37. 부모와 가족을 제외하고 귀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귀하와 어떤 사이입니까?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 ① 초등학교 친구 ② 중 · 고등학교 친구 ③ 대학교 친구
 ④ 동네, 이웃 친구 ⑤ 선생님, 성직자(목사님, 스님 등) ⑥ 직장동료 · 선후배
 ⑦ 친척 ⑧ 트랜스젠더 친구들 ⑨ 기타 () ⑩ 없다

38.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의 각각의 시기를 회상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칸에 ✓ 표해주십시오. 만일 본인이 청소년이면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없음'에 ✓ 표해주십시오.

	매우 불SA했다	약간 불행했다	그저 그랬다	약간 행복했다	매우 행복했다	해당사항 없음
유년기(0-13세)	①	②	③	④	⑤	⑥
청소년기(14-19세)	①	②	③	④	⑤	⑥
청년기 (20-29세)	①	②	③	④	⑤	⑥
장년기 (30-50)	①	②	③	④	⑤	⑥
중년기 (50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39. 다음은 심리상태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란에 표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약간 아니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열심히 일하면 나의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친구와의 만남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다(혼자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0. 다음은 귀하의 현재의 생활과 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하는 항목에 표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현재의 직장(일)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현재의 생활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우리 집(주거형태)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현재 사는 동네 환경에 대해 만족한다 (편의시설, 공원 등 주변 환경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41.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지원(국가의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 ① 현재 지원받고 있다 ② 지원받아본 적이 있다
 ③ 전혀 받아본 적 없다

42. 귀하께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42-1번 문항으로 가시오) ② 아니오 (43번 문항으로 가시오)
 ③ 모르겠다 (43번 문항으로 가시오)

42-1.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가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성적취향이나 성 주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제정 ② 생계보장
- ③ 자립지원(일할 능력 지원) ④ 한국사회의 트랜스젠더 실태보고
- ⑤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 마련 ⑥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지속적 상담기관과 제도의 마련
- ⑦ 사회기관이나 기업체에서의 무리한 주민등록 증명 요구에 대한 제재
- ⑧ 성 전환 수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 ⑨ 단일한 의료체계의 확립과 기초 의료가이드 라인의 설정
- ⑩ 기타 ()

43.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다음 중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서비스를 두 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 필요한 서비스 항목 2가지 : (,)

- | | | |
|-----------------------------------|------------|--------------|
| ① 성별정체성 관련 상담 | ② 취업상담 | ③ 성추행/성폭력 상담 |
| ④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된 방문간호와 의료지원 | | |
| ⑤ 인간관계, 부모자녀관계의 역할훈련 등과 같은 사회성 훈련 | | |
| ⑥ 차별에 대응한 신고기관의 활성화 | ⑦ 여가, 취미교육 | ⑧ 기술, 기능교육 |
| ⑨ 쉼터, 일시보호소 같은 긴급보호시설 | | ⑩ 기타 |